

2023 근로능력 판정사업안내

제Ⅰ권 | 2023 자활사업 안내

제Ⅱ권 | 2023 자산형성지원 통장사업 안내

제Ⅲ권 | 2023 근로능력판정사업 안내





2023 근로능력 판정사업 안내

목 차

제1장. 근로능력판정제도 개요 1

- 1-1. 근로능력판정제도 개요 2
- 1-2. 사업 추진 경과 5
- 1-3. 주요 변경 내용 6

제2장. 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 13

- 2-1. 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 14
- 2-2. 의학적 평가기준(제8조 제4항 [별표1]) 20
- 2-3. 활동능력 평가기준(제10조 제4항 [별표2]) 68

제3장. 근로능력판정 71

- 3-1. 근로능력판정 대상 75
- 3-2. 질병·부상자에 대한 근로능력판정 78

제4장. 근로능력평가 105

- 4-1. 근로능력평가 개요 106
- 4-2. 의학적 평가 107
- 4-3. 활동능력 평가 112

제5장. 근로능력평가 지원제도 117

- 5-1. 동행서비스 118
- 5-2. 평가자료 발급대행 서비스 120
- 5-3. 자료보완 비용지원 서비스 122

제6장. 서 식 125

제7장. 부 록 137

- 7-1. 중증질환 및 희귀·중증난치질환 산정특례 대상 138
- 7-2. 국민연금공단 전국지사 주소록 180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제 1 장

근로능력판정제도 개요

- 1-1. 근로능력판정제도 개요
- 1-2. 사업 추진 경과
- 1-3. 주요 변경 내용

1-1

근로능력판정제도 개요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9조(생계급여의 방법) 제5항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7조(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6조의2(근로능력 재판정 신청)
- 의료급여법 제3조(수급권자)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3조(수급권자의 구분)

- 수급자에게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생계급여를 실시할 수 있음
 - 근로능력이 없는 수급자는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은 근로를 통해 자활기회를 제공
- 기초수급자 및 수급권자 중 질병, 부상 또는 그 후유증으로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사람 중에서 근로능력이 없다는 판정을 받고자 하는 사람에 대하여 근로능력 유무를 판정
- 의사상자, 국가유공자, 무형문화재, 북한이탈주민,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등 타법에 의한 의료급여 수급권자도 근로능력 유무를 판정하여 의료급여 1, 2종으로 구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9조(생계급여의 방법) ⑤ 보장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게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생계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장기관은 제28조에 따른 자활지원계획을 고려하여 조건을 제시하여야 한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7조(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① 법 제9조제5항 전단에 따른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는 18세 이상 64세 이하의 수급자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15. 4. 20.>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2. 질병, 부상 또는 그 후유증으로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사람 중에서 근로능력평가를 통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근로능력이 없다고 판정한 사람
3. 삭제 <2011. 12. 30.>
4. 삭제 <2011. 12. 30.>
5. 그 밖에 근로가 곤란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람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제2호에 따른 근로능력평가를 「국민연금법」 제24조에 따른 국민연금공단에 의뢰할 수 있다. 〈신설 2012. 6. 12., 2015. 4. 20.〉
-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판정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재판정(再判定)을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12. 6. 12., 2015. 4. 20.〉
- ④ 제1항제2호에 따른 근로능력 평가의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6조의2(근로능력 재판정 신청) 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2호에 따른 근로능력 판정에 대한 재판정(再判定)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근로능력 판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근로능력 재판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5. 4. 20., 2019. 10. 23.〉

1. 진료기록부 사본
2. 주장하는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② 제1항에 따라 재판정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30일 이내에 영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 판정을 다시 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5. 4. 20., 2019. 10. 23.〉
- ③ 제2항에 따른 재판정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법 제38조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 4. 20.〉

【의료급여법】

제3조(수급권자) ① 이 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4.12.30., 2015.3.27.〉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2. 「재해구호법」에 따른 이재민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3.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
4. 「입양특례법」에 따라 국내에 입양된 18세 미만의 아동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사람과 그 가족으로서 국가보훈처장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추천한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6.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명예보유자를 포함한다)와 그 가족으로서 문화재청장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추천한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7.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사람과 그 가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8.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보상금 등을 받은 사람과 그 가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3조(수급권자의 구분) ① 수급권자는 법 제3조제3항에 따라 1종수급권자와 2종수급권자로 구분한다.
〈개정 2015. 6. 30.〉

② 1종수급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03. 1. 2., 2003. 12. 30., 2004. 12. 30., 2005. 7. 5., 2008. 2. 19., 2008. 2. 29., 2009. 2. 6., 2009. 12. 31., 2010. 3. 15., 2012. 6. 7., 2013. 9. 3., 2016. 6. 28., 2022. 8. 9.〉

1. 법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만으로 구성된 세대의 구성원

1) 18세 미만인 사람

2) 65세 이상인 사람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4) 질병, 부상 또는 그 후유증으로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사람 중에서 근로능력평가를 통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특별자치도의 행정시장은 제외한다)·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근로능력이 없다고 판정한 사람

5) 세대의 구성원을 양육·간병하는 사람 등 근로가 곤란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람

6) 임신 중에 있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여자

7)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이행중인 사람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

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결핵질환, 희귀난치성질환 또는 중증질환을 가진 사람

2. 법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사람

3.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수급권자

4.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1종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제2항제1호가목4)에 따른 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2. 8. 9.〉

1-2 사업 추진 경과

- 1961. 생활보호법 제정
- 1999. 9. 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정
- 2000.10.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 자활사업 실시
- 2010. 1.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근로능력평가 근거 마련)
- 2010. 1. 1. 근로능력평가 기준 등에 관한 규정(고시) 제정
- 2010. 3. 1. 근로능력평가 기준 등에 관한 규정(고시) 1차 개정
(평가기준에 없는 질환에 대한 평가근거 마련, 활동능력 평가 용어 보완)
- 2011. 1. 1. 근로능력평가 기준 등에 관한 규정(고시) 2차 개정
(협력병원 근거, 의학적 평가 기준 개선, 중앙근로능력심사위원회 기능 확대)
- 2012. 6.1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개정(국민연금공단 의뢰 근거 마련)
- 2012.12. 1. 근로능력평가 기준 등에 관한 규정(고시) 3차 개정
(국민연금공단 의뢰, 의학적 평가 기준 개선 및 활동능력 평가 세분화)
- 2012.12. 1. 근로능력평가사업 국민연금공단 위탁
- 2014. 3.19. 근로능력평가 기준 등에 관한 고시 4차 개정
(고착 대상 확대 및 유효기간 연장, 장애판정 기준 및 실질적 임상증상 등을 고려한 의학적평가 기준 개선)
- 2015. 4.17. 근로능력평가 기준 등에 관한 고시 5차 개정
(호전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도 고착 질환으로 인정, 활동능력 평가기준 개선)
- 2016. 6.10. 근로능력평가 기준 등에 관한 고시 6차 개정(판정 유효기간 등 개선)
- 2020. 1.13. 근로능력평가 기준 등에 관한 고시 7차 개정(의학적 및 활동능력 평가 기준 개선)
- 2021.12.31. 근로능력평가 기준 등에 관한 고시 8차 개정
(영구고착질환 신설, 등록장애인 중 요건 충족자 구비서류 생략 등 개선)
- 2022. 9.15. 근로능력평가 기준 등에 관한 고시 9차 개정
(근로능력평가 적용 범위에 타법 의료급여수급권자 추가)
- 2022.12. 30. 근로능력평가 기준 등에 관한 고시 10차 개정
(영구고착질환 확대, 연속 3회 이상 '근로능력 없음' 유효기간 연장 등 개선)

1-3 주요 변경 내용

1 2023년 근로능력평가제도 개선 요약

(1) 호전가능성 없는 영구고착질환 범위 확대('23.1.1.)

- (영구고착 질환) 고착 질환 중 의학적 상태가 영구적으로 호전 가능성이 없는 경우로서 의학적 평가를 통해 인정받은 17개 질환
 - (기존) ① 절단, ② 변형, ③ 다리길이 차이, ④ 인공관절 치환술, ⑤ 척추고정, ⑥ 척추변형, ⑦ 무안구증·각막문신, ⑧ 장기이식, ⑨ 위루·장루·요루, ⑩ 전절제술
 - (추가) ① 팔·다리(3대 관절)의 관절 유합술, ② 안구로, ③ 심장판막치환술, ④ 삽입형 제세동기, ⑤ 영구적 인공심박동기, ⑥ 인공방광, ⑦ 조혈모세포이식
- 공단이 '영구고착 질환'으로 인정한 경우 다음 평가부터 의학적 평가 생략
- 직전 의학적 평가 결과가 영구고착 질환만으로 3~4단계인 경우에는 근로능력평가를 유예하고, 직전 평가와 동일하게 유효기간을 설정

(2) 연속 3회 '근로능력 없음' 평가를 받은 정기평가자의 유효기간 연장('23.12.1.)

- 연속 3회 이상 '근로능력 없음'을 받은 정기평가자의 유효기간을 고착 1단계는 3년으로 연장하고, 고착 2~4단계는 5년, 비고착 2~4단계는 4년으로 연장

호전가능성	의학적 단계	판정 유효기간	연속 3회 이상 '근로능력 없음'인 정기평가자
고착	1단계	2년	3년
	2~4단계	3년	5년
비고착	1단계	1년	-
	2~4단계	2년	4년

※ 연속 '근로능력 없음'을 받은 3회차의 유효기간부터 적용, 비고착 1단계는 호전가능성을 고려하여 제외

(3) 근로능력평가 적용 범위에 타법 의료급여수급권자 포함('23.1.1.)

- (기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권자
- (추가) 「의료급여법」에 따른 타법 의료급여 수급권자
 - 의사상자, 국가유공자, 무형문화재, 북한이탈주민,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2 주요 변경 내용 비교표

※ 자세한 내용은 사업안내 본문을 반드시 확인하여 처리

구분 (페이지)	2022년	2023년
2-1. 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 (p.14~19)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7조제4항에 따른 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사람에 대한 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7조제4항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3조제3항에 따른 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사람에 대한 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2항 및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법 제26조에 따른 수급자(이하 "평가대상자"라 한다) 중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질병, 부상 또는 그 후유증으로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사람에 대하여 의학적 평가와 활동능력 평가를 통해 근로능력 유무를 판정하는 업무처리에 적용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의 적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2항 및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법 제26조에 따른 수급권자 중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질병, 부상 또는 그 후유증으로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사람에 대하여 의학적 평가와 활동능력 평가를 통해 근로능력 유무를 판정하는 업무처리 2.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 규정에 따른 수급권자 중에서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3조제2항 제1호가목4)에 따른 질병, 부상 또는 그 후유증으로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사람에 대하여 의학적 평가와 활동능력 평가를 통해 근로능력 유무를 판정하는 업무처리
	제3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내용 추가)	제3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평가대상자"란 법 제8조제2항 및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법 제26조에 따른 수급권자와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급권자를 말한다.

구분 (페이지)	2022년	2023년
	제12조(근로능력 판정의 유효기간 등) ① 제11조에 따른 "근로능력 없음" 판정의 유효기간은 판정을 받은 날부터 1년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의학적 평가 결과가 1단계 고착 및 2~4단계 비교착인 경우 그 유효기간을 2년으로 할 수 있다. 2. 의학적 평가 결과가 2~4단계이며 고착으로 평가된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을 3년으로 할 수 있다. (내용 추가)	제12조(근로능력 판정의 유효기간 등) ① 제11조에 따른 "근로능력 없음" 판정의 유효기간은 판정을 받은 날부터 1년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의학적 평가 결과가 1단계 고착 및 2~4단계 비교착인 경우 그 유효기간을 2년으로 할 수 있다. 2. 의학적 평가 결과가 2~4단계이며 고착으로 평가된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을 3년으로 할 수 있다. 3. 근로능력평가 결과가 연속 3회 이상 '근로능력 없음'인 정기평가자는 그 유효기간을 다음과 같이 할 수 있다. 가. 의학적 평가 결과가 1단계 고착인 경우 3년, 2~4단계 고착인 경우 5년으로 할 수 있다. 나. 의학적 평가 결과가 2~4단계 비교착인 경우 그 유효기간을 4년으로 할 수 있다.
2-2. 의학적 평가 기준 (p.20)	1. 목적 이 기준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7조제4항에 따라 근로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질환이나 장애 정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목적 이 기준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7조제4항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3조제3항에 따라 근로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질환이나 장애 정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2. 의학적 평가 기준 (p.20)	2. 적용범위 가. 이 기준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8조제2항 및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법 제26조에 따른 수급자에 대해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 제2호에 따른 근로능력판정을 위한 의학적 평가를 하는 때에 적용한다.	2. 적용 범위 가. 이 기준은 다음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 근로능력판정을 위한 의학적 평가를 하는 때에 적용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2항 및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법 제26조에 따른 수급권자 2)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 규정에 따른 수급권자

구분 (페이지)	2022년	2023년
2-2. 의학적 평가 기준 (p.25)	【상·하지】 ● 평가방법 - 절단, 변형, 다리길이 차이, 인공관절 치환술은 영구고착 질환으로 평가할 수 있다.	【상·하지】 ● 평가방법 - 절단, 변형, 다리길이 차이, 팔다리 3대 관절의 인공관절치환술과 관절유합술은 영구고착 질환으로 평가할 수 있다. ※ 관절유합술은 관절을 완전히 유합하는 수술에 한함
2-2. 의학적 평가 기준 (p.32)	【상·하지】 ● 평가방법 - 절단, 변형, 다리길이 차이, 인공관절 치환술은 영구고착 질환으로 평가할 수 있다.	【상·하지】 ● 평가방법 - 절단, 변형, 다리길이 차이, 팔다리 3대 관절의 인공관절치환술과 관절유합술은 영구고착 질환으로 평가할 수 있다. ※ 관절유합술은 관절을 완전히 유합하는 수술에 한함
2-2. 의학적 평가 기준 (p.51)	【시각】 ● 평가방법 - 무안구증 및 각막문신은 영구고착 질환으로 평가할 수 있다.	【시각】 ● 평가방법 - 무안구증, 안구로 및 각막문신은 영구고착 질환으로 평가할 수 있다.
2-2. 의학적 평가 기준 (p.52)	5. 심혈관계 질환 ● 평가방법 - 심장이식은 영구고착 질환으로 평가할 수 있다.	5. 심혈관계 질환 ● 평가방법 - 심장이식, 영구적 인공심박동기, 삽입형 제세동기 및 심장판막치환술은 영구고착 질환으로 평가할 수 있다.
2-2. 의학적 평가 기준 (p.59)	8. 비뇨기계 질환 ● 평가방법 - 신장이식 및 요루는 영구고착 질환으로 평가할 수 있다.	8. 비뇨기계 질환 ● 평가방법 - 신장이식, 요루 및 인공방광은 영구고착 질환으로 평가할 수 있다.

구분 (페이지)	2022년	2023년
2-2. 의학적 평가 기준 (p.63)	10. 혈액 및 종양질환계 질환 ● 평가방법 - 뇌하수체·갑상선·부신 전절제술은 영구고착 질환으로 평가할 수 있다.	10. 혈액 및 종양질환계 질환 ● 평가방법 - 조혈모세포이식, 뇌하수체·갑상선·부신 전절제술은 영구고착 질환으로 평가할 수 있다.
2-3. 활동능력 평가 기준 (p.68)	1. 목적 이 기준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7조제4항에 따라 근로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능력 정도를 평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기준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8조제2항 및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수급권자와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수급자에 대해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4항에 따라 근로능력판정을 위한 활동능력 평가를 하는 때에 적용한다.	1. 목적 이 기준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7조제4항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3조제3항에 따라 근로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능력 정도를 평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가. 이 기준은 다음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 근로능력판정을 위한 의학적 평가를 하는 때에 적용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2항 및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법 제26조에 따른 수급권자 2) 「의료급여법」제3조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 규정에 따른 수급권자
3-1. 근로능력판정 대상 (p.75)	1.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 ● 18세 이상 64세 이하의 수급자로서 다음의 근로능력이 없는 수급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만 18세('22년 기준 2004년생) 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만 65세('22년 기준 1957년생) 생일이 속한 달의 이전 달까지]	1.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 ● 18세 이상 64세 이하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사상자, 국가유공자, 무형문화재, 북한이탈주민, 5·18민주화운동 관련자로서 다음의 근로능력이 없는 수급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만 18세('23년 기준 2005년생) 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만 65세('23년 기준 1958년생) 생일이 속한 달의 이전 달까지]

구분 (페이지)	2022년	2023년																																																						
3-2. 질병·부상자에 대한 근로능력판정 (p.84)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없는 지역] - '22.1월 기준으로 업데이트 <table><tr><th>시도</th><th>계</th><th>시·군·구</th></tr><tr><td>강원</td><td>10</td><td>양구군, 평창군, 횡성군, 영월군, 정선군, 철원군, 화천군, 인제군, 고성군, 양양군</td></tr><tr><td>충북</td><td>2</td><td>증평군, 단양군</td></tr><tr><td>충남</td><td>3</td><td>태안군, 계룡시, 청양군</td></tr><tr><td>전북</td><td>3</td><td>무주군, 진안군, 장수군</td></tr><tr><td>전남</td><td>5</td><td>구례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함평군</td></tr><tr><td>경북</td><td>8</td><td>울진군, 군위군, 영양군, 영덕군, 고령군, 예천군, 봉화군, 울릉군</td></tr><tr><td>경남</td><td>2</td><td>남해군, 산청군</td></tr><tr><td>계</td><td>33</td><td></td></tr></table>	시도	계	시·군·구	강원	10	양구군, 평창군, 횡성군, 영월군, 정선군, 철원군, 화천군, 인제군, 고성군, 양양군	충북	2	증평군, 단양군	충남	3	태안군, 계룡시, 청양군	전북	3	무주군, 진안군, 장수군	전남	5	구례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함평군	경북	8	울진군, 군위군, 영양군, 영덕군, 고령군, 예천군, 봉화군, 울릉군	경남	2	남해군, 산청군	계	33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없는 지역] - '23.1월 기준으로 업데이트 <table><tr><th>시도</th><th>계</th><th>시·군·구</th></tr><tr><td>강원</td><td>10</td><td>양구군, 평창군, 횡성군, 영월군, 정선군, 철원군, 화천군, 인제군, 고성군, 양양군</td></tr><tr><td>충북</td><td>2</td><td>증평군, 단양군</td></tr><tr><td>충남</td><td>3</td><td>태안군, 계룡시, 청양군</td></tr><tr><td>전북</td><td>3</td><td>무주군, 진안군, 장수군</td></tr><tr><td>전남</td><td>4</td><td>구례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td></tr><tr><td>경북</td><td>8</td><td>울진군, 군위군, 영양군, 영덕군, 고령군, 예천군, 봉화군, 울릉군</td></tr><tr><td>경남</td><td>2</td><td>남해군, 산청군</td></tr><tr><td>계</td><td>32</td><td></td></tr></table>	시도	계	시·군·구	강원	10	양구군, 평창군, 횡성군, 영월군, 정선군, 철원군, 화천군, 인제군, 고성군, 양양군	충북	2	증평군, 단양군	충남	3	태안군, 계룡시, 청양군	전북	3	무주군, 진안군, 장수군	전남	4	구례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경북	8	울진군, 군위군, 영양군, 영덕군, 고령군, 예천군, 봉화군, 울릉군	경남	2	남해군, 산청군	계	32	
시도	계	시·군·구																																																						
강원	10	양구군, 평창군, 횡성군, 영월군, 정선군, 철원군, 화천군, 인제군, 고성군, 양양군																																																						
충북	2	증평군, 단양군																																																						
충남	3	태안군, 계룡시, 청양군																																																						
전북	3	무주군, 진안군, 장수군																																																						
전남	5	구례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함평군																																																						
경북	8	울진군, 군위군, 영양군, 영덕군, 고령군, 예천군, 봉화군, 울릉군																																																						
경남	2	남해군, 산청군																																																						
계	33																																																							
시도	계	시·군·구																																																						
강원	10	양구군, 평창군, 횡성군, 영월군, 정선군, 철원군, 화천군, 인제군, 고성군, 양양군																																																						
충북	2	증평군, 단양군																																																						
충남	3	태안군, 계룡시, 청양군																																																						
전북	3	무주군, 진안군, 장수군																																																						
전남	4	구례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경북	8	울진군, 군위군, 영양군, 영덕군, 고령군, 예천군, 봉화군, 울릉군																																																						
경남	2	남해군, 산청군																																																						
계	32																																																							
3-2. 질병·부상자에 대한 근로능력판정 (p.97)	<근로능력 없음 판정자의 판정 유효기간> <table><tr><th>구분</th><th>단계</th><th>판정 유효기간</th></tr><tr><td rowspan="2">고착</td><td>1단계</td><td>2년</td></tr><tr><td>2~4단계</td><td>3년</td></tr><tr><td rowspan="2">비고착</td><td>1단계</td><td>1년</td></tr><tr><td>2~4단계</td><td>2년</td></tr></table>	구분	단계	판정 유효기간	고착	1단계	2년	2~4단계	3년	비고착	1단계	1년	2~4단계	2년	<근로능력 없음 판정자의 판정 유효기간> <table><tr><th>구분</th><th>단계</th><th>판정 유효기간</th><th>연속 3회 이상 '근로능력 없음'인 정기평가자</th></tr><tr><td rowspan="2">고착</td><td>1단계</td><td>2년</td><td>3년</td></tr><tr><td>2~4단계</td><td>3년</td><td>5년</td></tr><tr><td rowspan="2">비고착</td><td>1단계</td><td>1년</td><td>-</td></tr><tr><td>2~4단계</td><td>2년</td><td>4년</td></tr></table>	구분	단계	판정 유효기간	연속 3회 이상 '근로능력 없음'인 정기평가자	고착	1단계	2년	3년	2~4단계	3년	5년	비고착	1단계	1년	-	2~4단계	2년	4년																							
구분	단계	판정 유효기간																																																						
고착	1단계	2년																																																						
	2~4단계	3년																																																						
비고착	1단계	1년																																																						
	2~4단계	2년																																																						
구분	단계	판정 유효기간	연속 3회 이상 '근로능력 없음'인 정기평가자																																																					
고착	1단계	2년	3년																																																					
	2~4단계	3년	5년																																																					
비고착	1단계	1년	-																																																					
	2~4단계	2년	4년																																																					
4-1. 근로능력평가 개요 (p.106)	1. 근로능력평가 대상 (1)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는 18세 이상 64세 이하의 수급자임	1. 근로능력평가 대상 (1)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는 18세 이상 64세 이하의 수급자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의료급여법 제3조 제1항 제3호부터 8호에 의한 수급권자(의사상자, 국가유공자, 무형문화재, 북한이탈주민,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중 '근로능력이 없는 수급자'(p.75)에 해당하지 않는 자																																																						

구분 (페이지)	2022년	2023년
4-2. 근로능력평가 개요 (p.107)	2. 의학적 평가의 적용범위 및 평가대상 질환 (1) 적용 범위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및 수급자에 대해 근로능력판정을 위한 의학적 평가를 하는 때에 적용함	2. 의학적 평가의 적용범위 및 평가대상 질환 (1) 적용 범위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및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및 수급자에 대해 근로능력판정을 위한 의학적 평가를 하는 때에 적용함

제 2 장

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

- 2-1. 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
- 2-2. 의학적 평가기준(제8조 제4항 [별표 1])
- 2-3. 활동능력 평가기준(제10조 제4항 [별표 2])

2-1

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정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243호 (2009.12.31.)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 34호 (2010. 3. 4.)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134호 (2011. 1. 1.)
 전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151호 (2012.11.30.)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 41호 (2014. 3.19.)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 62호 (2015. 4.17.)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 89호 (2016. 6.10.)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9호 (2020. 1.13.)
 타법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2호 (2021. 1. 5.)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363호 (2021.12.31.)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14호 (2022. 9.15.)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304호 (2022.12.30.)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7조제4항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3조제3항에 따른 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사람에 대한 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의 적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2항 및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법 제26조에 따른 수급권자 중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질병, 부상 또는 그 후유증으로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사람에 대하여 의학적 평가와 활동능력 평가를 통해 근로능력 유무를 판정하는 업무처리
2. 「의료급여법」제3조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 규정에 따른 수급권자 중에서 「의료급여법 시행령」제3조제2항제1호가목4)에 따른 질병, 부상 또는 그 후유증으로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사람에 대하여 의학적 평가와 활동능력 평가를 통해 근로능력 유무를 판정하는 업무처리

제3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평가대상자”란 법 제8조제2항 및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법 제26조에 따른 수급권자와 「의료급여법」제3조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급권자를 말한다.
2. "의학적 평가"란 「국민연금법」 제24조에 따른 국민연금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사 또는 한의사가 발급한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및 진료기록지 사본 등을 검토하여 별표 1의 의학적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대상 질환별로 단계를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3. "활동능력 평가"란 공단이 평가대상자에 대한 면담 또는 실태조사 등을 통해 별표 2의 활동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4. "활동능력 간이평가"란 별표 2의 활동능력 평가항목 중 중요한 신체능력 및 인지능력 평가항목을 대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5. "의학적 평가 자문위원(이하 "자문위원"이라 한다)"이란 제1호의 의학적 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자문을 구하기 위해 공단에서 위촉한 의사 또는 한의사를 말한다.
6. "고착"이란 질병이나 부상의 의학적 상태가 2년 이상 호전 가능성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
7. "영구고착"이란 특정 고착질환의 의학적 상태가 영구적으로 호전 가능성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
8. "영구고착 질환"이란 영구고착으로 의학적 평가를 받은 질환을 말한다.

제4조(평가 신청) ① 근로능력이 없다는 판정을 받고자 하는 평가대상자는 근로능력 평가 신청서,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진료기록지 사본 등 의학적 평가에 필요한 서류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능력평가 신청서만 제출할 수 있다.

1. 영구고착 질환으로 근로능력평가를 요청하는 경우
2.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이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근로능력평가를 요청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근로능력평가 신청서,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진료기록지 사본 등을 제출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질병상태의 확인 등 평가를 위하여 검사결과 등의 자료가 추가로 필요한 경우 평가대상자에게 자료의 보완 또는 추가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평가대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평가대상자가 2회 이상 자료제출을 거부한 때에는 "근로능력 있음"으로 판정할 수 있다.

제5조(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발급 등) ① 의사 또는 한의사가 근로능력 평가를 위해 발급하는 진단서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로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의사 또는 한의사가 발급하는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에는 별표 1의 의학적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③ 의사 또는 한의사는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외에 자신이 진료한 것에 대한 진료 기록 및 검사결과 등 관련서류의 발급을 요구받은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조(평가 의뢰 및 취소) ① 제4조에 따라 서류를 제출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소득·재산 확인이 끝나는 대로 공단에 근로능력 유무를 판정하기 위한 평가를 의뢰하여야 한다.

- ② 공단에 평가의뢰 중 평가대상자가 사망, 수급자격 상실, 수급자격 미해당 등 수급권 변동사유가 발생한 경우 즉시 공단에 평가취소를 의뢰하여야 한다.

제7조(근로능력평가) ① 근로능력평가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학적 평가
 2. 활동능력 평가
- ② 공단은 근로능력평가를 위하여 검사결과 등의 자료가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보완을 요청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 ③ 공단은 제2항에 따라 자료의 보완을 2회 이상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료의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아 평가를 진행할 수 없는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평가 의뢰를 반려할 수 있다.
 - ④ 공단은 근로능력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 정신보건센터 그 밖의 관계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⑤ 공단은 근로능력평가가 공단에 접수된 날부터 21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서류보완 등에 따른 기간은 제외한다.

제8조(의학적 평가) ① 의학적 평가는 제출된 관련 서류에 의한 서면평가를 원칙으로 한다.

- ② 공단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출된 서류를 통하여 정확한 의학적 평가가 어려운 경우에는 공단이 정한 자문위원으로 하여금 진단을 하게 할 수 있다.
- ③ 영구고착 질환에 대해서는 의학적 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 ④ 의학적 평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9조(의학적 평가 자문) ① 공단은 제8조에 따른 의학적 평가 시 자문위원의 의학적 자문을 받아 평가를 할 수 있다.

- ② 공단은 의학적 평가 시 보다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회의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자문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의학적 평가기준의 문리적 해석만으로 의학적 평가 단계 결정을 하기 어려워
정밀한 심의가 필요한 사항
2. 질병의 특성, 다른 질병과의 형평성 및 복합질환 등을 고려해야 하는 사항
3. 그 밖에 공단 이사장이 의학적 평가와 관련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 ④ 이 고시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학적 평가 자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단이
정한다.

제10조(활동능력 평가) ① 활동능력 평가는 평가대상자에 대한 면접평가, 관찰평가 및
상황평가 등을 통해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활동능력 평가를 실시하는 공단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제36조의2에 따른 현장조사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③ 공단은 평가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면접평가, 관찰평가 등을 2회 이상 거부
하는 등 활동능력 평가가 현저히 어려운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평가
의뢰를 반려할 수 있다.

④ 활동능력 평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1조(근로능력의 판정 및 통지) ①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근로능력
평가 결과를 공단으로부터 통보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통보 받은 내용을 토대로
근로능력판정을 실시하며, 그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근로능력 없음

가. 의학적 평가 결과가 3단계 및 4단계인 경우

나. 활동능력 간이평가 결과 신체능력 평가항목 중 운동기능이 10점 이하이고
만성적 증상이 3점 이하인 경우 이거나, 인지능력 평가항목 점수의 합이 13점
이하인 경우

다. 의학적 평가 결과가 2단계로서 활동능력 평가 결과가 63점 이하인 경우

라. 의학적 평가 결과가 1단계로서 활동능력 평가 결과가 55점 이하인 경우

2. 근로능력 있음: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7조제3항 및 제10조제3항에 따라 평가 의뢰가 반려된
경우에는 "근로능력 있음"으로 판정할 수 있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판정 결과를 근로능력평가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평가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서류
보완 등에 따른 기간은 제외한다.

제12조(근로능력 판정의 유효기간 등) ① 제11조에 따른 "근로능력 없음" 판정의 유효기간은 판정을 받은 날부터 1년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의학적 평가 결과가 1단계 고착 및 2~4단계 비고착인 경우 그 유효기간을 2년으로 할 수 있다.
 2. 의학적 평가 결과가 2~4단계이며 고착으로 평가된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을 3년으로 할 수 있다.
 3. 근로능력평가 결과가 연속 3회 이상 '근로능력 없음'인 정기평가자는 그 유효기간을 다음과 같이 할 수 있다.
 - 가. 의학적 평가 결과가 1단계 고착인 경우 3년, 2~4단계 고착인 경우 5년으로 할 수 있다.
 - 나. 의학적 평가 결과가 2~4단계 비고착인 경우 그 유효기간을 4년으로 할 수 있다.
 4.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등록된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능력평가를 유예하고, 직전 평가와 동일하게 유효기간을 설정한다.
 - 가. 직전 근로능력평가에서 장애유형과 상응하는 질환유형으로 평가하여 의학적 평가 결과가 2~4단계이면서 근로능력 없음으로 판정
 - 나.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해당 등록 장애유형 유지
 5. 직전 의학적 평가 결과가 영구고착 질환만으로 3~4단계인 경우에는 근로능력평가를 유예하고, 직전 평가와 동일하게 유효기간을 설정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판정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다시 "근로능력 없음" 판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판정의 유효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제5조제1항에 따른 진단서 및 진료기록지 사본 등 의학적 평가에 필요한 서류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근로능력판정 조정)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2조에도 불구하고 수급자의 상병상태가 호전되어 판정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다시 근로능력 판정을 받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수급자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근로능력 있음"으로 판정할 수 있다.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근로능력 상태를 확인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해당 수급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근로능력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근로능력평가 및 판정의 조정에 대하여는 제4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재판정 신청) ① 제11조의 근로능력판정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근로능력판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근로능력 재판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이의신청과 관련된 질병의 내용이 포함된 진료기록지 사본
2. 기타 주장하는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재판정 신청서를 접수한 시장·군수·구청장은 재판정 신청서와 추가서류 등을 첨부하여 제6조에 따라 재평가를 의뢰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재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재평가 접수일부터 21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서류보완 등에 따른 기간은 제외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재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해당 근로능력 평가를 실시했던 공단의 직원 및 자문위원은 재평가에 관여하지 못한다.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통보 받은 재평가 결과를 토대로 근로능력 재판정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11조에 따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재판정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 제38조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하거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15조(근로능력평가기준 변경) 보건복지부장관은 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변경 및 그 밖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전문가에게 의견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 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7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22-304호, 2022. 12. 30.〉

이 고시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1항제3호는 2023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2-2 의학적 평가기준 (제8조 제4항 [별표 1])

제1장 총론

1. 목적

이 기준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7조제4항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3조 제3항에 따라 근로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질환이나 장애 정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 범위

가. 이 기준은 다음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 근로능력판정을 위한 의학적 평가를 하는 때에 적용한다.

-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2항 및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법 제26조에 따른 수급권자
- 2) 「의료급여법」제3조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 규정에 따른 수급권자

나. 평가대상 질환유형은 다음과 같다.

- | | | | |
|---------|----------------|-----------|----------|
| 1) 근골격계 | 2) 신경기능계 | 3) 정신신경계 | 4) 감각기능계 |
| 5) 심혈관계 | 6) 호흡기계 | 7) 소화기계 | 8) 비뇨생식계 |
| 9) 내분비계 | 10) 혈액 및 종양질환계 | 11) 피부질환계 | |

3.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발급기준

가.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발급 주체

- 1) 지속적으로 진찰하고 진료했던 의사 또는 한의사가 제2장의 질환별 평가기준에 따라 진단 후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를 발급한다.

2) 평가대상 질환유형별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발급 주체

평가대상 질환유형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발급 주체
근골격계, 신경기능계	○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사 또는 한의사
정신신경계	○ 의료법 제77조에 따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의사 -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없는 시·군·구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사가 발급 가능 - 기질성 정신질환의 경우 신경과, 신경외과, 재활의학과 전문의 및 담당 의사(동 질환으로 입원중인 경우)도 발급 가능
감각기능계, 심혈관계, 호흡기계, 소화기계, 비뇨생식계, 내분비계, 혈액 및 종양질환계, 피부질환계	○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사

나.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작성 기준

- 1) 질병이 2종류 이상 있는 경우에는 평가대상자의 근로수행능력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최대 2개의 질병에 한하여 진단서 작성이 가능하다.
- 2) 동일한 평가대상 질환유형 내에서는 1개의 질병만을 평가한다. 다만, 다음의 동일한 질환유형 내 질병의 경우는 별도 대상으로 보아 평가할 수 있다.
 - 가) 근골격계 질환유형 내 <상·하지> 및 <척추>
 - 나) 감각기능계 질환유형 내 <청각>, <평형> 및 <시각>
 - 다) 소화기계 질환유형 내 <간질환> 및 <위장질환>
 - 라) 피부질환계 질환유형 내 <피부질환> 및 <외모 및 결손질환>

3) 질환별 진단서 작성 기준

일반질환	통원이나 입원치료 기록이 있는 경우 가능
만성질환 (고혈압, 당뇨 등)	최근 2개월 이내에 치료받은 기록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
정신신경계 질환	3개월 이상 충분한 치료를 시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지속되는 경우 (※ 자해 및 타해 등의 위험으로 시급한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 또는 선천적 지적능력 저하 등 질병이 고착되어 상태의 호전 및 악화의 변화 가능성이 없는 경우는 예외)

※ 만성질환을 제외하고, 통원이나 입원치료 기록이 없으나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내용 및 현재 상태의 구체적 진찰소견을 기재한 소견서 첨부 시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발급이 가능하다

- 이전 진료기관 등에서 해당 질병으로 인한 진료가 있었던 경우
- 질병이나 부상이 고착되어 더 이상의 치료에도 상태의 호전 및 악화 등 변화 가능성이 없는 경우

4) 진단서 작성 내용

- 제2장 질환유형별 평가기준에 따라 상세히 기재한다.

다. 진단서 유효기간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의 유효기간은 진단을 받은 날부터 2개월로 한다.

라. 진료기록지 사본 첨부

의사 또는 한의사는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를 발급하는 경우 평가대상 질병에 대한 최근 2개월간의 진료기록지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4. 평가방법

가. 평가대상 질환별 단계결정은 제2장의 질환유형별 평가기준에 따른다.

나. 동일한 평가대상 질환유형 내에서는 1개의 질병만을 평가한다. 다만, 다음의 동일한 질환 유형 내 질병의 경우는 별도 대상으로 보아 평가할 수 있다.

- 1) 근골격계 질환유형 내 〈상·하지〉 및 〈척추〉
- 2) 감각기능계 질환유형 내 〈청각〉, 〈평형〉 및 〈시각〉
- 3) 소화기계 질환유형 내 〈간질환〉 및 〈위장질환〉
- 4) 피부질환계 질환유형 내 〈피부질환〉 및 〈외모 및 결손질환〉

다. 각기 다른 평가대상 질환유형별 질병이 2종류 이상 있는 경우에는 평가대상자의 근로수행 능력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2개의 질병에 대해서만 평가를 실시한다.

라. 질병이 11개 평가대상 질환유형의 평가 기준에 속하지 아니하더라도 질병이나 부상이 근로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쳐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아래 평가기준을 기초로 해당 질병이나 환자의 상태와 가장 근접한 평가대상 질환유형 중 한 개를 선택하여 그 단계를 평가할 수 있다.

단 계	평 가 기 준
1단계	근로수행능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질병이나 장애로 인한 증상이 있어 주기적인 치료 또는 관찰이 필요한 경우 근로수행능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질병이나 장애가 있어 주기적인 치료중인 경우
2단계	근로수행능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질병이나 장애가 있어 지속적인 치료중이나 증상이 존재하는 경우
3단계	근로수행능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질병이나 장애가 있어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근로수행능력에 제한이 따르는 경우
4단계	근로수행능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질병이나 장애가 있어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근로수행능력에 상당한 제한이 따르는 경우

마. 평가대상 질병이 평가대상자의 근로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미약하여 제2장의 질환유형별 평가 기준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단계외”로 평가한다.

바. 평가대상 질환유형별 평가표에 따른 단계평가 외에도 평가대상자의 질병이나 장애의 고착 및 영구고착 질환 여부를 평가한다.

- 1) 고착이란 질병이나 부상의 의학적 상태가 2년 이상 호전 가능성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
- 2) 영구고착 질환이란 특정 고착질환의 의학적 상태가 영구적으로 호전 가능성이 없다는 의학적 평가를 받은 질환을 말한다.
- 3) 의학적 상태의 호전 가능성에 대한 판단은 질병 또는 부상의 특성, 중증도, 치료경과, 치료의 종결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사. 각 질환유형별 평가방법 및 검사방법 등과 관련하여 장애인복지법상 장애판정기준을 준용할 수 있다.

5. 평가 결과 합산

가. 2종류의 질병이 있는 사람에 대한 의학적 평가결과는 2종류의 질병 중 단계가 높은 질병의 단계보다 1단계 위로 평가한다.

나. 다음의 경우에는 동일 질환유형 내에서라도 근로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중증도를 고려하여 1단계 위로 평가할 수 있다.

- 1) 신경기능계 : 뇌병변 등 기질적 병변에 의한 실어증 또는 지적능력 저하 등이 동반된 경우
- 2) 감각기능계(청각) :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진료기록상 심한 이명이 확인되는 경우
- 3) 내분비계 : 당뇨병으로 인해 합병증이 발생하였으나, 다른 질환유형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제2장 질환유형별 평가기준

1 근골격계 질환

1. 의사용

● 진단서 발급 및 작성기준

가. 진단서 발급기준

- 진단은 지속적으로 진찰하고 진료했던 의사가 실시하고 아래의 평가기준에 따라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를 발급한다.
- 통원이나 입원치료 기록이 있는 경우에 진단서 발급이 가능하고, 최근 2개월간의 진료기록지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 통원이나 입원치료 기록은 없으나, 이전 진료기관 등에서 해당 질환으로 인한 진료가 있었거나 질병이 고착되어 상태의 호전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내용 및 현재 상태의 구체적 진찰소견을 기재한 소견서 첨부시 진단서 발급이 가능하다.

나. 진단서 작성기준(기재사항 및 첨부사항)

- 복용중인 약물이 있을 경우 약물명, 용량 및 복용기간을 기재하고, 기재가 어려울 경우 최근 2개월간의 투약기록지를 첨부할 수 있다.
- 질병의 발생일, 치료내용, 치료기간, 평가기준에 따른 진찰 소견(근력검사결과, 척추 고정술 시행한 경우 수술 종류 및 수술일 등)을 기재하고,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입퇴원요약, 수술기록, 근전도 검사 등 검사자료)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임상소견을 상세히 기재하거나 관련 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다. 검사방법

- 관절운동범위는 수동적 운동범위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근육의 마비가 있거나 외상 후 건이나 근육의 파열이 있는 경우(능동적 관절운동범위가 수동적 관절운동범위에 비해 현저히 작을 경우)에는 능동적 관절운동범위를 사용하여 측정할 수 있다.

라. 유의사항

- 동일한 평가대상 질환유형 내에서는 1개의 질병만을 평가하나, 근골격계 질환유형의 〈상·하지〉 및 〈척추〉는 별도의 평가대상 질환으로 보아 평가할 수 있다.
- ※ 〈상·하지〉질환과 〈척추〉질환이 동반된 경우 각각의 질병에 대하여 평가가 가능하나, 상·하지(또는 척추) 질환 내에서는 1개의 질병만 평가 가능

【상·하지】

● 해당 질병

- 사지골의 절단, 골절, 변형 및 기능장애가 있는 근골격계 질병

● 평가방법

- 약물치료 및 재활 치료경과, 질환의 악화 여부, 합병증 발생 정도, 수술 및 입원치료 경과, 질환의 증증도에 따른 신체활동의 제한, 검사결과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다.
- 절단, 변형, 골절 등에 의한 운동신경마비는 신경기능계질환으로 분류하여 평가한다.
- 절단, 골절, 변형 정도의 확인을 위해서는 판정에 근거가 되는 영상의학 검사 등을 확인할 수 있다.
- 절단, 변형, 다리길이 차이, 팔다리 3대 관절의 인공관절치환술과 관절유합술은 영구 고착 질환으로 평가할 수 있다.
- ※ 관절유합술은 관절을 완전히 유합하는 수술에 한함
- 팔의 3대 관절은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을 말하고, 다리의 3대 관절은 엉덩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을 말한다.
- 관절염 등으로 인해 관절 구축 등 관절운동범위 제한이 동반된 경우 관절기능으로 분류하여 평가할 수 있다.

● 평가표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절단	상지	- 한 손의 둘째손가락이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절단된 경우 - 한 손의 셋째, 넷째, 다섯째 손가락 중 2개의 손가락이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절단된 경우	- 한 손의 엄지손가락이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절단된 경우 -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이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절단된 경우 - 한 손의 셋째, 넷째, 다섯째 손가락 모두가 각각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절단된 경우	- 한 손의 엄지손가락이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절단되고, 1개의 손가락이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절단된 경우 - 한 손의 엄지손가락이 중수수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절단된 경우 -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의 손가락이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절단된 경우	- 두 손의 엄지손가락이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절단된 경우 - 한 손의 엄지손가락이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절단되고, 둘째손가락이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절단된 경우 - 한 손의 엄지손가락이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절단되고, 2개의 손가락이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절단된 경우
	하지	한 발의 엄지발가락이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절단된 경우	한 발이 발목발허리관절 (Lisfranc joint) 이상 부위에서 절단된 경우	- 두 발의 엄지발가락이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절단되고, 다른 모든 발가락이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절단된 경우 - 한 발이 가로발목뼈관절 (Chopart's joint) 이상 부위에서 절단된 경우	- 두 발이 발목발허리관절 (Lisfranc joint) 이상 부위에서 절단된 경우 - 한 다리가 발목관절 이상 부위에서 절단된 경우
변형			- 신장이 145cm 이하인 남성 - 신장이 140cm 이하인 여성		
다리길이 차이		1.5cm 이상 5cm 미만 차이가 있는 경우	간축보다 5cm 이상 또는 간축 길이의 15분의 1 이상 짧은 경우	간축보다 10cm 이상 또는 간축 길이의 10분의 1 이상 짧은 경우	
연부조직 (건초염, 활액낭염, 염좌 등)		연부조직 손상의 소견으로 주기적인 치료중 이거나, 주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	연부조직 손상 소견으로 지속적인 치료중이나 증상이 있는 경우	연부조직 손상 소견으로 적극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조절되지 않는 통증 또는 기능제한이 있는 경우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관절 기능	- 한 팔 또는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운동범위가 25% 이상 제한된 경우 - 관절의 불안정성(인대손상, 동요관절, 인공관절 등)이 있는 경우	- 한 팔 또는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의 운동 범위가 25% 이상 제한된 경우 - 관절의 불안정성(인대 손상, 동요관절 등)으로 보조기가 필요한 경우 - 한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운동범위가 50% 이상 제한된 경우 - 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50% 이상 75% 미만 제한된 경우 -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 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제한된 경우 -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 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75% 미만 제한된 경우 - 한 손의 셋째, 넷째, 다섯째 손가락 모두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제한된 경우 - 한 다리의 엉덩관절 또는 무릎관절의 운동범위가 50% 이상 제한된 경우 - 한 다리의 발목관절의 운동범위가 75% 이상 제한된 경우	- 한 팔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의 운동범위가 50% 이상 75% 미만 제한된 경우 - 한 팔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25% 이상 50% 미만 제한된 경우 - 두 손의 엄지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75% 미만 제한된 경우 - 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75% 이상 제한된 경우 -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의 관절총 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75% 미만 제한된 경우 - 한 손의 엄지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75% 미만 제한된 경우 - 한 다리의 엉덩관절 또는 무릎관절의 운동범위가 75% 이상 제한된 경우 - 한 다리의 발목관절이 완전강직 되었거나 운동 범위가 90% 이상 제한된 경우 -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75% 미만 제한된 경우	- 한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운동범위가 75% 이상 제한된 경우 - 두 손의 엄지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제한된 경우 -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제한된 경우 - 한 손의 엄지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제한된 경우 - 한 손의 엄지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 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75% 미만 제한된 경우 - 두 다리 각각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75% 미만 제한된 경우 - 두 다리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25% 이상 50% 미만 제한된 경우 - 한 다리의 엉덩관절 또는 무릎관절이 완전강직 되었거나 운동범위가 90% 이상 제한된 경우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 한 다리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25% 이상 50% 미만 제한된 경우 - 두 발의 모든 발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제한된 경우	-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제한된 경우 - 한 다리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75% 미만 제한된 경우
골절	- 골절로 인해 주기적으로 치료중이거나, 증상이 있어 주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	- 골절로 인해 지속적으로 치료중이나, 신체활동의 제한이 예상되는 경우	- 골절 병력으로 인해 기능장애 등 합병증이 발생하였거나, 합병증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 장관골의 골절 치료 중으로, 1개월 이상 고정이 필요하고 일상생활이 현저하게 제한되는 경우 - 장관골의 골절 후 가관절이 남거나 불유합되어 기능 장애가 있는 경우
관절염	- 방사선검사 또는 이학적 검사상 관절염 소견이 있으며 주기적으로 치료중이거나, 주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	- 방사선검사 또는 이학적 검사상 관절염 소견이 있으며, 지속적인 치료 중이나 통증이 있는 경우	- 방사선검사 또는 이학적 검사상 관절염 소견이 있으며, 적극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조절되지 않는 통증 또는 기능제한이 있는 경우	

【척추】

● 해당 질병

- 척추골절 및 척추 퇴행성 질환, 척추 신경근병증을 일으키는 질환, 척추변형 등

● 평가 방법

- 수술 후 운동마비(후유증으로 근로가 어려운 경우)가 발생한 경우 척추질환에 준하여 적용하고, 근력은 도수근력검사를 통해 평가한다.

* 근력평가방법

- 근력등급 0(不用) : 근육수축이 불가능
 - 근력등급 1(重症) : 약간의 근육수축은 가능하나 관절운동은 불가능
 - 근력등급 2(無力) : 중력은 이겨내지 못하지만 수평적 관절 움직임은 가능
 - 근력등급 3(中症) : 중력은 이겨내지만 약한 힘에도 저항하지 못함
 - 근력등급 4(輕症) : 중력과 약한 힘에 대해 이겨내어 움직일 수 있음
 - 근력등급 5(正常) : 강한 힘에 대해 충분히 이겨내어 움직일 수 있음
- 운동마비는 이학적 검사 외에 영상의학 검사 또는 근전도검사 소견 등 객관적 검사 소견을 확인할 수 있다.
 - 척추분절에 운동을 허용하도록 고안된 인공 디스크삽입술, 연성고정술, 와이어 고정술은 고정된 분절로 보지 않는다.
 - 척추 고정 및 척추 변형은 영구고착 질환으로 평가할 수 있다.
 - 척추의 운동범위는 장애부위에 따라 경추부와 체간부(흉·요추)로 나누어 측정하는데 각 추체간의 정상 운동범위는 다음과 같다.

〈척추 운동단위별 표준 운동기능영역〉

목뼈부	뒤통수뼈 -1목뼈	1-2 목뼈	2-3 목뼈	3-4 목뼈	4-5 목뼈	5-6 목뼈	6-7 목뼈	7목뼈 -1등뼈	계
운동범위	13	10	8	13	12	17	16	6	95
등·허리 뼈부	10-11 등뼈	11-12 등뼈	12등뼈 -1허리뼈	1-2 허리뼈	2-3 허리뼈	3-4 허리뼈	4-5 허리뼈	5허리뼈 -1엉치뼈	계
운동범위	9	12	12	12	14	15	17	20	111

● 평가표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척추 고정	- 목뼈 또는 등·허리뼈 운동범위가 정상의 1/5 미만 감소	- 목뼈 또는 등·허리뼈 운동범위가 정상의 1/5 이상 감소	- 목뼈 또는 등·허리뼈 운동범위가 정상의 2/5 이상 감소	- 목뼈 또는 등·허리뼈 운동범위가 정상의 3/5 이상 감소
척추 골절	- 척추골절로 주기적인 치료중이거나, 증상이 있어 주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	- 척추골절로 인해 지속적 으로 치료중이나, 신체 활동의 제한이 예상되는 경우	- 척추골절 발생 병력이 있고, 그로인해 기능장애 등 합병증이 발생한 경우	- 척추의 급성골절이 발생하여 치료중으로, 1개월 이상 고정이 필요하고 일상생활이 현저하게 제한되는 경우
척추 질환	- 척추질환으로 주기적인 치료중이거나, 증상이 있어 주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	- 척추신경근병증 소견이 있고 한 팔 또는 한 다리에 운동마비가 있는 경우(근력등급 4) - 척추질환으로 지속적인 치료중이나 증상이 존재하는 경우	- 척추신경근병증 소견이 있고 한 팔 또는 한 다리에 운동마비가 있는 경우(근력등급 3) - 척추질환으로 적극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조절되지 않는 통증 또는 기능제한이 있는 경우	- 척추신경근병증 소견이 있고 두 팔 또는 두 다리에 운동마비가 있는 경우(근력등급 3) - 척추질환으로 대소변 조절이 어려운 경우
척추 변형		-척추옆굽음증(척추측 만증)이 있으며, 만곡각도가 40도 이상인 경우 -척추뒤굽음증(척추후 만증)이 있으며, 만곡각도가 60도 이상인 경우		

2. 한의사용

● 진단서 발급 및 작성기준

가. 진단서 발급기준

- 진단은 지속적으로 진찰하고 진료했던 한의사가 실시하고 아래의 평가 기준에 따라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를 발급한다.
- 통원이나 입원치료 기록이 있는 경우에 진단서 발급이 가능하고, 최근 2개월간의 진료기록지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 * 통원이나 입원치료 기록은 없으나, 이전 진료기관 등에서 해당 질환으로 인한 진료가 있었거나 질병이 고착되어 상태의 호전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내용 및 현재 상태의 구체적 진찰소견을 기재한 소견서 첨부 시 진단서 발급이 가능하다.

나. 진단서 작성기준(기재사항 및 첨부사항)

- 질병의 발생일, 치료내용, 치료기간, 평가기준에 따른 진찰 소견(근력검사결과 등)을 기재하고,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입퇴원요약, 검사자료 등)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임상소견을 상세히 기재하거나 관련 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다. 검사방법

- 관절운동범위는 수동적 운동범위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근육의 마비가 있거나 외상 후 건이나 근육의 파열이 있는 경우(능동적 관절운동범위가 수동적 관절운동범위에 비해 현저히 작을 경우)에는 능동적 관절운동범위를 사용하여 측정할 수 있다.

라. 유의사항

- 동일한 평가대상 질환유형 내에서는 1개의 질병만을 평가하나, 근골격계 질환유형의 <상·하지> 및 <척추>는 별도의 평가대상 질환으로 보아 평가할 수 있다.
 - ※ <상·하지> 질환과 <척추 질환>이 동반된 경우 각각의 질병에 대하여 평가가 가능하나, 상·하지(또는 척추) 내에서는 1개의 질병만 평가 가능

【상·하지】

● 해당 질병

- 사지골의 절단, 골절, 변형 및 기능장애가 있는 근골격계 질병

● 평가방법

- 근골격에 대한 한의학적 근로능력 평가기준은 신체검사와 증후학적 평가를 위주로 한다.
- 근로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지절의 절단, 골절의 병력, 관절의 가동범위로 평가한다.
- 상지의 경우 어깨 관절, 팔꿈치 관절, 손목관절, 손가락관절을, 하지의 경우 엉덩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 등의 관절운동범위와 통증 유무, 결손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 통증의 평가는 통증의 부위와 진찰 시 압통이 있는 관절 부위를 확인하고 통증의 종류와 강도를 구분하여 평가(예, 자통, 둔통, 작열통, 간헐통, 마비통 등과 경통, 중등도통, 중통 등)하며, 사지 중에 절단이나 질환 및 기타 이유로 결손이 있는지 확인한다.
- 절단, 변형, 골절 등에 의한 운동신경마비는 신경기능계질환으로 분류하여 평가한다.
- 절단, 골절, 변형 정도의 확인을 위해서는 판정에 근거가 되는 영상의학 검사 등을 확인할 수 있다.
- 절단, 변형, 다리길이 차이, 팔다리 3대 관절의 인공관절치환술과 관절유합술은 영구고착질환으로 평가할 수 있다.
※ 관절유합술은 관절을 완전히 유합하는 수술에 한함
- 팔의 3대 관절은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을 말하고, 다리의 3대 관절은 엉덩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을 말한다.
- 관절염 등으로 인해 관절 구축 등 관절운동범위 제한이 동반된 경우 관절기능으로 분류하여 평가할 수 있다.

● 평가표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절단	상지	- 한 손의 둘째손가락이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절단된 경우 - 한 손의 셋째, 넷째, 다섯째 손가락 중 2개의 손가락이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절단된 경우	- 한 손의 엄지손가락이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절단된 경우 -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이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절단된 경우 - 한 손의 셋째, 넷째, 다섯째 손가락 모두가 각각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절단된 경우	- 한 손의 엄지손가락이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절단되고, 1개의 손가락이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절단된 경우 - 한 손의 엄지손가락이 중수수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절단된 경우 -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의 손가락이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절단된 경우	- 두 손의 엄지손가락이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절단된 경우 - 한 손의 엄지손가락이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절단되고, 둘째손가락이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절단된 경우 - 한 손의 엄지손가락이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절단되고, 2개의 손가락이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절단된 경우
	하지	- 한 발의 엄지발가락이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절단된 경우	- 한 발이 발목발허리관절(Lisfranc joint) 이상 부위에서 절단된 경우	- 두 발의 엄지발가락이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절단되고, 다른 모든 발가락이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절단된 경우 - 한 발이 가로발목뼈관절(Chopart's joint) 이상 부위에서 절단된 경우	- 두 발이 발목발허리관절(Lisfranc joint) 이상 부위에서 절단된 경우 - 한 다리가 발목관절 이상 부위에서 절단된 경우
변형			- 신장이 145cm 이하인 남성 - 신장이 140cm 이하인 여성		
다리길이 차이		- 1.5cm 이상 5cm 미만 차이가 있는 경우	- 건축보다 5cm 이상 또는 건축 길이의 15분의 1 이상 짧은 경우	- 건축보다 10cm 이상 또는 건축 길이의 10분의 1 이상 짧은 경우	
연부조직 (건초염, 활액낭염, 염좌)		- 연부조직 손상의 소견으로 주기적인 치료중이거나, 주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	- 연부조직 손상 소견으로 지속적인 치료중이나 증상이 있는 경우	- 연부조직 손상 소견으로 적극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조절되지 않는 통증 또는 기능 제한이 있는 경우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관절 기능	- 한 팔 또는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운동범위가 25% 이상 제한된 경우 - 관절의 불안정성(인대손상, 동요관절, 인공관절 등)이 있는 경우	- 한 팔 또는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의 운동범위가 25% 이상 제한된 경우 - 관절의 불안정성(인대손상, 동요관절 등)으로 보조기가 필요한 경우 - 한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운동범위가 50% 이상 제한된 경우 - 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관절총운동 범위가 50% 이상 75% 미만 제한된 경우 -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 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제한된 경우 -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 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75% 미만 제한된 경우 - 한 손의 셋째, 넷째, 다섯째 손가락 모두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제한된 경우 - 한 다리의 엉덩관절 또는 무릎관절의 운동범위가 50% 이상 제한된 경우 - 한 다리의 발목관절의 운동범위가 75% 이상 제한된 경우	- 한 팔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의 운동범위가 50% 이상 75% 미만 제한된 경우 - 한 팔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25% 이상 50% 미만 제한된 경우 - 두 손의 엄지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75% 미만 제한 - 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75% 이상 제한 -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의 관절총 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75% 미만 제한 - 한 손의 엄지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75% 미만 제한된 경우 - 한 다리의 엉덩관절 또는 무릎관절의 운동범위가 75% 이상 제한된 경우 - 한 다리의 발목관절이 완전강직 되었거나 운동범위가 90% 이상 제한된 경우 -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75% 미만 제한된 경우 - 한 다리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25% 이상 50% 미만 제한된 경우	- 한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운동범위가 75% 이상 제한된 경우 - 두 손의 엄지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제한된 경우 -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제한된 경우 - 한 손의 엄지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제한된 경우 - 한 손의 엄지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 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75% 미만 제한된 경우 - 두 다리 각각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75% 미만 제한된 경우 - 두 다리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25% 이상 50% 미만 제한된 경우 - 한 다리의 엉덩관절 또는 무릎관절이 완전강직 되었거나 운동범위가 90% 이상 제한된 경우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 두 발의 모든 발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제한된 경우	-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제한된 경우 - 한 다리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75% 미만 제한된 경우
골절	- 골절로 인해 주기적으로 치료중이거나, 증상이 있어 주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	- 골절로 인해 지속적으로 치료중이나, 신체활동의 제한이 예상되는 경우	- 골절 병력으로 인해 기능장애 등 합병증이 발생하였거나, 합병증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 장관골의 골절 치료중으로, 1개월 이상 고정이 필요하고 일상생활이 현저하게 제한되는 경우 - 장관골의 골절 후 가관절이 남거나 불유합되어 기능 장애가 있는 경우
관절염	- 이학적 검사상 관절염 소견이 있으며 주기적으로 치료중이거나, 주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	- 이학적 검사상 관절염 소견이 있으며, 지속적인 치료 중이나 통증이 있는 경우	- 이학적 검사상 관절염 소견이 있으며, 적극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조절되지 않는 통증 또는 기능제한이 있는 경우	

【척추】

● 해당 질병

- 척추골절 및 척추 퇴행성 질환, 척추 신경근병증을 일으키는 질환, 척추변형 등

● 평가 방법

- 운동마비(후유증으로 근로가 어려운 경우)가 발생한 경우 척추질환에 준하여 적용하고, 근력은 도수근력검사(근력등급 0~근력등급 5)를 통해 평가한다.

* 근력평가방법

- 근력등급 0(不用) : 근육수축이 불가능
 - 근력등급 1(重症) : 약간의 근육수축은 가능하나 관절운동은 불가능
 - 근력등급 2(無力) : 중력은 이겨내지 못하지만 수평적 관절 움직임은 가능
 - 근력등급 3(中症) : 중력은 이겨내지만 약한 힘에도 저항하지 못함
 - 근력등급 4(輕症) : 중력과 약한 힘에 대해 이겨내어 움직일 수 있음
 - 근력등급 5(正常) : 강한 힘에 대해 충분히 이겨내어 움직일 수 있음
- 운동마비는 이학적 검사 외에 영상의학 검사 또는 근전도검사 소견 등 객관적 검사 소견을 확인할 수 있다.
 - 척추분절에 운동을 허용하도록 고안된 인공 디스크삽입술, 연성고정술, 와이어 고정술은 고정된 분절로 보지 않는다.
 - 척추 고정 및 척추 변형은 영구고착 질환으로 평가할 수 있다.
 - 척추의 운동범위는 장애부위에 따라 경추부와 체간부(흉·요추)로 나누어 측정하는데 각 추체간의 정상 운동범위는 다음과 같다.

〈척추 운동단위별 표준 운동가능영역〉

목뼈부	뒷통수뼈 -1목뼈	1-2 목뼈	2-3 목뼈	3-4 목뼈	4-5 목뼈	5-6 목뼈	6-7 목뼈	7목뼈 -1등뼈	계
운동범위	13	10	8	13	12	17	16	6	95
등·허리 뼈부	10-11 등뼈	11-12 등뼈	12등뼈 -1허리뼈	1-2 허리뼈	2-3 허리뼈	3-4 허리뼈	4-5 허리뼈	5허리뼈 -1엉치뼈	계
운동범위	9	12	12	12	14	15	17	20	111

● 평가표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척추 고정	- 목뼈 또는 등·허리뼈 운동범위가 정상의 1/5 미만 감소된 경우	- 목뼈 또는 등·허리뼈 운동범위가 정상의 1/5 이상 감소된 경우	- 목뼈 또는 등·허리뼈 운동범위가 정상의 2/5 이상 감소된 경우	- 목뼈 또는 등·허리뼈 운동범위가 정상의 3/5 이상 감소된 경우
척추 골절	- 척추골절로 주기적인 치료중이거나, 증상이 있어 주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	- 척추골절로 인해 지속적으로 치료중이나, 신체 활동의 제한이 예상되는 경우	- 척추골절 발생 병력이 있고, 그로인해 기능장애 등 합병증이 발생한 경우	- 척추의 급성골절이 발생하여 치료중으로, 1개월 이상 고정이 필요하고 일상생활이 현저하게 제한되는 경우
척추 질환	- 척추질환으로 주기적인 침구치료 또는 한방물리 요법 또는 한약 치료중 이거나, 증상이 있어 주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	- 척추신경근병증 소견이 있고 한 팔 또는 한 다리에 운동마비가 있는 경우(근력등급 4) - 척추질환으로 지속적인 치료중이나 증상이 존재 하는 경우	- 척추신경근병증 소견이 있고 한 팔 또는 한 다리에 운동마비가 있는 경우(근력등급 3) - 척추질환으로 적극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조절 되지 않는 통증 또는 기능제한이 있는 경우	- 척추신경근병증 소견이 있고 두 팔 또는 두 다리에 운동마비가 있는 경우(근력등급 3) - 척추질환으로 대소변 조절이 어려운 경우
척추 변형		-척추옆굽음증(척추측 만증)이 있으며, 만곡각도가 40도 이상인 경우 -척추뒤굽음증(척추후 만증)이 있으며, 만곡각도가 60도 이상인 경우		

2 신경기능계 질환

1. 의사용

● 진단서 발급 및 작성기준

가. 진단서 발급기준

- 진단은 지속적으로 진찰하고 진료했던 의사가 실시하고 아래의 평가기준에 따라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를 발급한다.
- 통원이나 입원치료 기록이 있는 경우에 진단서 발급이 가능하고, 최근 2개월간의 진료기록지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 통원이나 입원치료 기록은 없으나, 이전 진료기관 등에서 해당 질환으로 인한 진료가 있었거나 질병이 고착되어 상태의 호전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내용 및 현재 상태의 구체적 진찰소견을 기재한 소견서 첨부 시 진단서 발급이 가능하다.

나. 진단서 작성기준(기재사항 및 첨부사항)

- 복용중인 약물이 있을 경우 약물명, 용량 및 복용기간을 기재하고, 기제가 어려운 경우 최근 2개월간의 투약기록지를 첨부할 수 있다.
- 질병의 발생일, 치료내용, 치료기간, 진찰소견, 뇌전증 발작이 최근 1년 이내 발생한 이력이 있는 경우 발생 횟수 등을 기재한다.
- 평가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최근 1년 이내 뇌전증 발작을 확인할 수 있는 경과 기록, 입퇴원요약, 수술기록, 근전도 검사 등 검사결과)이 있을 경우 기재하거나, 관련 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다. 유의사항

- 신경기능계 질환유형 내에서는 1개의 질병만을 평가한다.

● 해당 질병

- 뇌졸중, 뇌손상, 뇌종양, 척수 병변 등 중추신경계와 관련된 질환 및 근육병, 말초 신경병증 등 신경기능계와 관련된 질병

● 평가방법

- 신경계의 질환으로 인하여 사지의 기능장애 소견으로 일상생활동작이나 기립 및 보행의 제한정도를 고려하여 평가한다.
- 상지의 일상생활동작 : 식사, 세면, 양치질, 용변처리, 물건 옮기기, 목욕하기, 옷 입기 등으로 평가한다
- 상지의 미세한 동작 : 글씨 쓰기, 젓가락 사용, 단추 끼우기, 컵 쥐기, 지퍼열고 닫기, 지폐세기 등으로 평가한다
- 기립 및 보행기능 : 일어서기, 기립자세 유지하기, 눈감고 서기, 계단 오르기, 계단 내려가기, 고르지 못한 길 걷기, 언덕길 걷기 등으로 평가한다.
 - 기립, 보행의 정도의 제한 : 보행 시 파행이 관찰되며 계단오르내리기에 불안정성이 보이는 경우
 - 기립, 보행의 중등도의 제한 : 평지는 가능하나 고르지 못한 길을 걷기에 제한, 계단 오르내리기 시 보조기를 사용해야하는 경우
 - 기립, 보행의 고도의 제한 : 평지 보행 시에도 보조기의 사용이 필요하며 계단이나 언덕길 등은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 뇌전증 발작 정도, 안면마비 정도를 고려하여 평가한다.
 - ※ 안면마비 판정에 근거가 되는 안면근전도검사(facial nerve conductor), 눈깜박반사(blink reflex) 등을 확인할 수 있다.
- 뇌병변 등 기질적 병변에 의한 실어증 또는 지적능력 저하 등이 동반된 경우 일상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중증도 등을 고려하여 1단계 상향할 수 있다.
 - ※ 지적능력 저하에 근거가 되는 MMSE, CDR 또는 GDS 등 간이 인지기능 검사 등을 확인할 수 있다.
- 신경손상 등의 확인을 위해서는 판정에 근거가 되는 객관적 검사 등을 확인할 수 있다.

● 평가표

단계	상태 기준
1단계	가. 상지 : 경도의 마비나 근긴장도 상승이 있으나 일상동작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 나. 하지 : 경도의 마비나 근긴장도 상승이 있으나 보행에 어려움이 없는 경우
	다. 약물조절이 되는 뇌전증 발작이 있는 경우
	라. 한쪽 경도의 안면마비인 경우
	마. 후각 상실이 있는 경우
2단계	가. 상지 : 손가락의 미세한 동작에 제한을 보여, 손을 사용하는 일을 할 때 비교적 오랜 시간이 필요한 경우 나. 하지 : 보행시 경도의 파행을 보이는 경우
	다. 약물조절이 되나 뇌전증 발작 위험에 처할 수 있는 경우 라. 한쪽 중등도의 안면마비인 경우
3단계	가. 상지 : 손가락의 미세한 동작에 뚜렷한 제한을 보여, 손을 사용하는 일을 할 때 어려움이 있는 경우 나. 하지 : 보행시 파행이 관찰되며, 계단을 오르내리기가 조금 불안한 경우
	다. 약물조절 등 치료에도 불구하고 예측되지 않는 뇌전증 발작이 간헐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월 1회 이상 뇌전증 발작이 연 3회 이상 발생하는 상태로 인정되는 경우) 라. 한쪽 완전 안면마비인 경우
4단계	가. 상지 : 손가락의 미세한 동작에 뚜렷한 제한을 보여, 손을 사용하는 일을 할 때 매우 어려운 경우 나. 하지 : 평지보행은 가능하나 고르지 못한 길을 걷기 어려운 경우, 계단을 오르내릴 때 안정성이 떨어져 넘어지기 쉬운 경우
	다. 약물조절 등 치료에도 불구하고 뇌전증 발작이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월 1회 이상 뇌전증 발작이 연 6회 이상 발생하는 상태로 인정되는 경우) 라. 양쪽 완전 안면마비인 경우

2. 한의사용

● 진단서 발급 및 작성기준

가. 진단서 발급기준

- 진단은 지속적으로 진찰하고 진료했던 한의사가 실시하고 아래의 평가 기준에 따라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를 발급한다.
- 통원이나 입원치료 기록이 있는 경우에 진단서 발급이 가능하고, 최근 2개월간의 진료기록지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 통원이나 입원치료 기록은 없으나, 이전 진료기관 등에서 해당 질환으로 인한 진료가 있었거나 질병이 고착되어 상태의 호전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내용 및 현재 상태의 구체적 진찰소견을 기재한 소견서 첨부 시 진단서 발급이 가능하다.

나. 진단서 작성기준(기재사항 및 첨부사항)

- 질병의 발생일, 치료내용, 치료기간, 진찰소견, 뇌전증 발작이 최근 1년 이내 발생한 이력이 있는 경우 발생 횟수 등을 기재한다.
- 평가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최근 1년 이내 뇌전증 발작을 확인할 수 있는 경과 기록, 입퇴원요약, 검사결과 등)이 있을 경우 기재하거나 관련 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다. 유의사항

- 신경기능계 질환유형 내에서는 1개의 질병만을 평가한다.

● 해당 질병

- 뇌졸중, 뇌손상, 뇌종양, 척수 병변 등 중추신경계와 관련된 질환 및 근육병, 말초 신경병증 등 신경기능계와 관련된 질병

● 평가방법

- 신경계의 질환으로 인하여 사지의 기능장애 소견으로 일상생활동작이나 기립 및 보행의 제한정도를 고려하여 평가한다.
- 상지의 일상생활동작 : 식사, 세면, 양치질, 용변처리, 물건 옮기기, 목욕하기, 옷 입기 등으로 평가한다.
- 상지의 미세한 동작 : 글씨쓰기, 젓가락 사용, 단추 끼우기, 컵 쥐기, 지퍼열고 닫기, 지폐세기 등으로 평가한다.
- 기립 및 보행기능 : 일어서기, 기립자세 유지하기, 눈감고 서기, 계단 오르기, 계단 내려가기, 고르지 못한 길 걷기, 언덕길 걷기 등으로 평가한다.
 - 기립, 보행의 경도의 제한 ; 보행 시 파행이 관찰되며 계단오르내리기에 불안정성이 보이는 경우
 - 기립, 보행의 중등도의 제한 ; 평지는 가능하나 고르지 못한 길을 걷기에 제한, 계단오르내리기시 보조기를 사용해야하는 경우
 - 기립, 보행의 고도의 제한 ; 평지 보행 시에도 보조기의 사용이 필요하며 계단이나 언덕길 등은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 뇌전증 발작 정도, 안면마비 정도를 고려하여 평가한다.
 - ※ 안면마비 판정에 근거가 되는 안면근전도검사(facial nerve conductor), 눈깜박반사(blink reflex) 등을 확인할 수 있다.
- 뇌병변 등 기질적 병변에 의한 실어증 또는 지적능력 저하 등이 동반된 경우 일상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중증도 등을 고려하여 1단계 상향할 수 있다.
 - ※ 지적능력 저하에 근거가 되는 MMSE, CDR 또는 GDS 등 간이 인지기능 검사 등을 확인할 수 있다.
- 신경손상 등의 확인을 위해서는 판정에 근거가 되는 객관적 검사 등을 확인할 수 있다.

● 평가표

단계	상태 기준
1단계	가. 상지 : 경도의 마비나 근긴장도 상승이 있으나 일상동작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 나. 하지 : 경도의 마비나 근긴장도 상승이 있으나 보행에 어려움이 없는 경우
	다. 의과치료 병행 혹은 한의과 단독치료를 조절되는 뇌전증 발작이 있는 경우
	라. 한쪽 경도의 안면마비인 경우
	마. 후각 상실이 있는 경우
2단계	가. 상지 : 손가락의 미세한 동작에 제한을 보여, 손을 사용하는 일을 할 때 비교적 오랜 시간이 필요한 경우 나. 하지 : 보행 시 경도의 파행을 보이는 경우
	다. 의과치료 병행 혹은 한의과 단독치료를 조절이 되나 뇌전증 발작 위험에 처할 수 있는 경우
	라. 한쪽 중증도의 안면마비인 경우
3단계	가. 상지 : 손가락의 미세한 동작에 뚜렷한 제한을 보여, 손을 사용하는 일을 할 때 어려움이 있는 경우 나. 하지 : 보행시 파행이 관찰되며, 계단을 오르내리기가 조금 불안한 경우
	다. 의과치료 병행 혹은 한의과 단독치료 중이나 예측되지 않는 뇌전증 발작이 간헐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월 1회 이상 뇌전증 발작이 연 3회 이상 발생하는 상태로 인정되는 경우)
	라. 한쪽 완전 안면마비인 경우
4단계	가. 상지 : 손가락의 미세한 동작에 뚜렷한 제한을 보여, 손을 사용하는 일을 할 때 매우 어려운 경우 나. 하지 : 평지보행은 가능하나 고르지 못한 길을 걷기 어려운 경우, 계단을 오르내릴 때 안정성이 떨어져 넘어지기 쉬운 경우
	다. 의과치료 병행 혹은 한의과 단독치료 중이나 뇌전증 발작이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월 1회 이상 뇌전증 발작이 연 6회 이상 발생하는 상태로 인정되는 경우)
	라. 양쪽 완전 안면마비인 경우

3 정신신경계 질환

● 진단서 발급 및 작성기준

가. 진단서 발급기준(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 진단은 지속적으로 진찰하고 진료했던 의사(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가 실시하고 아래의 평가 기준에 따라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를 발급한다.

※ 기질성 정신질환의 경우에는 신경과, 신경외과, 재활의학과 전문의 및 담당 의사(기질성 정신질환으로 입원중인 경우)도 발급 가능하다. 단,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없는 시·군·구의 경우에는 일반의사도 발급 가능하다.

- 3개월 이상 충분한 치료를 시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지속되는 경우에만 진단서 발급이 가능하다. 단, 자해 및 타해 등의 위험으로 시급한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 또는 선천적 지적능력 저하 등 질병이 고착되어 상태의 호전 및 악화의 변화 가능성이 없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최근 2개월간의 진료기록지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 통원이나 입원치료 기록은 없으나, 이전 진료기관 등에서 해당 질환으로 인한 진료(3개월 이상)가 있었거나 질병이 고착되어 상태의 호전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내용 및 현재 상태의 구체적 진찰소견을 기재한 소견서 첨부 시 진단서 발급이 가능하다.

나. 진단서 작성기준(기재사항 및 첨부사항)

- 복용중인 약물이 있을 경우 약물명, 용량 및 복용기간을 기재하고, 기재가 어려울 경우 최근 2개월간의 투약기록지를 첨부할 수 있다.
- 질병의 발생일, 치료내용, 치료기간, 평가기준에 따른 진찰 소견, 검사를 시행한 경우 검사 결과에 대한 임상소견 등을 기재한다.

다. 유의사항

- 정신신경계 질환유형 내에서는 1개의 질병만을 평가한다.

● 해당 질병

- 근로수행능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신질환

● 배제 질환

- 성인의 인격 및 행동장애(F60~F69)

● 평가방법

- 자해 및 타해 등의 위험으로 인하여 시급한 입원치료 등이 필요한 경우 또는 선천성 지적능력 저하 등 질병이 고착되어 상태의 호전 및 악화의 변화 가능성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평가전에 정신과적으로 3개월 이상 충분한 치료를 시행하였음에도 증상이 지속되는 경우에 한하여 평가를 시행한다.
- 약물치료 정도, 외래 및 입원치료 경과, 진단명의 특성, 질환의 중증도에 따른 일상생활의 제한정도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다.
- 알코올을 포함한 중독장애의 경우 증상의 심각성에 관계없이 1단계로만 평가한다. 다만 중독장애의 후유증으로 섬망, 환시, 환청, 환촉 등 정신병적 증상이나 기억력 장애 등을 동반하는 경우에는 중증도를 고려하여 2단계 이상으로 평가할 수 있다.

● 평가표

단계	상태 기준
1단계	- 정신질환으로 인한 사회적, 직업적 어려움은 없으나 증상의 재발을 막기 위해 유지 치료와 안정가료가 필요한 경우
2단계	- 정신질환으로 인해 사회적, 직업적 어려움이 간헐적으로 나타나고 유지 치료와 안정가료가 필요한 경우
3단계	- 조현병 및 망상성장애(F20~F29), 뇌손상 후유장애(F00~03, F06~09)로 인해 사회적, 직업적 어려움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유지 치료와 안정가료가 필요한 경우 - 양극성장애(F31), 우울장애 중 중증삽화(F32.2~32.3, F33.2~33.3), 강박장애(F42),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F43.1)로 인해 최근 6개월 이내에 사회적, 직업적, 일상생활의 어려움이 지속적으로 나타나 입원이나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정도의 심한 증상이 진료기록 상 객관적으로 확인되며, 평가 당시 일상생활을 저해하는 중등도 이상의 증상이 유지되는 경우에 한함
4단계	- 조현병 및 망상성장애(F20~F29), 뇌손상 후유장애(F00~03, F06~09)로 인해 사회적, 직업적 어려움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일상생활에 상당한 어려움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며 유지치료와 안정가료가 필요한 경우 - 양극성장애(F31), 우울장애 중 중증삽화(F32.2~32.3, F33.2~33.3), 강박장애(F42),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F43.1)로 인해 최근 6개월 이내에 자해(자살) 및 타해 등의 심한 증상이 명백히 관찰되거나, 평가 당시 일상생활*을 저해하는 심각한 증상이 유지되어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 일상생활의 수행: 청결 유지, 가족관계 유지, 약물 복용, 간단한 물건사기, 대중교통 이용하기 등 생명 유지를 위한 기본적인 능력

4 감각기능계 질환(청각, 평형, 시각)

【청각】

● 진단서 발급 및 작성기준

가. 진단서 발급기준

- 진단은 지속적으로 진찰하고 진료했던 의사가 실시하고 아래의 평가기준에 따라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를 발급한다.
- 통원이나 입원치료 기록이 있는 경우에 진단서 발급이 가능하고, 최근 2개월간의 진료기록지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 통원이나 입원치료 기록은 없으나, 이전 진료기관 등에서 해당 질환으로 인한 진료가 있었거나 질병이 고착되어 상태의 호전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내용 및 현재 상태의 구체적 진찰소견을 기재한 소견서 첨부 시 진단서 발급이 가능하다.

나. 진단서 작성기준(기재사항 및 첨부사항)

- 질병의 발생일, 치료내용, 치료기간, 평가기준에 따른 진찰 소견을 기재한다.
- 최근 2개월 내의 신뢰도 높은 순음청력검사 등 객관적 검사결과를 기재하거나 검사 결과를 첨부할 수 있다.

다. 검사방법

- 평균순음역치는 청력측정기(오디오미터)로 측정하여 데시벨(dB)로 표시하되, 주파수 별로 500Hz, 1000Hz, 2000Hz, 4000Hz에서 각각 청력검사를 실시한다.

라. 유의사항

- 동일한 평가대상 질환유형 내에서는 1개의 질환만을 평가하나, 감각기능계 질환 유형의 〈청각〉, 〈평형〉, 〈시각〉은 별도의 평가대상 질환으로 보아 평가할 수 있다.
- ※ 〈청각〉질환과 〈시각〉질환이 동반된 경우 각각의 질병에 대하여 평가가 가능하나, 청각 질환내에서는 1개의 질병만 평가 가능

● 해당 질병

- 감각신경성 난청, 전음성 난청, 혼합성 난청, 중추성 난청 등

● 평가방법

- 순음청력검사, 청성뇌간 유발반응검사, 어음청력검사를 고려하여 평가한다.
- 평가는 순음청력검사의 기도순음역치를 기준으로 하고, 평균치는 6분법에 의하여 계산한다($a+2b+2c+d/6$). (500Hz (a), 1000Hz (b), 2000Hz (c), 4000Hz (d)) 6분법 계산에서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만약 주어진 주파수에서 청력역치가 100 데시벨(dB) 이상이거나 청력계의 범위를 벗어나면 100데시벨(dB)로 간주하고, 청력역치가 0데시벨(dB) 이하이면 0데시벨(dB)로 간주한다.
- 기도순음역치의 신뢰도가 확보되지 않은 경우 재검사 결과를 확인하거나 청성뇌간 반응검사(또는 청성지속반응검사) 등을 확인할 수 있다.
-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진료기록상 심한 이명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증증도를 고려하여 1단계 상향할 수 있다.

● 평가표

단계	상태 기준
1단계	- 한 귀의 청력 손실이 60dB 이상인 경우
2단계	- 한 귀의 청력 손실이 80dB 이상, 다른 귀의 청력 손실이 40dB 이상인 경우
3단계	-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60dB 이상인 경우
4단계	-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70dB 이상인 경우

【평형】

● 진단서 발급 및 작성기준

가. 진단서 발급기준

- 진단은 지속적으로 진찰하고 진료했던 의사가 실시하고 아래의 평가기준에 따라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를 발급한다.
- 통원이나 입원치료 기록이 있는 경우에 진단서 발급이 가능하고, 최근 2개월간의 진료기록지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 통원이나 입원치료 기록은 없으나, 이전 진료기관 등에서 해당 질환으로 인한 진료가 있었거나 질병이 고착되어 상태의 호전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내용 및 현재 상태의 구체적 진찰소견을 기재한 소견서 첨부 시 진단서 발급이 가능하다.

나. 진단서 작성기준(기재사항 및 첨부사항)

- 복용중인 약물이 있을 경우 약물명, 용량 및 복용기간을 기재하고, 기재가 어려울 경우 최근 2개월간의 투약기록지를 첨부할 수 있다.
- 질병의 발생일, 치료내용, 치료기간, 평가기준에 따른 진찰 소견을 상세히 기재한다.
- 전정기능 이상 등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검사결과가 있는 경우 검사 결과를 기재하거나 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다. 유의사항

- 동일한 평가대상 질환유형 내에서는 1개의 질환만을 평가하나, 감각기능계 질환 유형의 <청각>, <평형>, <시각>은 별도의 평가대상 질환으로 보아 평가할 수 있다.
- ※ <평형> 질환과 <시각> 질환이 동반된 경우 각각의 질병에 대하여 평가가 가능하나, 평형 질환 내에서는 1개의 질병만 평가 가능

● 해당 질병

- 중추성 현훈, 말초성 현훈(양성 발작성 체위변환성 현기증, 메니에르병, 전정신경염 등)

● 평가방법

- 전정기관 이상으로 인한 평형·전정 감각장애인 경우 객관적 소견이 확인되어야 한다.
- 양측 전정기능의 이상은 온도안진검사, 사지구간의 평형검사, 회전외자검사, 직립 반사검사로 확인하며, 그 외 동요시(oscillopsia), 자발 및 주시 안진, 체위(postulography) 검사 등으로 객관성을 높일 수 있다.
- <평형>질환의 경우 다른 기관에 의해 평형 질환이 발생하거나 다른 기관에 뚜렷한 영향을 미쳐 다른 질환유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질환유형으로 평가한다.

● 평가표

단계	상태 기준
1단계	- 이학적 소견 및 검사 자료상 평형·전정계 질환으로 진단되어 증상이 있는 경우
2단계	- 이학적 소견 및 검사 자료상 평형·전정계 질환으로 진단되어 평형재활 등 지속적인 치료 중이나 증상이 존재하는 경우 - 이학적 소견 및 검사 자료상 평형·전정계 질환으로 진단되어 일측 평형·전정기능 감소나 소실이 있으며, 두 눈을 뜨고 10미터 거리를 일직선으로 걸을 때 중앙에서 벗어나고 (임상적으로 불가피한 경우 6미터를 걷게 하여 진단할 수 있음) 복잡한 활동 또는 엄격한 주의가 요구되는 특정업무나 활동만 불가능한 경우
3단계	- 이학적 소견 및 검사 자료상 평형·전정계 질환으로 진단되어 양측 또는 일측의 평형·전정기능 감소가 있으며 두 눈을 뜨고 10미터 거리를 직선으로 걸을 때 중앙에서 60 센티미터 이상 벗어나고(임상적으로 불가피한 경우 6미터를 걷게 하여 진단할 수 있음) 일상에서 복합적인 신체운동이 필요한 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4단계	- 이학적 소견 및 검사 자료상 평형·전정계 질환으로 진단되어 양측 또는 일측의 평형·전정기능 감소나 소실이 있으며 두 눈을 뜨고 10미터 거리를 직선으로 걷다가 중간에 균형을 잡으려 멈추어야 하고(임상적으로 불가피한 경우 6미터를 걷게 하여 진단할 수 있음) 일상에서 자신을 돌보는 일과 간단한 보행이나 활동만 가능한 경우

【시각】

● 진단서 발급 및 작성기준

가. 진단서 발급기준

- 진단은 지속적으로 진찰하고 진료했던 의사가 실시하고 아래의 평가기준에 따라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를 발급한다.
- 통원이나 입원치료 기록이 있는 경우에 진단서 발급이 가능하고, 최근 2개월간의 진료기록지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 통원이나 입원치료 기록은 없으나, 이전 진료기관 등에서 해당 질환으로 인한 진료가 있었거나 질병이 고착되어 상태의 호전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내용 및 현재 상태의 구체적 진찰소견을 기재한 소견서 첨부 시 진단서 발급이 가능하다.

나. 진단서 작성기준(기재사항 및 첨부사항)

- 현재 시력 정도와 병변 정도의 확인을 위해 전안부 관찰소견(각막 등의 질환) 또는 안저 관찰 소견(망막 및 시신경 등의 질환) 등 안구상태의 진찰 소견을 상세히 기재하거나, 질병에 해당되는 검사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 두 눈 각각에 대하여 안경, 콘택트렌즈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시력 교정법을 이용한 최대교정시력(원거리시력) 측정 결과와 굴절이상 정도를 기재한다.
- 시야가 감소되는 질환으로 인해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시야 감소가 있을 경우 시야 검사 결과지를 첨부할 수 있다.

다. 검사방법

- 시력은 공인된 시력표에 의해 측정된 것을 사용할 수 있다. 시력표에 규정된 거리에서 같은 줄의 여러 시표 중 옆으로 반 이상의 시표를 정확하게 읽은 경우에만 그 줄의 시력으로 인정한다. 0.1 보다 나쁜 시력을 측정할 경우에는 ETDRS 시력표나 저시각용 시력표(low vision chart)를 사용할 것을 권장한다. 이와 같은 시력표가 없는 경우에는 0.1과 0.2의 시표를 가까이 다가가서 보게 하여 측정하여 각각을 비교한다. 예를 들어 4m용 시력표에서 0.1시표의 3개중 2개를 읽으면 0.1이 되고, 0.2시표의 5개 중 3개를 2m에서 읽었다면 시력은 0.1($0.2 \times 2/4$)이 되며, 이 0.2 시표를 1m에서 읽었다면 시력은 0.05($0.2 \times 1/4$)가 된다.
- 시야검사는 동적시야검사가 원칙이나 경우에 따라 정적시야검사를 할 수 있다. 검사 기계의 종류로는 골드만시야계 또는 험프리시야계 등 공인된 시야검사계로 측정한 결과를 기준으로 한다. 골드만시야검사계와 험프리자동시야계의 동적시야검사를 사용할 때는 시표는 III-4e로 한다. 옥토퍼스시야계로 할 때는 상기 두 검사의 자극강도인 10 dB에 상응하는 자극강도인 7 dB로 한다. 피검자의 최대교정시력이 0.2 미만이거나 말기녹내장에서는 시표를 'V(5)'로 한다. 정적시야검사 결과지의 신뢰도 지표가 낮은 경우에는 골드만시야검사를 시행하며 이때 '비고란'에 피검자의 중심부 주시정도 및 협조도를 기록해야 한다. 고도근시(-8디옵터 이상)와 무수정체안은 콘택트렌즈를 착용한 상태에서 검사하며 무수정체안은 IV-4e 시표를 사용한다.

라. 유의사항

- 동일한 평가대상 질환유형 내에서는 1개의 질환만을 평가하나, 감각기능계 질환 유형의 〈청각〉, 〈평형〉, 〈시각〉은 별도의 평가대상 질환으로 보아 평가할 수 있다.
- ※ 〈시각〉질환과 〈청각〉질환이 동반된 경우 각각의 질병에 대하여 평가가 가능하나, 시각 질환내에서는 1개의 질병만 평가 가능

● 해당 질병

- 시력 저하와 시야 결손을 일으키는 질환

● 평가방법

- 시각(시력, 시야)의 이상에 대한 평가를 위하여 병력, 안구와 시각계의 현 상태, 관련 해부학적 이상소견의 기록 등을 확인한다.
- 두 눈 각각의 굴절교정검사에 따른 최대교정시력(원거리시력)을 기준으로 한다.
- 치료경과 및 향후 호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다.
- 눈의 상태에 비해 현저한 시력 저하 또는 시야 감소가 있을 경우에는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검사자료 등 기타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 무안구증, 안구로 및 각막문신은 영구고착 질환으로 평가할 수 있다.

● 평가표

단계	상태 기준
1단계	- 시력 또는 시야에 영향을 미칠만한 질환(안과질환 또는 뇌질환 등)으로 인해 주기적으로 치료중인 경우 또는 주기적인 치료나 경과 관찰이 필요한 경우
2단계	- 나쁜 눈의 시력이 0.02 이하인 경우
3단계	- 좋은 눈의 시력이 0.2 이하인 경우 -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정상시야의 50% 이상 감소한 경우
4단계	- 좋은 눈의 시력이 0.1 이하인 경우 -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경우

5 심혈관계 질환

● 진단서 발급 및 작성기준

가. 진단서 발급기준

- 진단은 지속적으로 진찰하고 진료했던 의사가 실시하고 아래의 평가기준에 따라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를 발급한다.
- 통원이나 입원치료 기록이 있는 경우에 진단서 발급이 가능하고, 최근 2개월간의 진료기록지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 만성질환을 제외하고는, 통원이나 입원치료 기록은 없어도 이전 진료기관 등에서 해당 질환으로 인한 진료가 있었거나 질병이 고착되어 상태의 호전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내용 및 현재 상태의 구체적 진찰소견을 기재한 소견서 첨부시 진단서 발급이 가능하다. (만성질환은 최근 2개월 이내에 치료받은 기록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

나. 진단서 작성기준(기재사항 및 첨부사항)

- 복용중인 약물이 있을 경우 약물명, 용량 및 복용기간을 기재하고, 기제가 어려울 경우 최근 2개월간의 투약기록지를 첨부할 수 있다.
- 질병의 발생일, 치료내용, 치료기간, 평가기준에 따른 진찰 소견을 기재하고, 심초음파 검사·운동부하 검사를 실시한 경우 검사결과를 기재하거나 검사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다. 유의사항

- 심혈관계 질환유형 내에서는 1개의 질병만을 평가한다.

● 해당 질병

- 심부전, 심근허혈, 심혈관 계통의 질병, 기타 혈관질환 등

● 평가방법

- 질병의 급·만성 여부, 약물치료 여부, 약물 부작용에 대한 주의, 질병의 급성 악화 여부, 6분간 운동부하 검사 상 걷는 정도, 심초음파에서 심장기능 정도, 전신 증상여부, 질병 중증도에 따른 신체활동의 제한정도를 고려하여 평가한다.
- 심장이식, 영구적 인공심박동기, 삽입형 제세동기 및 심장판막치환술은 영구고착 질환으로 평가할 수 있다.

● 평가표

단계	상태 기준
1단계	-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증상이 있어, 주기적인 약물치료나 평가가 요구되는 경우 - 심혈관 질환으로 진단받고 주기적인 약물복용 중인 경우 - 고혈압이 있으나 약물로 조절이 가능한 경우 - 혈관질환(정맥, 동맥, 림프부종)이 있으나 주기적인 약물복용으로 증상 조절이 가능한 경우
2단계	- 고혈압 외의 심혈관 질환으로 지속적인 약물복용 중으로, 일상 사회생활이 가능하고, 부작용이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약으로 조절이 가능한 경우 - 고혈압이 있고 그로 인해 일상생활에 제한이 있는 경우 - 혈관질환(정맥, 동맥, 림프부종)으로 인해 지속적인 약물복용중이나(작업 또는 보행시)증상이 존재하는 경우
3단계	- 심혈관 질환으로 진단받고 약물복용 등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신체활동이 제한되거나 합병증이 발생한 경우(안정시에는 무증상인데, 보통 이상의 신체활동에서는 피로, 동계, 호흡 곤란, 또는 협심통이 있어, 운동부하검사와 심초음파로 심장기능 검사가 필요) - 진행성 심혈관질환으로 판단되어, 주기적인 정밀 검사(운동부하검사 및 심초음파 검사, 혈관 검사나 방사선 검사)가 필요한 경우 - 심장이식을 받은 상태 - 혈관질환(정맥, 동맥, 림프부종)으로 인해 약물복용 및 수술 등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작업 또는 보행시)신체활동이 제한되는 증상이 있거나 수술이 필요한 경우
4단계	- 심혈관 질환으로 약물복용 및 수술 등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신체활동에 상당한 제한이 있는 경우(안정시에는 무증상인데 가벼운 일상생활의 신체활동에서 피로, 동계, 호흡 곤란, 또는 협심통이 있거나 심초음파에서 심장기능이 40% 이하인 경우) - 심장이식을 받은 상태이나 거부반응이 있는 경우

6 호흡기계 질환

● 진단서 발급 및 작성기준

가. 진단서 발급기준

- 진단은 지속적으로 진찰하고 진료했던 의사가 실시하고 아래의 평가기준에 따라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를 발급한다.
- 통원이나 입원치료 기록이 있는 경우에 진단서 발급이 가능하고, 최근 2개월간의 진료기록지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 통원이나 입원치료 기록은 없으나, 이전 진료기관 등에서 해당 질환으로 인한 진료가 있었거나 질병이 고착되어 상태의 호전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내용 및 현재 상태의 구체적 진찰소견을 기재한 소견서 첨부시 진단서 발급이 가능하다.

나. 진단서 작성기준(기재사항 및 첨부사항)

- 복용중인 약물이 있을 경우 약물명, 용량 및 복용기간을 기재하고, 기제가 어려울 경우 최근 2개월간의 투약기록지를 첨부할 수 있다.
- 질병의 발생일, 치료내용, 치료기간, 평가기준에 따른 진찰 소견을 기재하고, 최근 2개월 내에 폐기능 검사 등을 시행한 경우 검사결과를 기재하거나 검사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다. 유의사항

- 호흡기계 질환유형 내에서는 1개의 질병만을 평가한다.

● 해당 질병

- 천식, 만성 폐쇄성 폐질환, 제한성 만성 폐질환 부류 등

● 평가방법

- 질병의 급·만성도, 약물치료 여부, 약물 부작용에 대한 주의, 질병의 급성 악화 여부, 폐환기 기능, 호흡곤란정도, 동맥혈 산소 분압, 질병의 중증도에 따른 신체활동의 제한정도를 고려하여 평가한다.
- 폐이식은 영구고착 질환으로 평가할 수 있다.

● 평가표

단계	상태 기준
1단계	- 호흡기 질환으로 인한 증상이 있어 주기적인 약물치료 및 평가가 요구되는 경우 - 호흡기 질환으로 진단받아 주기적인 약물복용중인 경우
2단계	- 호흡기질환으로 지속적인 약물복용 중이나, 운동시 호흡곤란 증상이 있는 경우
3단계	- 만성 호흡기질환으로 약물복용 등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평상시의 1초간 강제호기량 또는 폐확산능이 50% 이상 60% 미만인 상태로 인정되는 경우 - 만성 호흡기질환으로 약물복용 등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경사진 길을 오르거나 빨리 걸으면 호흡곤란을 느끼는 등 신체활동에 제한이 있는 경우 - 폐이식을 받은 상태 - 늑막루가 있는 경우
4단계	- 만성 호흡기질환으로 약물복용 등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평상시의 1초간 강제호기량 또는 폐확산능이 50% 미만인 상태로 인정되는 경우 - 만성 호흡기질환으로 약물복용 등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신체활동에 상당한 제한이 있는 경우 - 폐이식을 받은 상태이나 거부반응이 있는 경우

7

소화기계 질환

● 진단서 발급 및 작성기준

가. 진단서 발급기준

- 진단은 지속적으로 진찰하고 진료했던 의사가 실시하고 아래의 평가기준에 따라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를 발급한다.
- 통원이나 입원치료 기록이 있는 경우에 진단서 발급이 가능하고, 최근 2개월간의 진료기록지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 통원이나 입원치료 기록은 없으나, 이전 진료기관 등에서 해당 질환으로 인한 진료가 있었거나 질병이 고착되어 상태의 호전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내용 및 현재 상태의 구체적 진찰소견을 기재한 소견서 첨부 시 진단서 발급이 가능하다.

나. 진단서 작성기준(기재사항 및 첨부사항)

- 복용중인 약물이 있을 경우 약물명, 용량 및 복용기간을 기재하고, 기재가 어려울 경우 최근 2개월간의 투약기록지를 첨부할 수 있다.
- 질병의 발생일, 치료내용, 치료기간, 평가기준에 따른 진찰 소견을 기재하고, 특히 최근 1년 이내 간질환으로 인한 간성뇌증, 자발성세균성 복막염, 식도 또는 위 정맥류 출혈, 복수 등의 합병증이 발생한 경우 이를 기재한다.
-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간기능검사, 복부 초음파, 복부 전산화 단층촬영 결과 등)이 있을 경우 소견을 상세히 기재하거나 관련 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다. 유의사항

- 동일한 평가대상 질환유형 내에서는 1개의 질병만을 평가하나, 소화기계 질환유형의 <간질환>, <위장질환>은 별도의 평가대상 질환으로 보아 평가할 수 있다.

※ <간질환>과 <위장질환>이 동반된 경우 각각의 질병에 대하여 평가가 가능하나, 간질환(또는 위장질환) 내에서는 1개의 질병만 평가 가능

【간질환(담·췌장질환 포함)】

● 해당 질병

- 만성간질환(담·췌장질환 포함)

● 평가방법

- 약물치료 정도, 질환의 악화 여부, 합병증 발생 정도, 수술 및 입원치료 경과, 질환의 중증도에 따른 신체활동의 제한, 간기능 검사 및 영상검사소견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다.

● 평가표

단계	상태 기준
1단계	- 만성간질환(만성간염, 간경변증 등)으로 인한 증상이 있어, 주기적인 약물치료나 관찰을 요하는 경우 - 만성간질환으로 간장약 투여 등 주기적인 치료중인 경우
2단계	- 만성간질환으로 항바이러스제 복용중인 경우 - 만성간질환으로 지속적으로 치료중이나 증상이 존재하는 경우
3단계	- 만성간질환의 객관적 증거가 있으면서, 최근 1년 이내 복수가 발생한 경우 - 만성간질환으로 적극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신체활동의 제한이 있는 경우 - 간이식을 받은 상태
4단계	- 만성간질환의 객관적 증거가 있으면서, 아래 증상이 최근 1년 이내 발생한 경우 · 간성뇌증 · 자발성세균성 복막염 · 식도 또는 위 정맥류 출혈 · 중등도 이상의 복수 - 만성간질환으로 적극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신체활동의 상당한 제한을 보이는 경우 - 간이식을 받은 상태이나 거부반응이 있는 경우

【위장질환】

● 해당 질병

- 상부, 하부 만성위장관 질환

● 평가방법

- 약물치료 정도, 질환의 악화 여부, 합병증 발생 정도, 수술 및 입원치료경과, 질환의 증증도에 따른 신체활동의 제한정도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다.
- 위루 및 장루는 영구고착 질환으로 평가할 수 있다.

● 평가표

단계	상태 기준
1단계	- 만성위장관 질환으로 진단받고, 주기적인 치료중인 경우
2단계	- 만성위장관 질환으로 지속적인 치료중이나 증상이 존재하는 경우
3단계	- 만성위장관 질환으로 약물복용이나 수술 등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신체활동의 제한이 있거나 합병증이 동반된 경우
4단계	- 만성 위장관 질환이나 손상으로 약물복용이나 수술 등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신체 활동의 상당한 제한이 있거나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 - 위루가 있는 경우 - 장루가 있는 경우

8

비뇨생식계 질환

● 진단서 발급 및 작성기준

가. 진단서 발급기준

- 진단은 지속적으로 진찰하고 진료했던 의사가 실시하고 아래의 평가기준에 따라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를 발급한다.
- 통원이나 입원치료 기록이 있는 경우에 진단서 발급이 가능하고, 최근 2개월간의 진료기록지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 통원이나 입원치료 기록은 없으나, 이전 진료기관 등에서 해당 질환으로 인한 진료가 있었거나 질병이 고착되어 상태의 호전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내용 및 현재 상태의 구체적 진찰소견을 기재한 소견서 첨부시 진단서 발급이 가능하다.

나. 진단서 작성기준(기재사항 및 첨부사항)

- 복용중인 약물이 있을 경우 약물명, 용량 및 복용기간을 기재하고, 기재가 어려운 경우 최근 2개월간의 투약기록지를 첨부할 수 있다.
- 질병의 발생일, 치료내용, 치료기간, 평가기준에 따른 진찰 소견을 기재하고,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혈액검사 등의 검사 결과 등)이 있을 경우 소견을 상세히 기재하거나 관련 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다. 유의사항

- 비뇨생식계 질환유형 내에서는 1개의 질병만을 평가한다.

● 해당 질병

- 신장질환, 요로질환, 방광질환, 전립선질환, 생식기질환 등

● 평가방법

- 질병의 급·만성도, 약물치료 정도, 약물 부작용에 대한 주의, 질병의 급성 악화 여부, 투석여부, 검사 소견, 질환의 중증도에 따른 신체활동의 제한정도를 고려하여 평가한다.
- 신장이식, 요루 및 인공방광은 영구고착 질환으로 평가할 수 있다.

● 평가표

단계	상태 기준
1단계	- 비뇨생식 질환으로 인한 증상이 있어 주기적인 약물치료나 평가가 요구되는 경우 - 비뇨생식 질환으로 진단받고, 주기적인 치료중인 경우 - 소변검사상 이상소견으로 추적이 필요한 경우
2단계	- 신장기능이 만성적으로 경도로 저하된 경우(객관적 검사결과 등으로 사구체 여과율 45~60 ml/분 미만으로 인정되는 상태) - 비뇨생식 질환으로 지속적인 치료중이나 증상이 존재하는 경우 - 진행성 신장질환으로 주기적인 추적이 필요한 경우
3단계	- 신장기능이 만성적으로 중등도로 저하된 경우(객관적 검사 결과 등으로 사구체 여과율 30~45ml/분 미만으로 인정되는 상태) - 비뇨생식 질환으로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신체활동의 제한이 있는 경우 - 배뇨를 위해 간헐적인 도뇨관이 필요한 경우(상부요로의 해부학적, 기능적 변화 없음) - 신장이식을 받은 상태
4단계	- 신장기능이 만성적으로 고도로 저하된 경우(객관적 검사결과 등으로 사구체 여과율 30ml/분 미만으로 인정되는 상태) - 신장기능 저하로 일시적으로 혈액투석이 필요한 경우 - 비뇨생식 질환으로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신체활동에 상당한 제한이 있는 경우 - 요루를 가지고 있는 경우 - 도뇨관을 지속적으로 유치하고 있는 경우 - 배뇨를 위해 간헐적인 도뇨관이 필요한 경우(상부요로의 해부학적, 기능적 변화 있음) - 신장이식을 받은 상태이나 거부반응이 있는 경우

9

내분비계 질환

● 진단서 발급 및 작성기준

가. 진단서 발급기준

- 진단은 지속적으로 진찰하고 진료했던 의사가 실시하고 아래의 평가기준에 따라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를 발급한다.
- 통원이나 입원치료 기록이 있는 경우에 진단서 발급이 가능하고, 최근 2개월간의 진료기록지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 만성질환을 제외하고는, 통원이나 입원치료 기록은 없어도 이전 진료기관 등에서 해당 질환으로 인한 진료가 있었거나 질병이 고착되어 상태의 호전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내용 및 현재 상태의 구체적 진찰소견을 기재한 소견서 첨부시 진단서 발급이 가능하다.(만성질환은 최근 2개월 이내에 치료받은 기록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

나. 진단서 작성기준(기재사항 및 첨부사항)

- 복용중인 약물이 있을 경우 약물명, 용량 및 복용기간을 기재하고, 기재가 어려운 경우 최근 2개월간의 투약기록지를 첨부할 수 있다.
- 질병의 발생일, 치료내용, 치료기간, 평가기준에 따른 진찰 소견 및 검사결과 등을 상세히 기재한다.

다. 유의사항

- 내분비계 질환유형 내에서는 1개의 질병만을 평가한다.

● 해당 질병

- 갑상선, 당뇨병 등

● 평가방법

- 약물치료 정도, 질환의 악화 여부, 합병증 발생 정도, 치료경과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다.
- 뇌하수체·갑상선·부신 전절제술은 영구고착 질환으로 평가할 수 있다.
- 당뇨병으로 인한 합병증이 발생한 경우 다른 질환유형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 등 증증도를 고려하여 1단계 상향할 수 있다.

● 평가표

단계	상태 기준
1단계	- 당뇨병이 확진되었고, 경구 복용약 투여로 관리되는 경우 - 갑상선 약물 복용을 해야 하는 경우
2단계	- 당뇨병이 확진되었고 인슐린을 투여하며, 확실한 식이요법이 필요한 경우
3단계	- 당뇨병이 확진되었고, 경구약과 인슐린 치료 등 모든 치료에도 불구하고 혈당 조절이 잘 안되며, 적극적인 식이요법이 필요한 경우
4단계	- 해당 없음

10

혈액 및 종양질환계 질환

● 진단서 발급 및 작성기준

가. 진단서 발급기준

- 진단은 지속적으로 진찰하고 진료했던 의사가 실시하고 아래의 평가기준에 따라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를 발급한다.
- 통원이나 입원치료 기록이 있는 경우에 진단서 발급이 가능하고, 최근 2개월간의 진료기록지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 통원이나 입원치료 기록은 없으나, 이전 진료기관 등에서 해당 질환으로 인한 진료가 있었거나 질병이 고착되어 상태의 호전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내용 및 현재 상태의 구체적 진찰소견을 기재한 소견서 첨부 시 진단서 발급이 가능하다.

나. 진단서 작성기준(기재사항 및 첨부사항)

- 복용중인 약물이 있을 경우 약물명, 용량 및 복용기간을 기재하고, 기재가 어려운 경우 최근 2개월간의 투약기록지를 첨부할 수 있다.
- 질병의 발생일, 치료내용, 치료기간, 평가기준에 따른 진찰 소견을 기재하고, 종양의 경우 항암치료 병력 및 방사선 치료력을 기재한다.

다. 유의사항

- 혈액 및 종양질환계 질환유형 내에서는 1개의 질병만을 평가한다.

● 해당 질병

- 적혈구 질환, 백혈구 감소, 혈소판 이상, 혈액응고 이상, 골수 이상, 혈액암(백혈병, 림프종), 종양 등

● 평가방법

- 질병의 급·만성 여부, 약물치료 여부, 약물 부작용에 대한 주의, 질병의 급성 악화 여부, 혈구 이상에 따른 심기능, 전신 증상여부, 치료경과, 신체활동의 제한정도를 고려하여 평가한다.
- 조혈모세포이식, 뇌하수체·갑상선·부신 전절제술은 영구고착 질환으로 평가할 수 있다.

● 평가표

단계	상태 기준
1단계	- 혈액질환으로 인한 증상이 있어 주기적인 약물치료나 평가가 요구되는 경우 - 혈액질환으로 인해 주기적인 약물치료중인 경우 - 종양치료를 완료한 상태로 특별한 치료 없이 부정기적 관찰이 필요한 경우
2단계	- 혈액질환으로 지속적인 약물복용 중이나, 경도의 증상이 있는 경우 - 종양치료가 완료된 상태로 정기적 관찰이 필요한 경우
3단계	- 혈액질환으로 약물복용 등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신체활동에 제한이 있는 경우 - 진행성 혈액질환으로 주기적인 치료(수혈 등) 또는 정밀 검사(골수검사 등)를 시행하는 경우 - 조혈모세포이식을 받은 상태 - 종양의 경과를 확인하기 위해 3개월~6개월 간격의 통원가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4단계	- 혈액질환으로 약물복용 등 적극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활동 중에 숨이 차는 등 신체활동에 상당한 제한이 있거나, 만성적 백혈구 감소로 항생제를 투여하는 경우 - 혈액암이나 골수이상으로 화학요법 중인 경우 - 종양치료(항암요법이나 방사선 치료) 중이거나 수술 후 상태로 집중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 최근 6개월 이내 항암치료나 방사선치료가 끝난 경우 - 종양이 재발한 경우 - 조혈모세포이식을 받은 상태이나 거부반응이 있는 경우

11

피부질환계 질환

● 진단서 발급 및 작성기준

가. 진단서 발급기준

- 진단은 지속적으로 진찰하고 진료했던 의사가 실시하고 아래의 평가기준에 따라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를 발급한다.
- 통원이나 입원치료 기록이 있는 경우에 진단서 발급이 가능하고, 최근 2개월간의 진료기록지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 ※ 통원이나 입원치료 기록은 없으나, 이전 진료기관 등에서 해당 질환으로 인한 진료가 있었거나 질병이 고착되어 상태의 호전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내용 및 현재 상태의 구체적 진찰소견을 기재한 소견서 첨부시 진단서 발급이 가능하다.

나. 진단서 작성기준(기재사항 및 첨부사항)

- 치료중인 약물이 있을 경우 약물명, 용량 및 복용(사용)기간을 기재하고, 기재가 어려울 경우 최근 2개월간의 투약기록지를 첨부할 수 있다.
- 질병의 발생일, 치료내용, 치료기간, 평가기준에 따른 진찰 소견을 기재한다.
- 외모 및 결손질환의 경우 병변 부위, 크기(면적)에 대한 소견을 상세히 기재하거나, 피부의 색조 이상, 국소적 추형 등 병변 정도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천연색 사진 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다. 유의사항

- 동일한 평가대상 질환유형 내에서는 1개의 질병만을 평가하나, 피부질환계 질환 유형의 <피부질환> 및 <외모 및 결손질환>은 별도의 평가대상 질환으로 보아 평가할 수 있다.
 - ※ <피부질환>과 <외모 및 결손질환>이 동반된 경우 각각의 질병에 대하여 평가가 가능하나, 피부질환(또는 외모 및 결손질환) 내에서는 1개의 질병만 평가 가능

【피부질환】

● 해당 질병

- 피부의 기능적 장애를 동반하는 선천성, 유전성, 난치성 및 진행성인 피부질환

● 평가방법

- 각각의 질환 별로 피부과 전문의의 육안진단(전형적인 소견으로 교과서의 임상진단 기준에 맞아야 함), 첩포검사(패치 검사), 유발 검사, 병리조직검사, 알레르기 검사 등 객관적인 검사 소견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 징후 및 증상의 정도는 지속기간, 이환범위, 증상의 정도를 평가하도록 한다.

● 평가표

단계	상대 기준
1단계	- 피부질환으로 인해 약물치료 등 주기적인 치료중인 경우
2단계	- 피부질환으로 인해 약물치료 등 지속적인 치료중이나 증상이 존재하는 경우
3단계	- 피부질환으로 인해 지속적인 약물치료 및 외용제 도포 등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신체활동의 제한이 있는 경우
4단계	- 피부질환으로 인해 모든 치료에도 불구하고, 신체활동의 상당한 제한이 있거나, 외부활동 등의 제한이 필요한 경우

【외모 및 결손질환】

● 해당 질병

- 일상 활동(ADL)에는 지장이 없으나 선천 기형, 유전, 질병, 화상, 사고 등으로 인한 피부의 구조적 증상이 적절한 치료나 처치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개선될 여지가 없이 고착된 상흔(흉터)을 위시하여 피부의 색조 이상, 국소적 추형
(예) 켈로이드(Keloid), 신경섬유종(Neurofibromatosis), 반흔(Scar)

● 평가방법

- 외모는 신체에서 평상의 의복으로 가려있지 않고 일상적으로 노출되는 부분을 말하며 안면부와 팔다리로 구분한다.
- 노출된 안면부란 전두부와 측두부, 이개후부의 모발선과 정면에서 보았을 때 경부의 전면과 후면을 구분하는 수직선을 연결한 선을 경계로 얼굴, 귀, 목의 앞면을 포함한다.
- 노출된 팔다리란 팔꿈치 이하 및 무릎관절 이하를 말한다.
- 노출된 안면부 또는 팔다리 각 부위에 대하여 병변의 크기(면적)를 산출하며, 안면부와 팔다리부위에 각각 병변이 확인되는 경우에도 병변의 크기를 합산하지 않고, 높은 단계로 적용되는 부위의 산출값을 기준으로 하여 단계를 평가한다.
- 피부의 반흔, 색소침착, 조직의 비후나 함몰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천연색 사진 자료 등을 확인할 수 있다.

● 평가표

단계	노출된 안면부 또는 팔다리의 눈에 띄는 반흔, 색소침착, 조직의 비후나 함몰	코의 결손	귀, 눈꺼풀의 결손
1단계	10% 이상인 경우	1/4 미만인 경우	한쪽 귀 대부분의 결손인 경우
2단계	25% 이상인 경우	1/4 이상인 경우	양쪽 귀 대부분의 결손인 경우 한쪽 눈꺼풀의 뚜렷한 결손인 경우
3단계	45% 이상인 경우	1/3 이상인 경우	양쪽 눈꺼풀 대부분의 결손인 경우
4단계	60% 이상인 경우	2/3 이상인 경우	

2-3

활동능력 평가기준 (제10조 제4항 [별표 2])

제1장 총론

1. 목적

이 기준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7조제4항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3조 제3항에 따라 근로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능력 정도를 평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가. 이 기준은 다음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 근로능력판정을 위한 의학적 평가를 하는 때에 적용한다.

-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2항 및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법 제26조에 따른 수급권자
- 2) 「의료급여법」제3조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 규정에 따른 수급권자

3. 평가항목

구 분		정 의	평 가 항 목	
신체 능력	① 운동기능 (간이 평가항목)	일상생활에서 신체적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	1	팔뻗기
			2	쫓그려 얹기
			3	평지이동
			4	층간이동
			5	물건 들고 옮기기
인지 능력	② 만성적 증상 (간이 평가항목)	판정 신청한 질환 외 보유 중인 만성질환 여부 및 상태	6	입통원
			7	약복용
			8	건강관리
인지 능력	③ 자립성 (간이 평가항목)	건강한 심신의 유지 및 자기관리 할 수 있는 능력	9	자기관리

구 분		정 의	평 가 항 목	
	④ 사회성 (간이 평가항목)	타인과 어울려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	10	의사소통
			11	감정조절
			12	대처능력
			13	공간지각력
음주	⑤ 알코올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사회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상태	14	음주문제
영향 요인	⑥ 자격증	노동시장 취업을 위한 관련 자격증 보유 여부	15	자격증 보유
	⑦ 근로 경험	취업 이력을 통한 근로활동 가능 여부	16	근로 경험
	⑧ 구직동기	전반적인 평가과정에서 보이는 성실성 및 책임감 정도	17	의지력
	⑨ 연령	연령에 따른 취업가능 여부	18	연령
	⑩ 학습능력	학습능력에 따른 취업가능 여부	19	학습능력

4. 평가방법

가. 평가는 간이평가 → 전체 평가 순으로 하되, 평가항목별 평가기준에 따른다.

나. 평가항목별 평가기준 적용시 면접평가 → 관찰평가 → 상황평가 순으로 평가하여 점수를 부여하며, 각 평가방법은 다음과 같다.

구 분	평 가 방 법
면접평가	평가항목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평가대상자와 대면하여 질의응답을 통해 평가
관찰평가	평가대상자의 행동, 말투, 태도 등을 관찰하여 평가
상황평가	사전에 이미 획득하거나 또는 주변 사람으로부터 얻은 주거현황, 건강상태, 가족과의 관계 등 상황정보에 근거하여 평가

5. 평가척도

가. 신체능력 및 인지능력은 각 평가항목의 평가 기준별로 1~5점 하나의 점수를 부여하고 음주와 영향요인은 항목별로 0~3점을 부여하여 합산

나. 점수를 부여하는 기준은 1차적으로 점수별로 형성하고 있는 기준을 우선 적용

다. 이에 대한 판단이 어려운 경우, 지침에서 제시한 방법에 따라 적용

제2장 활동능력 평가 항목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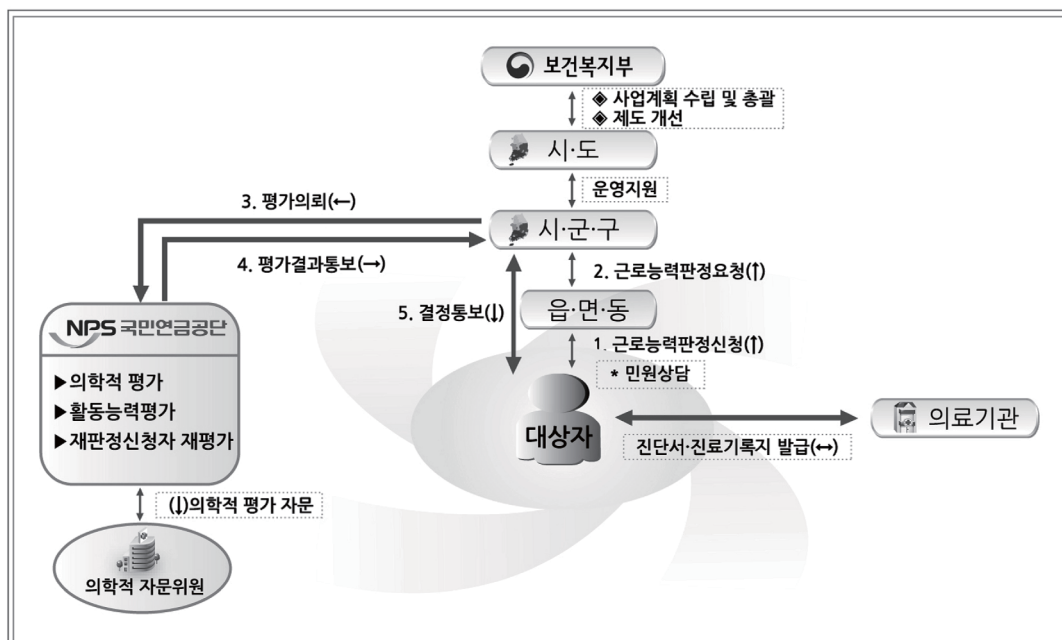
구 분		정 의	평 가 항 목		점수구성
신체 능력 (간이 평가 항목)	① 운동기능	일상생활에서 신체적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	1	팔뻗기	1점 ~ 4점
			2	쫓그려 앉기	1점 ~ 4점
			3	평지이동	1점 ~ 4점
			4	층간이동	1점 ~ 4점
			5	물건 들고 옮기기	1점 ~ 4점
	② 만성적 증상	판정 신청한 질환 외 보유 중인 만성질환 여부 및 상태	6	입·통원	1점 ~ 5점
			7	약복용	1점 ~ 5점
인지 능력 (간이 평가 항목)	③ 자립성	건강한 심신의 유지 및 자기관리 할 수 있는 능력	8	건강관리	1점 ~ 5점
			9	자기관리	1점 ~ 5점
	④ 사회성	타인과 어울려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	10	의사소통	1점 ~ 5점
			11	감정조절	1점 ~ 5점
			12	대처능력	1점 ~ 5점
			13	공간지각력	1점 ~ 5점
음주	⑤ 음주문제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사회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상태	14	음주문제	1점 ~ 3점
영향 요인	⑥ 자격증	노동시장 취업을 위한 관련 자격증 보유 여부	15	자격증 보유	1점 ~ 2점
	⑦ 근로 경험	취업 이력을 통한 근로활동 가능 여부	16	근로 경험	1점 ~ 2점
	⑧ 구직동기	전반적인 평가과정에서 보이는 성실성 및 책임감 정도	17	의지력	0점 ~ 2점
	⑨ 연령	연령에 따른 취업가능 여부	18	연령	1점 ~ 3점
	⑩ 학습능력	학습능력에 따른 취업가능 여부	19	학습능력	1점 ~ 3점

제 3 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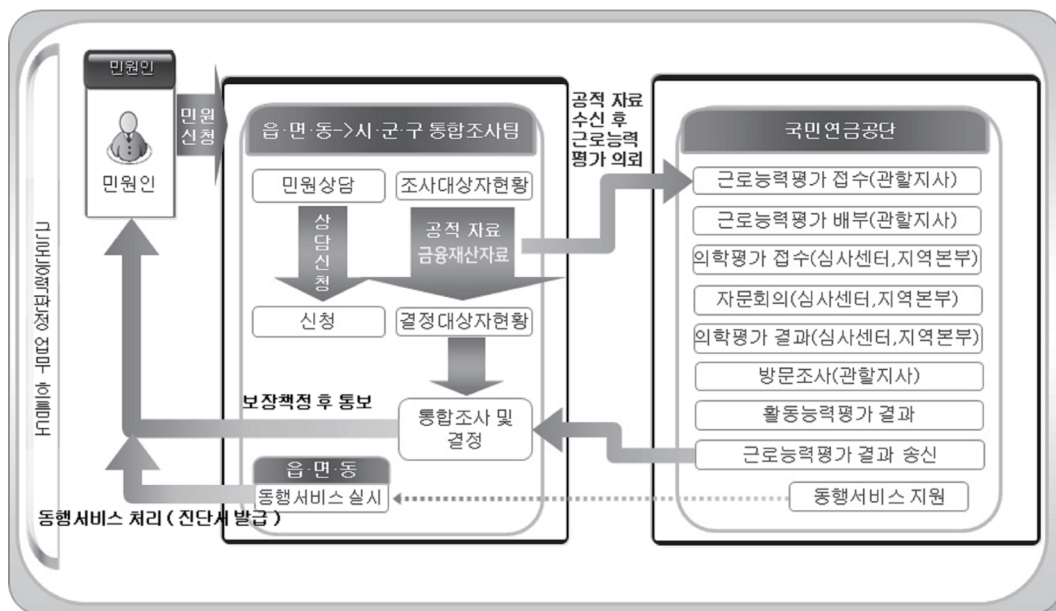
근로능력판정

- 3-1. 근로능력판정 대상
- 3-2. 질병·부상자에 대한 근로능력판정

【근로능력판정 조직체계도】



【근로능력판정 업무 흐름도】



【근로능력판정 업무처리 절차】

단 계	업 무 내 용	처 리
유효기간 만료예정자 추출	● 근로능력평가 정기평가 대상자 추출 및 명단 읍·면·동에 제공	시·군·구
근로능력판정 신청	● 질병·부상으로 인한 근로능력판정 신청 접수 - 근로능력평가 신청서,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진료기록지 사본 등 근거자료 - 서류확인, 신청인 정보 등록 후 시·군·구에 근로능력판정 요청(행복e음) ● 질병·부상으로 인한 근로능력평가 및 정기평가 안내 ● 근로능력판정 결과 불복에 따른 재판정 신청안내 ● 진단서 제출 곤란자에 대한 진단서 발급 동행서비스(선별적 서비스) ※ 행려환자는 공문으로 근로능력평가 신청 가능	읍·면·동
평가의뢰	● 평가대상자 정보 및 진단서 등 평가관련 자료 공단 이송(행복e음)	시·군·구
평가접수	● 평가자료 접수(근로능력평가번호 부여) ● 질환별로 심사센터 또는 지역본부에 심사 배부(NPIS) ● 진단서 발급 동행서비스 지원 및 직접진단 서비스(선별적 서비스)	국민연금공단 지사
의학적 평가	● 진단서 및 진료기록지 사본 등을 검토하여 의학적 평가 - 의학적 평가 자문위원을 활용, 심사 실시 및 질환별 단계 평가 ● 의학적 평가결과 관할지사로 통보(NPIS)	국민연금공단 심사센터 지역본부
활동능력 평가	● 간이평가 등 활동능력 평가 실시 - 운동기능, 만성적 증상, 자립성, 사회성, 근로가능성 등 19개 항목 점수 부여(총점 75점) - 면접평가, 관찰평가 및 주변인 정보 활용(상황평가) 평가 실시 ※ 필요한 경우 시군구(읍면동)에 자료제공 및 협조 요청	국민연금공단 지사

단 계		업 무 내 용	처 리
평가결과 통보		- 의학적 평가 및 활동능력 평가 등 근로능력평가 결과 시·군·구 통보(연계망 활용) - 국민연금공단에 접수된 날부터 21일 이내	국민연금공단
↓			
근로능력판정 및 통지		국민연금공단의 평가결과 토대로 근로능력판정 (행복e음)	시·군·구
↓			
권리 구제	재판정	- 시·군·구청장에게 재판정 신청서 제출(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 진료기록지 사본, 검사결과지 등 불복에 대한 입증 서류 첨부	신청자 (시·군·구)
		(의학적 재평가) 자문의사 재선정후 재평가	국민연금공단 심사센터 지역본부
		(활동능력 재평가) 평가자 재선정후 재평가	국민연금공단 지사
		(근로능력 재판정) 근로능력 재평가 결과 토대로 재판정 - 신청일부터 30일 이내 통지	시·군·구
	이의 신청	(1차) 시·군·구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시·군·구를 경유하여 시·도지사에 이의신청(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8조) - 근로능력평가관련 자료제공 등 지원(국민연금공단) -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신청, 송부일부터 30일 이내 통지	시·도
		(2차) 시·도지사 경유, 복지부 제출(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0조) - 근로능력평가관련 자료제공 등 지원(국민연금공단) -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신청, 송부일부터 30일 이내 통지	보건복지부

3-1 근로능력판정 대상

1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

- 18세 이상 64세 이하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사상자, 국가유공자, 무형문화재, 북한이탈주민, 5·18민주화 운동 관련자로서 다음의 근로능력이 없는 수급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만 18세('23년 기준 2005년생) 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만 65세('23년 기준 1958년생) 생일이 속한 달의 이전 달까지]

2 근로능력 없는 수급자

가. 근로능력 없는 수급자

- (1) 질병·부상 또는 그 후유증으로 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사람 중에서 근로능력평가를 통해 시장·군수·구청장이 근로능력이 없다고 판정한 사람
 - 질병·부상자에 대한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등의 제출을 통한 근로능력평가는 생계·의료급여 수급(권)자만 적용하며, 주거·교육급여 수급(권)자는 적용하지 않음
- (2) 그 밖에 근로가 곤란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람
 - 20세 미만의 중·고교 재학생(재학증명서 첨부)
 - 만 20세('23년 기준, 2003년생)가 되는 날이 속한 달의 다음달 1일 근로 능력자로 전환
※ 한겨레중고등학교(북한이탈주민자녀)에 재학 중인 만 20세 이상 재학생은 근로 곤란자로 판단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별표1]에 의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 중 1~3급 상이등급 해당자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장기요양 1~5등급 판정자

- 보건복지부 고시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제2023-1호)」별표2의 ‘의료급여 회귀·중증난치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및 건강보험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제2022-294호)」 별표3의 ‘중증질환 산정특례 대상(암환자, 중증화상 환자만 해당)’ 등록자
 - 산정특례 등록한 본인에 한해 산정특례 등록기간 동안 근로능력평가 유예
 - 회귀·중증난치질환자 및 암환자는 5년 간, 중증화상환자는 1년(6개월 연장 가능), 결핵질환(A15~A19, U84.3)은 등록시작일 ~ 치료종료 시까지 근로능력평가 유예
 - 단, 산정특례 등록대상자이나 미등록 상태인 경우는 신청자가 의료급여기관에서 ‘의료급여/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신청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도록 조치
 - 중증질환 및 회귀·중증난치질환자 산정특례 등록제에 따른 등록자 확인 방법
 - (현재 기초수급자)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에서 산정특례 등록 여부 확인 후 산정특례 등록자인 경우 등록기간 동안 근로능력평가 유예
 - (기초수급 예정자 / 신청일 현재 건강보험 가입대상) 건강보험공단(지사)에 산정특례 등록 여부 확인하여 등록기간 동안 ‘근로능력 없음’ 판정 처리
- ※ 「2023 의료급여 사업안내」 ‘중증질환 및 회귀·중증난치질환자 산정특례 등록(p.285~297, p.686~690 참고)
- 인체 면역 결핍 바이러스 환자(상병코드 B20~B24)의 경우 최초 급여 신청 시에만 ‘일반진단서’로 확인하고, 이후 유효기간 없이 계속 적용

나. 근로무능력자로만 구성된 가구

- (1) “가. 근로능력 없는 수급자”에 해당하는 사람과 다음의 (2)~(3)에 해당하는 사람, 18세 미만의 수급(권)자, 65세 이상의 수급(권)자로만 구성된 가구
- (2) 근로능력은 있으나 가구원의 양육·간병 등의 사유로 근로가 곤란한 자 중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자
 - (가) 미취학 자녀(초중등교육법 제13조에 따라 취학의무기간이 도래하지 않은 자녀)를 양육하는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수급(권)자

- ① 판정대상 가구원이 미취학 자녀 양육
- ② 양육할 수 있는 다른 가구원이 없음
- ③ 보육료(양육수당은 제외), 유아학비를 지원받지 않음
- ④ 하루 8시간 이상의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지 않음

(나) 질병·부상 또는 장애 등으로 거동이 곤란한 가구원이나 치매 등으로 특히 보호가 필요한 가구원을 간병*·보호**해야 하므로 근로가 곤란한 수급(권)자중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 간병·보호대상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

- 스스로 식사가 불가능하다.
- 스스로 용변이 불가능하다.
- 실내에서의 이동이 불가능하다.
- 치매, 정신질환 등 인지능력 결함으로 인하여 상시보호가 필요하다.
- 질병·부상 등으로 스스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타인의 돌봄이 필요하다.

② 간병 또는 보호할 수 있는 다른 가구원이 없음

③ 월 평균 20일 이상, 1일 4시간 이상의 사회복지서비스(돌봄서비스, 노인장기요양 보험, 시·군·구 자체사업 등 포함)를 제공 받지 않음

※ 종일 간병·보호 필요성에 대하여는 지방생활보장위원회에서 결정

* 간병대상자 : 질병부상 등으로 인하여 스스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타인의 돌봄을 필요로 하는 자

** 보호대상자 : 스스로 식사나 용변이 불가능하거나 보장구가 있어도 실내에서의 이동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치매, 정신질환 등 인지능력 결함으로 종일 보호가 필요한 경우

(3) 조건부과제외자 중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자

(가) 임신 중에 있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여자

- 임신 사실 확인서(소견서) 및 출생증명서 또는 공부 확인

(나) 사회복지무요원 등 법률상 의무를 이행중인 자

- 보장가구에 포함되는 사회복지무요원, 상근 예비역 등
- 행복e음의 군입대 자료를 우선 활용하고 이 자료에 나타나지 않을 경우 복무 확인서 첨부
- 복무기간 종료 후에는 새로이 근로 능력 여부를 판정

※ 단, 산업기능요원 및 직업군인(부사관, 장교)은 법률상 의무를 이행 중인 사람으로 근로무 능력자로 판단하지 않음에 유의

3-2

질병·부상자에 대한 근로능력판정

1 근로능력판정 신청 안내

- (1) 수급(권)자 중 근로능력 있는 사람 및 근로능력판정 유효기간 만료 예정자로서 ‘근로능력 없음’으로 판정 받고자 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근로능력평가 신청서,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및 진료기록지 사본 등을 제출하도록 안내

※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를 제출해야 하는 수급자 등이 근로능력판정 유효기간 만료일자까지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능력 있음’으로 판정

- 중증질환(암, 중증화상만 해당) 및 희귀·중증난치질환자(투석, 장기이식, 인체면역 결핍바이러스 환자, 결핵 포함)에 대해서는 산정특례 등록 대상인지 확인하고 확인결과 산정특례등록자인 경우 해당 등록기간*동안 평가 유예

* 희귀·중증난치 및 암환자(5년, 재등록 가능), 중증화상환자(1년, 6개월 연장 가능), 결핵질환(A15~A19, U84.3, 산정특례등록일~치료종료일)

※ 중증질환 및 희귀·중증난치질환자 대상 목록(p.139)

※ 아래 상병은 KCD분류코드가 없어 접수화면에서 산정특례대상 여부 팝업 표출 불가하므로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확인하여 상기상병에 해당하는 경우 산정특례등록여부 확인하여 처리

〈 KCD분류코드가 명시되지 않은 질환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기이식의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간이식을 받은 사람(V013) 나. 췌장이식을 받은 사람(V014) 다. 심장이식을 받은 사람(V015) 라. 신장이식을 받은 사람(V005) 마. 폐이식을 받은 사람(V277) 바. 소장이식을 받은 사람(V278)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성신부전의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혈액투석을 실시하는 사람(V001) 나. 복막투석을 실시하는 사람(V003) ● 혈우병 : 상병별 코드, 일련번호 선택하여 전송 |
|--|---|

(2) 근로능력평가(의학적 평가)를 위한 구비서류 안내 및 평가진행 중 추가 자료 보완이 요청될 수도 있음을 안내(정확한 상태 확인을 위한 추가 검사자료 또는 진료기록 등)

- 제출구분이 "필수"인 경우에는 반드시 공통 해당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선택"인 경우에는 해당하는 질환유형별 해당 자료가 있으면 제출합니다.
- 영구고착 질환 또는 장애인등록 심사자료 활용이 가능한 대상자는 아래의 구비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단, 기록물 보존기간이 경과한 대상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름. 예) 기초수급자 탈락 후 일정기간이 경과한 경우 기존 제출한 자료 일체는 폐기 처리됨.

제출 구분	질환 유형	구 분	해당 자료
필수	공 통	진료기록지	- 최근 2개월 간 진료기록지 (외래기록지, 경과기록지, 수술기록지 등 의사가 작성한 서류) ※ 최근 2개월 간 진료내역이 없는 경우 - 투약 내역이 있는 경우 의사가 작성한 의사처방기록지 (약물명, 용량, 투여일수 등) - 평가 부위와 관련된 수술 또는 입원 치료 이력이 있는 경우 가장 최근의 입원·퇴원 기록지 - 절단, 척추고정술, 다리길이차이, 척추변형, 왜소증은 진료기록이 없는 경우 영상자료(X-ray 등)로 대체 가능
선택	근골격계	진료기록지 등	- 상세 치료기록지(물리치료, 신경차단술 등), 재활평가자료
		검사자료	- 해당 부위의 영상자료(CT, X-ray, MRI 등), 수동관절기능 제한 (각도)에 대한 검사 결과, 신경손상(마비)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검사(도수근력, 근전도 등) 결과
	신경 기능계	진료기록지 등	- (신규) 초진 당시 입원·퇴원 기록지, 가장 최근 시행한 재활 평가자료 - (정기평가) 가장 최근 시행한 재활평가자료 - (뇌전증) ① 발작이 없는 경우 : 최근 2개월 간 진료기록지 및 약물처방지 ② 발작이 있는 경우 : 최근 1년 간 진료기록지 및 최근 2개월 간 약물처방지 ※ 소아마비, 뇌성마비로 인해 최근 진료기록이 없는 경우에는 소견서로 대체 가능합니다.

제출 구분	질환 유형	구 분	해당 자료
		검사자료	- 뇌·척수 영상자료(CT 또는 MRI) 또는 판독지 - 신경손상(마비)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검사(도수근력, 근전도 등) 결과
	정신 신경계	진료기록지	- (신규) 초진 당시 진료기록지 ※ 정신신경계 질환은 3개월 이상 충분한 치료에도 증상이 지속되면 진단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 선천성 인지기능 저하로 인해 최근 진료기록이 없는 경우에는 소견서로 대체 가능합니다.
		검사자료	- 임상심리평가보고서, 가장 최근 시행한 인지기능 검사(MMSE, GDS, CDR 등) 결과
	감각 기능계	진료기록 및 검사자료	- 청각 : 가장 최근 시행한 순음청력검사 및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 결과지 등 - 평형 : 가장 최근 시행한 전정기능검사 결과지 - 시각(질환별 검사자료) ① 당뇨망막병증, 황반변성, 망막색소변성, 망막박리, 망막혈관 폐쇄 등: 최대교정시력, 가장 최근 시행한 안저사진, M-OCT (황반부안구광학단층촬영), 시야검사결과지(망막색소변성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② 녹내장 : 최대교정시력, 가장 최근 시행한 안저사진, R-OCT (시신경섬유층두께검사), 시야검사결과지 ③ 각막혼탁 : 전안부 천연색 사진
	심혈관계	검사자료	- 심전도 검사 결과(그래프를 포함합니다) - 각종 검사판독지(관상동맥조영술, 관상동맥 CT, 심장초음파) - 관상동맥중재술 시술 또는 수술기록지 ※ 신규평가 시 제출했던 결과지는 정기평가 시 생략 가능하나, 제출 이후 검사를 추가로 시행한 경우에는 해당 검사자료를 제출
	호흡기계	검사자료	- 가장 최근 시행한 폐기능검사 결과지(그래프 포함), 흉부영상자료(X-ray)
	소화기계	검사자료	- 가장 최근 시행한 혈액검사(간기능검사 등) 결과지, 복부 초음파 및 CT 판독지, 위내시경검사 결과지
	비뇨 생식계	검사자료	- 가장 최근 2회 이내 시행한 혈중 혈청크레아티닌 검사 및 소변 검사 결과지
	내분비계	검사자료	- 가장 최근 시행한 혈액검사 결과지
	혈액· 종양 질환계	검사자료	- 가장 최근 시행한 혈액검사 결과지, 영상자료(CT 또는 MRI) 판독지
	피부 질환계	검사자료	- 일반 천연색 사진(해당 부위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으로, 촬영 날짜를 기재합니다)

(3) 정신질환·알코올질환자 등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

- 해당지역 보건소(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협조(진료기록 등 확인)를 받거나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의뢰하여 의료기관의 진료를 받게 한 후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제출하도록 안내
- 위와 같은 처리에도 불구하고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 평가대상자와 그 친족 등의 신청으로 동행서비스를 실시할 수 있으며, 국민연금공단에 동행서비스와 관련하여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음(제4장 근로능력평가 지원제도 참조)

2 근로능력평가 구비서류 확인 (지자체 수행)

(1) 근로능력평가를 위해서는 근로능력평가 신청서와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최근 2개월 이상의 진료기록지(경과기록지 등 의사가 작성한 서류) 사본 등이 필요함

- 단, 영구고착 질환 또는 장애인등록 심사자료 활용이 가능한 대상자는 '근로능력평가 신청서'만 제출 가능

(2) 근로능력평가 신청서(필수 구비서류)

- 반드시 개정된 서식으로만 접수 가능(고시 별지 제1호 서식, '21.12.31. 개정)
- (기재사항 누락 확인 철저) 평가 대상자의 성명과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작성일, 서명 또는 날인, 영상자료 첨부 여부 등 기재사항이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
-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① 국민연금공단의 장애인등록 심사 이력이 있거나, ② '영구고착 질환' 평가 이력이 있는 대상자가 해당 자료를 근로능력평가에 열람·활용하기를 희망하는 경우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항목이 누락되지 않도록 철저히 확인

(3)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필수 구비서류)

- '19.10.23. 개정된 서식으로만 접수 가능 활용(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
- 고시의 의학적 평가 기준에 따라 진단 후 발급된 것인지 확인
- 진단서 발급주체는 지속적으로 진찰하고 진료했던 의사 또는 한의사로 「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의 의학적 평가 기준에 따라 진단 후 발급
 - 한의사는 근골격계 및 신경기능계 질환에 대해서만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를 발급 가능
 - 정신신경계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의사만이 발급 가능
 - 다만, 기질성 정신질환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외에도 발급 가능(※ 신경과, 신경외과, 재활의학과 전문의 및 동 질환으로 입원 중인 경우 담당의사도 진단서 발급 가능)

【기질성 정신질환(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외 진단서 발급가능)】

연번	상병코드	상 병	비고
1	F00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2	F00.0	조기발병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3	F00.1	만기발병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4	F00.2	비정형 또는 혼합형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5	F00.9	상세불명의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6	F01	혈관성 치매(Vascular dementia)	
7	F01.0	급성 발병의 혈관성 치매	
8	F01.1	다발-경색치매	
9	F01.2	피질하 혈관성 치매	
10	F01.3	혼합형 피질 및 피질하 혈관성 치매	
11	F01.8	기타 혈관성 치매	
12	F01.9	상세불명의 혈관성 치매	
13	F02	달리 분류된 기타 질환에서의 치매	
14	F02.0	피크병에서의 치매	
15	F02.1	크로이츠펔트-야콥병에서의 치매	
16	F02.2	헌팅톤병에서의 치매	
17	F02.3	파킨슨병에서의 치매	
18	F02.4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병에서의 치매	
19	F02.8	달리 분류된 기타 명시된 질환에서의 치매	
20	F03	상세불명의 치매	
21	F04	알콜 및 기타 정신활성물질에 의해 유발된 것이 아닌 기질성 기억상실증후군	
22	F05	알콜 및 기타 정신활성물질에 의하여 유발된 것이 아닌 섬망	
23	F05.0	치매에 병발되지 않은 섬망	
24	F05.1	치매에 병발된 섬망	
25	F05.8	기타 섬망	
26	F05.9	상세불명의 섬망	
27	F06	뇌손상, 뇌기능이상 및 신체질환에 의한 기타 정신장애	
28	F06.0	기질성 환각증	
29	F06.1	기질성 긴장성 장애	
30	F06.2	기질성 망상성[조현병-유사] 장애	

연번	상병코드	상 병	비고
31	F06.3	기질성 기분[정동]장애	
32	F06.4	기질성 불안장애	
33	F06.5	기질성 해리장애	
34	F06.6	기질성 정서불안정[무력성]장애	
35	F06.7	경도 인지장애	
36	F06.8	뇌손상, 뇌기능이상 및 신체질환에 의한 기타 명시된 정신장애	
37	F06.9	뇌손상, 뇌기능이상 및 신체질환에 의한 상세불명의 정신장애	
38	F07	뇌질환, 뇌손상 및 기능이상에 의한 인격 및 행동장애	
39	F07.0	기질성 인격장애	
40	F07.1	뇌염후증후군	
41	F07.2	뇌진탕후증후군	
42	F07.8	뇌질환, 뇌손상 및 뇌기능 이상에 인한 기타 기질성 인격 및 행동장애	
43	F07.9	뇌질환, 뇌손상 및 뇌기능 이상에 인한 상세불명의 기질성 인격 및 행동장애	
44	F09	상세불명의 기질성 또는 증상성 정신장애	

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없는 다음 지역의 경우에는 의사도 진단서 발급이 가능함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없는 지역('23.1월 기준)】

시도	계	시·군·구
강원	10	양구군, 평창군, 횡성군, 영월군, 정선군, 철원군, 화천군, 인제군, 고성군, 양양군
충북	2	증평군, 단양군
충남	3	태안군, 계룡시, 청양군
전북	3	무주군, 진안군, 장수군
전남	4	구례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경북	8	울진군, 군위군, 영양군, 영덕군, 고령군, 예천군, 봉화군, 울릉군
경남	2	남해군, 산청군
계	32	

● 진료기간에 따라 평가대상 질환별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발급 기준

일반질환	통원이나 입원치료 기록이 있는 경우 가능
만성질환 (고혈압, 당뇨 등)	최근 2개월 이내에 치료받은 기록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
정신신경계 질환	3개월 이상 충분한 치료를 시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지속되는 경우 (※ 자해 및 타해 등의 위험으로 시급한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 또는 선천적 지적 능력 저하 등 질병이 고착되어 상태의 호전가능성이 없는 경우는 예외)

- 만성질환을 제외하고, 통원이나 입원치료 기록이 없으나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내용 및 현재 상태의 구체적 진찰소견을 기재한 소견서 첨부 시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발급 가능

- 이전 진료기관 등에서 해당 질병으로 인한 진료가 있었던 경우
- 질병이나 부상이 고착되어 더 이상의 치료에도 상태의 호전가능성이 없는 경우

(4)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의 유효기간은 진단서 발급일로부터 2개월임

(5)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에 기재된 평가대상 질환에 대한 최근 2개월 동안의 진료기록지 사본 첨부

3 근로능력판정 신청서류 접수 (지자체 수행)

(1) 근로능력판정 구비서류가 근로능력판정에 필요한 서류가 맞는지 확인한 후 접수

- 평가 구비서류 (필수 구비서류)

공통	- 근로능력평가 신청서 -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최근 2개월 이내 발급), - 진료기록지* 사본(최근 2개월분), 소견서(해당하는 경우) ※ 외래기록지, 경과기록지, 수술기록지, 압퇴원기록지 등 의사가 작성한 서류
영구고착 질환 또는 장애인등록 심사자로 활용자	- 근로능력평가 신청서

- 필수적으로 소견서 첨부해야 하는 경우(※ 추가 검사결과지 등 제출 가능)

- ① 통원이나 입원치료 기록은 없으나 이전 진료기관 등에서 해당 질병으로 인한 진료가 있었던 경우
- ② 통원이나 입원치료 기록은 없으나 질병이나 부상이 고착되어 더 이상의 치료에도 호전가능성이 없는 경우

(2) 다음의 경우 근로능력평가 의뢰 전에 평가대상자에게 자료보완을 요구하여 자료를 제출받아야 하고, 평가대상자는 자료보완을 통지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보완 제출하여야 함

- 평가 구비서류가 미비
-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기재사항 흠결 등 형식적인 하자가 있는 경우

(3) 국민연금공단이 평가진행 과정에서 평가 대상자에게 추가로 자료보완 요구 또는 공단 자문의사에게 직접진단을 받도록 할 수 있음을 안내

※ 직접진단: 서면평가 원칙의 예외로서 제출된 서면자료로 의학적 상태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 평가 대상자를 공단 자문위원이 직접 대면하여 의학적 상태를 진단하는 절차

- 자료보완을 2회 이상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료보완에 불응하는 경우는 평가 반려함을 안내

- 자료보완 등 기간은 평가처리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자료보완 등 지연 시 수급권결정이 지연될 수 있음에 대해서도 안내

(4) 산정특례 등록대상에 해당하는 질병인 경우 근로능력평가를 유보하고, 등록 상태 여부 확인

- 등록대상에 해당하나, 미등록 상태인 경우는 등록하도록 안내
- 산정특례 등록 상태가 아닌 것으로 확인된 대상자만 국민연금공단에 근로능력평가 의뢰
 - ‘근로능력평가요청’ 메뉴 하단의 “기타요청내용”란에 확인 사항 기재
 - ‘산정특례 등록대상 아님’ 또는 ‘산정특례 등록대상’에 해당되나 근로능력평가를 의뢰하는 경우는 그 사유도 기재

4 근로능력평가 의뢰 (지자체 수행)

(1) 근로능력판정 구비서류 접수 시 행복e음을 통해 국민연금공단에 근로능력평가를 요청

● 근로능력평가 요청 시기

- 기존 수급자는 접수된 근로능력판정 구비서류 확인이 끝나는 대로 근로능력평가를 요청
- 신규 수급권자는 소득·재산에 대한 공적자료 조회 회신(금융재산은 회신 전) 후 기초수급자 기준선 범위 안에 있는 경우에 한해 평가를 요청
 - 다만, 긴급하게 급여를 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근로능력판정 구비서류 접수 즉시 평가 요청 가능

※ 부득이한 사유로 신속한 평가진행이 필요한 경우는 접수하면 전산 항목 상 '긴급'을 클릭하고, "기타 요청내용"에 사유 기재(국민연금공단에서 긴급으로 표출되는 기준은 '긴급' 항목을 'Y'로 클릭한 경우에 한하며, "기타요청내용"에 입력한 긴급 문구는 참고사항임)

● 근로능력평가를 요청할 결정대상자 가구에 대한 전체판정을 거쳐 근로능력평가를 요청할 대상자의 근로능력평가 신청서,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진료기록지 사본 등 구비서류를 등록한 후 근로능력평가를 요청

- 평가대상 질환, 신청일자, 신청인의 기본정보, 신청유형 등 필수입력사항을 확인
- 평가 대상자의 근로수행능력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2개 이내의 평가대상 질병을 등록하여 평가 의뢰
 - ※ 다수의 질병에 대해 평가를 요청하는 경우에도 평가는 2종류의 질병까지만 인정하므로 평가받을 질병을 평가대상자에게 확인하여 상태가 더 중한 2종류 이내로 확정하여 평가 의뢰
-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에 기재되어 있는 평가대상 질환과 질병명 또는 KCD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분류번호 등을 확인하여 바르게 분류되어 있는지 확인

* 평가대상 질환유형

- | | | | |
|------------------|----------------|-----------------|--------------------|
| ①-1 근골격계(상·하지) 한 | ①-2 근골격계(척추) 한 | ② 신경기능계 한 | ③ 정신신경계 |
| ④-1 감각기능계(청각) | ④-2 감각기능계(명형) | ④-3 감각기능계(시각) | ⑤ 심혈관계 |
| ⑥ 호흡기계 | ⑦-1 소화기계(간질환) | ⑦-2 소화기계(위장질환) | ⑧ 비뇨생식계 |
| ⑨ 내분비계 | ⑩ 혈액 및 종양질환계 | ⑪-1 피부질환계(피부질환) | ⑪-2 피부질환계(외모·결손질환) |

※ 근로수행에 영향을 미칠만한 가장 중한 질환유형을 2개까지 기재할 수 있으나 같은 질환유형은 1개만 선택하여 기재하고, 질환 유형별로 이에 해당하는 상세 질병명은 1개만 선택하여 기재

※ 위의 질환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장 근접한 질환유형을 선택하여 기재

※ 한 표시는 한의사도 진단서 발급이 가능한 질환유형을 의미

- 평가 자료의 스캔 상태 및 파일명 등이 평가 대상자와 정확하게 부합하는지 확인
 - 평가대상자의 신체적·정신적 특성 등 근로능력평가 시 참고사항에 대하여는 「근로능력평가요청」 메뉴 하단의 “기타요청내용”에 기입
 - 자해 또는 타해 위험 여부, 감염성 질환, 음주 습관, 생활환경, 활동능력평가 가능 시간·장소 등
- ※ 자립지원과-5485(2020.11.23.)“자해 또는 타해 위험이 있는자”에 대한 활동능력평가 개선방안 안내”

(2) 근로능력평가 서류는 행복e음을 통해 국민연금공단에 송부

- 근로능력평가 신청서,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진료기록지 사본 등 스캔 가능한 서류는 행복e음을 통해 PDF, TIFF 등 파일 전송(우편송부 불가). 다만 근로능력평가 신청 시 진료기록지 사본을 저장매체(CD)에 담아 제출한 경우 이를 국민연금공단에 우편 송부하는 방법으로 평가의뢰 가능
- 근로능력평가 신청서,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진료기록지 사본 등 평가서류 원본은 근로능력평가 신청기관에서 보관
- 행복e음은 이미지 파일만 전송 가능하므로 예외적으로 X-RAY 필름, CD 영상자료, 안저 사진 및 안면사진 등 스캔이 불가능한 자료의 경우 우편(등기), 휴대용 저장매체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송부

(3) 판정 신청에 따른 근로능력평가의 유형 구분

- ① **신규평가** : 기존 수급자 중 질병·부상 등으로 근로능력 “없음” 판정 유효기간 내에 있지 않은 경우 또는 신규 수급권자가 근로능력판정을 신청하는 경우
 ※ [예시] ‘근로능력 있음’ 판정 이후 질환을 추가하여 신청하는 경우 신규평가에 해당(재평가 아님)
- ② **정기평가** : 근로능력 “없음” 판정의 유효기간 만료 도래 예정자에 대한 평가
- ③ **재평가** : ①, ②, ④의 근로능력판정 결과에 불복하여 재판정을 신청한 경우
- ④ **직권평가** : 지자체 공무원이 대상자의 상태변화에 대해 직권으로 평가를 실시 또는 의뢰하는 경우

(4) 주소변경 통보

- 국민연금공단 평가 중 대상자의 주소가 변경되는 경우 활동능력평가 관할지사 변경을 위해 변경 내역을 지체 없이 공단으로 통보

(5) 구비서류 확인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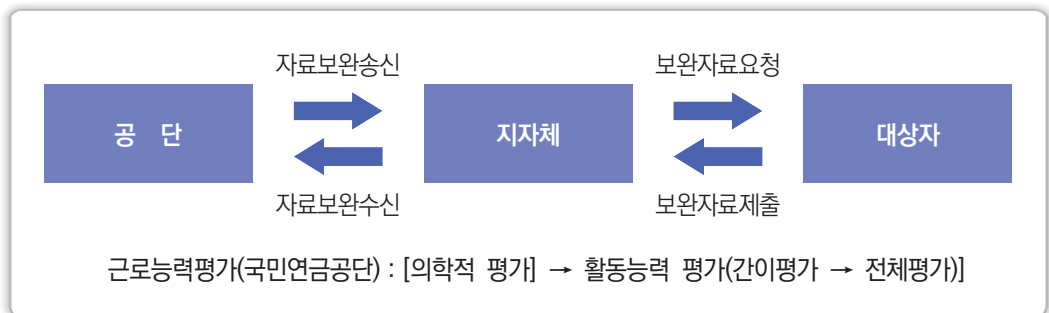
구 분	확 인 사 항
근로능력평가 신청서	- 고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근로능력평가 신청서 <개정 2021.12.31.> - 신청서 상 기재내용이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 - 평가 대상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작성일, 서명 또는 날인, 영상자료 첨부 여부 등 기재사항이 누락되지 않도록 확인 - 영구고착 질환 또는 국민연금공단의 장애인등록 심사 이력이 있고, 해당 자료를 근로능력평가에 열람·활용하기를 희망하는 대상자는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항목이 누락되지 않도록 확인
근로능력 평가용 진단서	서 식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개정 2019.10.23.> -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통합검색'으로 검색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전자민원 > 서식 찾기에서 검색 * 구서식 제출 시 최근 양식으로 다시 제출 안내
	유효기간 지자체 '최초등록일'로부터 최근 2개월 이내 발급된 것이어야 유효
	발급주체 - 의사, 한의사 - 한의사는 근골격계 및 신경기능계 질환만 발급 가능 * 전산 접수 화면 : '의사전문과목' 항목 상 한방 관련 해당 과목으로 클릭 - 정신신경계 질환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발급 가능. * 다만,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없는 지역은 일반 의사도 발급 가능.(p.84 참고) * 기질성 정신질환(F00~F09)의 경우 신경과, 신경외과, 재활의학과 전문의 및 입원 시에는 담당의사도 가능 ※ 치과과사는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발급 불가
	발급기준 - 일반질환 : 통원이나 입원치료가 있는 경우 발급 가능 * 통원이나 입원치료 기록은 없으나, 소견서를 첨부하여 발급 가능한 경우 - 이전 진료기관의 진료내용 확인 시 발급 가능 - 질병부상이 고착되어 호전 가능성이 없는 경우 - 만성질환 : 2개월 이내 치료받은 기록 있는 경우 - 정신신경계 : 3개월 이상 치료 시행하였음에도 증상 지속 시
기재사항	진단대상자 인적사항(성명, 생년월일 등), 진단질환명(질환유형, 상세질환명, KCD 분류번호, 진료기간), 근로능력 평가내용, 치료 경과내용, 발급기관(의료기관명, 의료기관 직인), 진단의사(면허번호, 전문의 번호, 전문과목, 진단의사 기명, 서명 또는 날인), 발급일자 등 확인

구 분		확 인 사 항														
		- 의료기관 직인 또는 발급의사 서명(또는 날인)이 누락된 경우 : 접수를 보류하고, 민원에게 보완 요청(다만, 해당 의료기관이 개인 병·의원으로 직인이 없거나 의사 개인도장을 직인에 갈음하는 경우, 유선확인 후 ‘근로능력평가요청’ 메뉴 하단의 “기타요청내용”에 기재) - 정신신경계 질환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자격번호 또는 전문과목이 누락된 경우 : 유선으로 확인하고 ‘근로능력평가요청’ 메뉴 하단의 “기타요청내용”에 기재														
	평가의뢰 질병건수	● 최대 2종류 질병까지 평가 의뢰 가능 ● 동일 질환유형 내에서는 1개 질병만 평가 의뢰 가능 * 다만, 아래의 질병은 동일 질환유형이더라도 각각 의뢰 및 평가 가능 <table><tr><td>유형</td><td>근골격계</td><td>감각기능계</td><td>소화기계</td><td>피부질환계</td></tr><tr><td>질병</td><td>상·하지 / 척추</td><td>청각 / 평형 / 시각</td><td>간 / 위장</td><td>피부 / 외모 및 결손</td></tr></table> ※ (예시) 상·하지 질병과 척추 질병은 각각 평가 의뢰 가능					유형	근골격계	감각기능계	소화기계	피부질환계	질병	상·하지 / 척추	청각 / 평형 / 시각	간 / 위장	피부 / 외모 및 결손
	유형	근골격계	감각기능계	소화기계	피부질환계											
질병	상·하지 / 척추	청각 / 평형 / 시각	간 / 위장	피부 / 외모 및 결손												
평가질병 착오의뢰	● 평가의뢰 질병 건수가 착오 입력되지 않도록 유의 - 질병 2개 의뢰 가능하나, 1개만 입력한 경우 ⇒ 취소 후 다시 2개 질병 입력 - 동일 질환유형 내 2개 질병을 입력한 경우 ⇒ 취소 후 다시 1개 질병만 입력 ● 질환유형, 질병명, KCD 분류번호 등이 오류 입력되지 않도록 유의															
진료기록지 사본		● 최근 2개월분 - 최근 2개월간의 진료기록 전부 제출 (예: 최근 2개월간 총 10회 진료 받은 기록이 있다면 10회 방문 기록 모두 제출) * 만일 최근 2개월 내에는 병원에 방문한 기록이 없으나, 2개월 이전 방문하여 다량의 약물 처방을 받아 최근까지도 계속 약물 복용 중인 경우 : 해당 자료를 포함하여 최근 진단서 발급 당일 자료까지 모두 제출														
영상자료 (CD 또는 X-ray 필름)		● 우편송부 시 반드시 근로능력평가 신청서 항목에 기재 및 전산 해당 항목에 수량 등록·전송 후 등기우편 발송 * 영상자료가 공단에 도착하기 전 평가가 진행되지 않도록 해당 내용을 공단에 사전 안내 필요														
소견서		● 통원이나 입원치료 기록이 없으나 이전 진료기관 등의 해당 질병으로 인한 진료내용을 확인하는 경우나 질병·부상이 고착되어 호전 가능성이 없는 경우로서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발급 시 소견서 첨부														
추가전송 (진료기록지 등)		● 근로능력평가 진행 중 대상자가 자료를 추가 제출한 경우 국민연금공단에 추가 송부 방법 - 추가 송부 가능한 서류 : ‘평가요청중인 질병’ 관련 자료(진료기록지 등) * 당초 평가 요청한 질병과 다른 질병에 대한 서류(진단서 등)는 불가 - 전송 가능 시기 : 국민연금공단 진행단계 중 접수단계까지														

5 자료보완 (국민연금공단 ↔ 지자체 ↔ 대상자)

- (1) 국민연금공단은 의학적 평가를 하던 중 정확한 평가를 위하여 검사결과 등의 필요한 자료에 대한 보완을 시·군·구에 요청 가능
- 국민연금공단에서는 보완이 필요한 자료와 제출 기한 등을 정하여 시·군·구에 통보
 - 자료보완의 기한은 원칙적으로 15일 이내이며, 자료의 성질이나 확보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국민연금공단에서 결정
 - 시·군·구에서는 자료보완 안내서를 행복e음에서 출력하여 평가대상자에게 송부하고, 보완 요청한 자료를 기한 내에 제출하도록 안내
 - 검사예약 대기 등 제출기한 내에 자료를 보완하기 불가능한 경우 시·군·구에서 제출 기한을 연장하고, 이를 국민연금공단에 통보
 - 동행서비스를 제공받은 평가대상자가 거동불편 등으로 자료를 직접 보완하여 제출할 수 없는 경우 평가대상자의 동의 및 위임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에서 진료기록 등 평가자료 발급대행 서비스 제공 가능
 - 보완요청 자료 접수 및 미제출시 처리 방법
 - 제출기한이 만료되었으나 보완이 되지 않은 경우 국민연금공단은 시·군·구에 자료보완 재요청
 - 2회의 자료보완 요청(제출촉구 포함)에도 불구하고 자료의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은 때에는 국민연금공단은 평가 의뢰를 반려

【자료보완 업무처리 흐름도】



6 근로능력평가 취소 (지자체 수행)

(1) 평가대상자가 사망, 수급자격 상실 또는 수급자격 미해당, 근로능력평가신청 철회 등의 사유로 평가가 불필요한 경우 평가의뢰 취소

- 신규 수급권자가 금융소득자료 확인으로 수급 미해당 시 평가의뢰 취소

(2) 평가의뢰 취소 시 행복e음을 통해 국민연금공단에 자동 통보되며, 국민연금공단은 진행 중인 평가 중단

(취소사유)

- | | | |
|------------|----------------|---------------|
| ① 평가대상자 사망 | ② 평가대상자 수급권 상실 | ③ 평가대상자 평가 철회 |
| ④ 착오의뢰 | ⑤ 기타 | |

7 근로능력평가 반려 (국민연금공단 수행)

(1) 평가대상자에게 자료보완, 직접진단 또는 활동능력평가에 대하여 2회에 걸친 요구에도 불응한 경우 국민연금공단은 평가의뢰 반려 가능

(2) 진단서상 필수 기재사항 및 확인사항 누락 등 평가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 반려 가능

(3)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평가 의뢰가 반려된 경우 사군구는 근로능력이 있는 것으로 판정 가능

8 근로능력평가 방법 (국민연금공단 수행)

근로능력평가(국민연금공단) : [의학적 평가] → 활동능력 평가(간이평가 → 전체평가)

(1) 국민연금공단에서 실시하는 근로능력평가에 관한 내용을 정확히 안내하여 불필요한 민원 발생 및 평가 수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

(2) 의학적 평가

- 의사 또는 한의사가 의학적 평가 기준에 따라 발급한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진료 기록지 사본 등을 국민연금공단의 심사전문 직원 및 자문위원(의사 또는 한의사)이 평가하여 의학적 평가 단계 결정(1단계~4단계)
 - ※ 평가대상 질병·부상이 근로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미약하여 의학적 평가기준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단계외'로 평가
 - ※ 공단이 '영구고착 질환'으로 인정한 경우 다음 평가부터 의학적 평가를 생략하고 기존 의학적 평가 단계를 준용하며, 의학적 단계에 따라 활동능력 평가 여부 결정(시행일 : '22.12.1.)
- 다수의 질병에 대해 평가를 요청하는 경우에도 의학적 평가 기준에 따라 2종류의 질병까지만 평가 실시
- 2종류의 질병 모두 의학적 단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높은 단계보다 1단계 상향 결정

(3) 활동능력 평가

- 국민연금공단의 활동능력 평가 담당자가 평가대상자에 대한 면담 또는 실태조사 등을 통하여 활동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항목별로 점수(총점 75점) 부여
- 국민연금공단에서 활동능력 평가 수행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한 경우 관련 정보제공, 출장 동행, 장소 제공 등에 최대한 협조

9 '근로능력 없음' 판정기준

- (1차) 의학적 평가 결과가 3단계 및 4단계인 경우
- (2차) 활동능력 평가의 간이평가 결과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신체능력 평가항목 중 운동기능이 10점 이하이고 만성적 증상이 3점 이하
 - 인지능력 평가항목 점수의 합이 13점 이하
- (3차) 의학적 평가 단계별 활동능력 평가 결과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 의학적 평가 2단계인 경우 : 활동능력 평가 63점 이하
 - 의학적 평가 1단계인 경우 : 활동능력 평가 55점 이하

【근로능력판정 흐름도】



- 의학적 평가 단계 외 : ‘근로능력 있음’으로 판정(활동능력평가 불요)
- 의학적 평가 1~2단계 : 활동능력평가 결과 55점(1단계), 63점(2단계) 이하인 경우 ‘근로능력 없음’으로 판정
 - ※ 간이평가 결과 운동기능 점수 합이 10점 이하이고 만성적 증상 점수 합이 3점 이하인 경우나, 인지능력 평가항목 점수 합이 13점 이하인 경우 평가 조기 종료
- 의학적 평가 3~4단계 : ‘근로능력 없음’으로 판정(활동능력평가 불요)

10 근로능력평가 결과 수신 및 판정 (지자체 수행)

(1) 근로능력평가 결과 수신

-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의학적 평가 및 활동능력 평가 등 근로능력평가 결과를 행복e음을 통해 시·군·구로 통보
- 시·군·구는 근로능력평가 결과를 확인, 통보 받은 내용을 토대로 근로능력판정 실시
 - ※ 반드시 국민연금공단의 근로능력평가 결과대로 판정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는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도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를 위하여 시·군·구에 두는 지방생활보장위원회는 급여의 특례를 심의·의결할 수 있음

(2) 근로능력판정 및 통지

- 시·군·구에서는 근로능력판정 결과를 서면(붙임 ‘근로능력판정 결과서’)으로 신청인에게 통지
- 근로능력평가 결과, 단계외 또는 평가 반려로 결정된 경우에는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재판정 등 불복절차 안내

(3) 민원상담 및 사후관리

- 근로능력판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판정결과에 대해 설명하고, 추가서류의 보완 등을 거쳐 「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14조에 따라 판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 할 수 있음을 안내
 - 국민연금공단은 지자체 요청 시 이의신청에 따른 검토의견서(의학적 평가 판정 관련 질환별 구체적 사유 등)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제출

11 근로능력판정의 유효기간 (지자체 수행)

- (1) ‘근로능력 없음’으로 판정된 경우 그 판정의 유효기간은 판정을 받은 날부터 1년, 다만, ❶ 의학적 평가 결과가 1단계 고착 및 2~4단계 비고착인 경우 그 유효기간을 2년, ❷ 의학적 평가 결과가 2~4단계이며 고착으로 평가된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을 3년으로 할 수 있음
- 고착이란 질병이나 부상의 의학적 상태가 2년 이상 호전 가능성이 없는 경우를 말하며, 의학적 상태의 호전 가능성에 대한 판단은 질병 또는 부상의 특성, 중증도, 치료 경과, 치료의 종결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국민연금공단에서 결정
 - ※ 평가 의뢰된 2가지 질환 중 한 가지 질환만 고착으로 평가된 경우에도 고착 유효기간 적용 가능
 - 연속 3회 이상 ‘근로능력 없음’ 평가를 받은 정기평가자는 그 유효기간을 ❶ 의학적 평가 결과가 1단계 고착인 경우 3년, 2~4단계 고착인 경우 5년, ❷ 의학적평가 결과가 2~4단계 비고착인 경우 그 유효기간을 4년으로 할 수 있음('23.12.1. 시행)

〈근로능력평가 판정 유효기간〉

호전가능성	의학적 단계	판정 유효기간	연속 3회 이상 ‘근로능력 없음’인 정기평가자
고착	1단계	2년	3년
	2~4단계	3년	5년
비고착	1단계	1년	-
	2~4단계	2년	4년

※ 판정 결과 ‘근로능력 없음’ 대상자가 수급자 탈락 후 재신청한 경우 기존 근로능력판정의 유효기간까지 결과 인정

(2) 유효기간 설정 방법(시점)

- 신규평가 대상자의 경우
 - 판정일부터 유효기간 설정
- 정기평가 대상자의 경우
 - 유효기간 만료 전 판정 시 유효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유효기간 설정
 - 유효기간 만료 후 판정 시 판정일부터 유효기간 설정

※ 신청인 귀책에 따른 유효기간 만료 후 판정시(평가 기간 ‘근로능력 없음’ 유지한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유효기간 설정

● 재판정(평가) 대상자의 경우

- 재판정 결과 ‘근로능력 없음’으로 되었을 경우 당초의 ‘근로능력 있음’ 판정일을 기준으로 유효기간 설정

〈유효기간 설정 시점〉

구분		유효기간 설정 시점
신규평가		판정일
정기평가	유효기간 만료전 판정	유효기간 만료일의 다음날
	유효기간 만료후 판정	판정일
재평가 ※ 재판정 결과 ‘근로능력 없음’ 판정인 경우		당초의 「근로능력 있음」판정일

※ 신청인 귀책에 따른 유효기간 만료 후 판정시(평가 기간 ‘근로능력 없음’ 유지한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유효기간 설정

(3) 기존 평가질병에 다른 질병을 추가하여 신규평가 의뢰 시 기존 평가결과 인정 범위

- 지자체에서 수급자에게 근로능력 평가 결과를 통보한 날로부터 60일까지 평가 결과 인정
- 지자체에서 기존 평가질병에 다른 질병을 추가하여 신규평가 접수 시
 - 지자체에서 수급자에게 기존 질병의 근로능력평가 결과를 통보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인지 확인 후 「기타요청」란에 「기존질병을 통보한 일자」와 「평가생략 대상*」이라고 반드시 기재한 후 의뢰

* 평가생략 대상: 기존 질병에 대해 추가로 제출한 서류가 없는 경우로 스캔입력 생략

※ 자립지원과-4090(2020.09.01.) “기존 근로능력평가 결과 인정기준 개선 안내”

12 유효기간 만료예정자 관리 (지자체 수행)

(1) 유효기간 만료 예정일 70일전에 행복e음에서 안내 대상자를 확인, 근로능력판정 유효기간이 만료예정임을 통보

- 시·군·구(통합조사관리팀에서 총괄)
 - 유효기간 만료 70일전에 행복e음의 변동관리의 '유효기간 만료예정' 메뉴에서 대상자 생성(매일)
 - 유효기간 만료예정자 명단을 추출, 3일 이내에 읍·면·동에 제공(시·군·구별 업무 여건 따라 시·군·구에서 처리 가능)
 - 기존 수급자 중 신규평가 대상자를 인지한 경우 해당 읍·면·동에 구비서류를 제출하도록 안내하고, 동 내용을 해당 읍·면·동에 통보
- 읍·면·동
 - 읍·면·동에서 안내 시 유효기간 만료예정자에게 해당 구비서류를 만료일 30일전까지 제출하도록 안내(20세 미만 등 일반 확인조사 대상은 변경예정사항을 안내)
 - 근로능력판정 대상자가 구비서류(근로능력평가 신청서,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진료기록지 사본, 의료급여산정특례신청서 등)를 제출하는 경우, 행복e음에 접수·등록하고 시·군·구로 전달
- 다시 근로능력이 없다는 판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만료일 30일 전까지 해당 구비서류를 반드시 제출

(2) 판정의 유효기간 만료예정자에 대한 판정은 신규평가와 동일하게 국민연금 공단에 평가(정기평가)를 의뢰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판정

(3)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아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유효기간 초과' 대상자로 변동됨('근로능력 있음' 처리 대상)

(4) 유효기간 만료 시 처리방법

- 근로능력평가 자료를 유효기간 만료 30일 이전 제출하였으나 유효기간 만료일 이후까지 평가 미완료의 경우
 - 판정 완료일까지 '근로능력 없음' 유효기간 연장 처리
- 근로능력평가 자료를 유효기간 만료 30일 미만~만료일 이전 제출하였고, 유효기간 만료일 이후까지 평가 미완료의 경우
 -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판정 완료일까지 '근로능력 없음' 유효기간 연장 처리
 - 그 외의 경우 유효기간 만료 다음날부터 '근로능력 있음' 처리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을 앓거나 골절 치료를 위해 고정(깁스, 부목 등)이 필요하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등 일시적으로 근로능력이 없는 경우
 - 일시적인 근로무능력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최대 3개월) '근로능력 없음' 유효기간 연장
- 질병, 부상 등으로 3개월 이상 장기입원환자의 경우, 일반진단서 또는 입원확인서 등을 검토 후 해당 보장기관 담당공무원의 판단에 따라
 - 일시적인 근로무능력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최대 6개월) '근로능력 없음' 유효기간 연장

(5) 유효기간 만료 도래하는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의 평가 유예 방법

-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등록된 대상자가 아래의 항목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근로능력평가 의뢰 없이 종전 판정유효기간과 동일하게 평가유예 처리

다음 조건 모두 만족 시 평가 유예대상으로 평가 없이 유효기간 연장처리

- ① 직전 근로능력평가에서 장애유형과 상응하는 질환유형으로 평가하여 의학적 평가 결과가 2~4단계 이면서 「근로능력 없음」으로 판정 받음
- ②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해당 등록 장애유형을 유지하고 있음

〈평가질환별 상응 장애유형표〉

근로능력평가질환(11개)	장애 유형(13개)	
근골격계	지체장애	절단장애
		관절장애
		기능장애
		척추장애
		변형장애
신경기능계	뇌병변장애	
	뇌전증장애	
	언어장애	
	지체장애	기능장애
정신신경계	정신장애	
감각기능계	청각장애	시각장애
		청력장애
		평형기능장애
	언어장애	
심혈관계	심장장애	
호흡기계	호흡기장애	
소화기계	간장애	
	장루·요루장애	
비뇨생식계	신장장애	
	장루 및 요루장애	
내분비계	-	
혈액 및 종양질환계	-	
피부질환계	안면장애	

13 근로능력판정의 조정(직권평가) (지자체 수행)

- (1) 국민연금공단의 근로능력평가를 거쳐 근로능력판정 결과 ‘근로능력 없음’ 판정을 받았으나 수급자의 판정상태가 변화되어 ‘근로능력 있음’으로 판정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다시 근로능력판정을 받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 가능
 - 근로능력 상태를 확인하려는 경우 이를 해당 수급자에게 서면통지
 - 해당수급자는 판정상태가 변화되지 않았다는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등 증빙서류를 시·군·구에 제출
 - 시·군·구에서는 이를 기초로 근로능력판정 조정 여부 판단을 위한 근로능력평가 의뢰 여부를 결정
 - 근로능력판정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시 국민연금공단에 근로능력평가를 의뢰
- (2) 수급자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근로능력 있음’으로 판정 할 수 있음
 - 직권으로 의뢰한 공단의 판단에 반하는 결정을 할 경우, 민원인에게 명확한 사유 및 권리구제 절차 안내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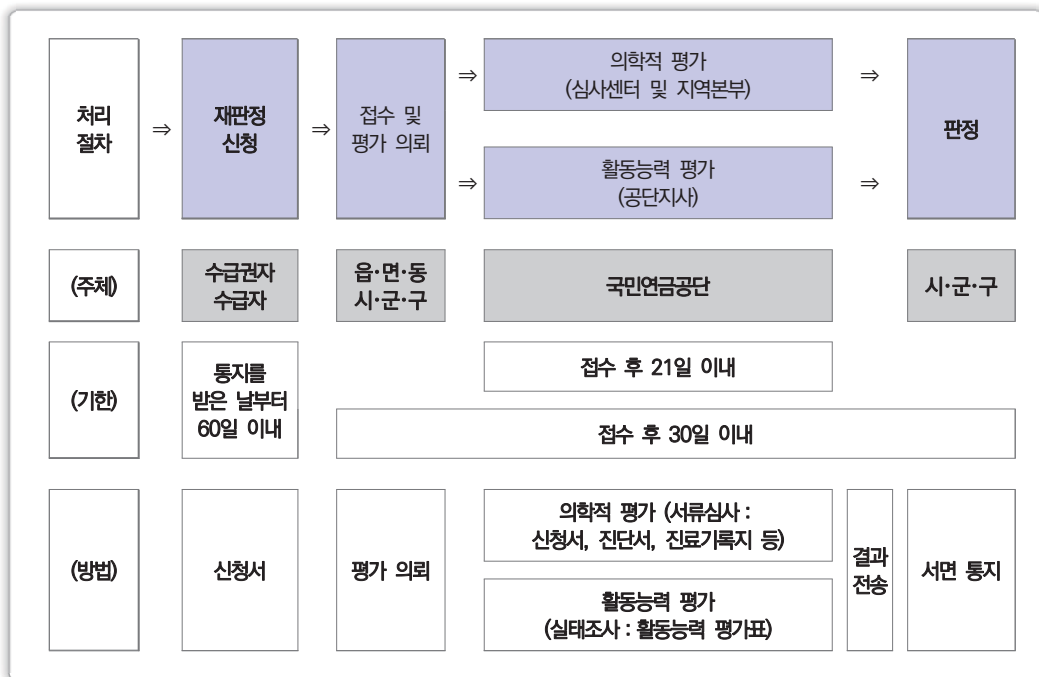
14 근로능력판정에 따른 권리구제(재판정)

- (1) 근로능력판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재판정을 신청할 수 있음
 - 근로능력판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재판정 신청서’와 추가서류를 시·군·구에 제출
 - ※ 재판정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당초 근로능력평가를 위해 제출했던 서류(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진료기록지 사본 등) 외에 주장하는 내용에 대하여 증빙하는 추가서류를 반드시 제출
- (2) 신청서를 접수한 시·군·구에서는 재판정 신청서와 추가서류를 행복e음을 통해 국민연금공단에 근로능력평가(재평가)를 의뢰
 - ※ 재판정 신청서가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추가서류는 근로능력판정 구비서류(p.90~91)에 한함

- (3) 국민연금공단에서 재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당초 근로능력평가에 참여했던 직원 및 자문위원을 배제하고 평가 진행
- 공단은 재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재평가 접수일로부터 21일 이내(서류 보완 등에 따른 기간은 제외)에 시·군·구에 통보
- (4) 시·군·구는 국민연금공단에서 통보 받은 재평가 결과를 토대로 근로능력 재판정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통지
- (5) 재판정 결과에 대해서도 수급자가 불복할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8조에 따라 시·도에 이의신청할 수 있음
- (6) 시·도지사의 처분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0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에 이의신청할 수 있음

※ 위의 절차와 별도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제기 가능

【근로능력판정 권리구제 업무처리 흐름도】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제 4 장

근로능력평가

- 4-1. 근로능력평가 개요
- 4-2. 의학적 평가
- 4-3. 활동능력 평가

4-1 근로능력평가 개요

1 근로능력평가 대상

(1)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는 18세 이상 64세 이하의 수급자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의료급여법 제3조 제1항 제3호부터 8호에 의한 수급권자(의사상자, 국가유공자, 무형문화재, 북한이탈주민,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중 ‘근로능력 없는 수급자’(p.75)에 해당하지 않는 자

(2) 위 수급자 중에서 질병, 부상 또는 그 후유증으로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사람 중에서 근로능력이 없다는 판정을 받고자 근로능력평가 신청서,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진료기록지 사본 등을 시·군·구에 제출한 사람

2 근로능력평가 항목

(1) 의학적 평가

- 국민연금공단에서 근로능력평가 신청서,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및 진료기록지 사본 등을 검토하여 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의 의학적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대상 질환별로 단계를 결정

(2) 활동능력 평가

- 국민연금공단이 평가대상자에 대한 면담 또는 실태조사 등을 통해 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의 활동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총점 75점)
- 활동능력 평가는 의학적 평가 결과가 1~2단계에 해당하는 평가대상자에 대하여 실시
- 활동능력 간이평가 결과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능력 없음’ 적용
 - 신체능력 평가항목 중 운동기능이 10점 이하이고 만성적 증상이 3점 이하
 - 인지능력 평가항목 점수의 합이 13점 이하

4-2 의학적 평가

1 의학적 평가의 목적

- 근로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질환이나 장애 정도를 평가

2 의학적 평가의 적용범위 및 평가대상 질환

(1) 적용범위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및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및 수급자에 대해 근로능력 판정을 위한 의학적 평가를 하는 때에 적용함

(2) 평가대상 질환

- 근골격계, 신경기능계, 정신신경계, 감각기능계, 심혈관계, 호흡기계, 소화기계, 비뇨생식계, 내분비계, 혈액 및 종양질환계, 피부질환계 등 11개 질환군

3 평가방법

(1) 질병·부상 고착 평가

- 질병이나 부상의 의학적 상태가 2년 이상 호전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고착으로 평가
 - 의학적 상태의 호전 가능성에 대한 판단은 질병 또는 부상의 특성, 중증도, 치료 경과, 치료의 종결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2) 평가대상 질환별 단계는 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의 의학적 평가기준 (질환별 평가기준)에 따라 결정

- (3) 동일한 평가대상 질환 내에서는 1개의 질병만을 평가하며, 각기 다른 평가대상 질환별 질병이 2종류 이상 있는 경우 평가대상자의 근로수행능력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2개의 질병에 대해서만 평가 실시

● 다만, 다음의 평가대상 질환유형 내의 질병의 경우에는 별도 대상으로 보아 평가 가능

- 근골격계 질환유형 내 <상·하지> 및 <척추>
- 감각기능계 질환유형 내 <청각>, <평형> 및 <시각>
- 소화기계 질환유형 내 <간질환> 및 <위장질환>
- 피부질환계 질환유형 내 <피부질환> 및 <외모 및 결손질환>

- (4) 11개 평가대상 질환에 속하지 아니하더라도 질병이나 부상이 근로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쳐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아래 평가 기준을 기초로 해당 질병이나 환자의 상태와 가장 근접한 평가대상 질환 중 한 개를 선택하여 그 단계를 평가할 수 있음

단 계	평 가 기 준
1단계	근로수행능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질병이나 장애로 인한 증상이 있어 주기적인 치료 또는 관찰이 필요한 경우 근로수행능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질병이나 장애가 있어 주기적인 치료중인 경우
2단계	근로수행능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질병이나 장애가 있어 지속적인 치료중이나 증상이 존재하는 경우
3단계	근로수행능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질병이나 장애가 있어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근로수행능력에 제한이 따르는 경우
4단계	근로수행능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질병이나 장애가 있어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근로수행능력에 상당한 제한이 따르는 경우

※ 적용원칙 이외에 질병이나 부상이 근로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쳐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상기 기준을 기초로 그 단계를 평가 할 수 있음

- (5) 국민연금공단은 의학적 평가 과정에서 지자체에서 의뢰된 평가대상 질환이나 질병 등과 다르게 평가할 필요가 있을 경우 다른 평가대상 질환 및 질병 등으로 평가할 수 있음

- (6) 평가대상 질병의 정도가 미약한 경우에는 “단계외”로 평가함

4 평가 결과 합산

- 2종류의 질병이 있는 경우 2종류의 질병 중 단계가 높은 질병의 단계보다 1단계 상향 평가

5 의학적 평가 자문위원 활용

- (1) 국민연금공단은 평가대상 질환의 상태 및 의학적 단계 결정, 질병·부상 고착 평가, 직접진단 등을 위해 의학적 평가 자문위원을 구성·활용 가능
- (2) 제출된 근로능력평가 신청서,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진료기록지 사본 등을 통해 정확한 의학적 평가가 어려울 경우 자문위원으로 하여금 직접진단 가능
- (3) 의학적 평가 시 다음 사항에 대한 보다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자문회의를 구성하여 운영 가능
 - 의학적 평가기준의 문리적 해석만으로 의학적 평가 단계 결정을 하기 어려운 사항
 - 질병의 특성, 다른 질병과의 형평성 및 복합질환 등을 고려해야 하는 사항
 - 그 밖에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의학적 평가와 관련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6 자료보완 및 직접진단

- (1) 자료보완
 - 국민연금공단은 근로능력평가를 위해 전송된 서류를 최대한 이용하되, 심사 과정에서 자료가 불충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군·구에 자료보완 요청 가능
 - 자료보완 시 주요 요청자료
 - 환자병력 및 진료내역이 기록되어 있는 진료기록지 등
 - 혈액검사 등 각종 검사결과지
 - 초음파, CT 등 영상 자료
 - 기타 의학적 평가 관련 단계를 결정하기 위한 자료

- 자료보완의 처리기한은 원칙적으로 15일 이내로 하되, 자료의 성질, 확보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국민연금공단에서 결정
- 시·군·구 및 평가 대상자가 보완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기재하여 요청
- 보완하는 자료가 의학적 자료임을 감안, 국민연금공단은 시·군·구에 자료보완을 요청함과 동시에 필요한 경우 평가대상자에게 자료보완 내용에 대해 직접 설명
- 검사예약 대기 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제출기한 내에 자료를 보완하기 불가능한 경우에는 시·군·구에서 제출 기한을 연장 처리하고 이를 국민연금공단에 통보
- 동행서비스를 실시한 평가대상자가 거동불편 등으로 보완자료 제출이 곤란한 경우 평가대상자의 동의 및 위임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은 진료기록지 등 평가자료 발급대행 서비스 제공 가능
- 보완요청 자료 접수 및 미제출시 처리 방법
 - 자료보완 제출기한이 만료되었으나 보완이 되지 않은 경우 국민연금공단은 기한을 정하여 다시 보완을 시·군·구로 요청
 - 2회의 자료보완 요청(제출촉구 포함)에도 불구하고 자료의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은 때에는 평가 의뢰를 반려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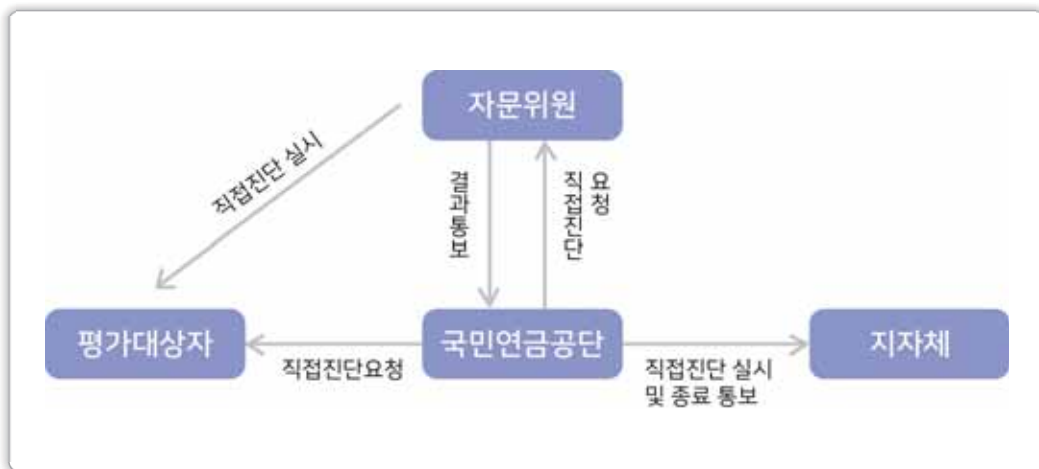
(2) 직접진단

- 국민연금공단은 제출된 서류만으로 정확한 의학적 평가가 어려울 경우 국민연금 공단이 정한 자문위원으로 하여금 직접진단을 시행할 수 있음
- 직접진단 대상
 -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에 기재된 질병 상태와 진료기록지 등의 상태가 서로 다른 경우
 - 자문회의에서 직접진단 평가를 요구하는 경우 등
- 심사과정에서 직접진단이 결정되면 국민연금공단은 이를 시·군·구에 통보하고, 평가 대상자에게 직접진단 대상자로 결정되었음을 안내
 - 국민연금공단은 직접진단 평가의 일시, 장소를 평가대상자 및 시·군·구에 통지

● 직접진단의 실시

- 국민연금공단은 직접진단을 위해 필요시 시·군·구(읍·면·동)에 협조를 요청
- 국민연금공단은 자문위원이 직접진단 평가대상자를 대면하여 질병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
- 직접진단 완료시 이를 시·군·구에 통보
- 직접진단 평가를 2회 이상 불응한 경우에는 평가의뢰를 반려할 수 있음

【직접진단 업무처리 흐름도】



4-3 활동능력 평가

1 활동능력 평가의 목적

- 근로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능력 정도를 평가하기 위함

2 활동능력 평가의 적용범위 및 평가항목

(1) 적용범위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및 수급자에 대해 근로능력판정을 위한 활동능력 평가를 하는 때에 적용함

(2) 평가항목

- 팔뻗기, 쏘그려 앉기, 평지이동, 층간이동, 물건 들고 옮기기, 입·통원, 약복용, 건강 관리, 자기관리, 의사소통, 감정조절, 대처능력, 공간지각력, 음주문제, 자격증 보유, 근로경험, 의지력, 연령, 학습능력 등 19개 항목

【활동능력 평가 항목별 정의】

구 분		평 가 항 목	정 의
신체능력 (간이평가 항목)	운동기능	1. 팔뻗기	상지부위를 구성하는 '세 개의 관절인 어깨(shoulder), 팔꿈치(elbow), 손목(wrist)'의 기능과 관절, 그리고 손가락(thumb & finger)의 기능을 종합적으로 평가
		2. 쏘그려 앉기	하지부위를 구성하는 '세 개의 관절인 고관절(hip), 무릎(knee), 발목(ankle)의 기능과 근력'을 종합적으로 평가
		3. 평지이동	얼마나 오래 외출이 가능한지에 대한 평가

구 분		평 가 항 목	정 의
		4. 층간이동	계단을 오르내리는 데 있어 전반적인 어려움 정도를 평가
		5. 물건 들고 옮기기	자신의 한 손 또는 양손을 사용하여 물건을 다루고, 집고, 조작하고 풀어놓을 수 있는 정도를 평가
	만성적 증상	6. 입·통원	최근 1년 내 병원진료여부 및 기간을 질문하며 면접평가 시 증빙서류를 요청하여 평가
		7. 약복용	평가일 기준 1일전부터 1주간의 약복용 횟수를 질문하며 면접평가 시 증빙서류를 요청하여 평가
인지능력 (간이평가 항목)	자립성	8. 건강관리	자기 스스로 현재 앓고 있는 질병을 포함해 전반적인 건강관리를 잘 하고 있는 정도를 평가
		9. 자기관리	자기 스스로 상황·환경·계절변화에 적합한 용모 및 복장을 관리할 수 있는 정도를 평가
	사회성	10. 의사소통	일상생활에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고 자신의 이야기를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
		11. 감정조절	기분 나쁜 상황에서도 부정적인 감정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
		12. 대처능력	현재 자신이 처해 있는 문제나 상황에 대한 인식이 있고 이를 잘 대처하기 위해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고 실행할 수 있는 정도를 평가
		13. 공간지각력	자신의 위치를 파악하거나 다른 대상들이 자신을 중심으로 어디에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
음주	음주문제	14. 음주문제	음주문제로 인해 근로활동을 비롯한 일상생활에 방해가 되는 정도를 평가
영향요인	자격증	15. 자격증보유	취득한 자격증의 소지 유무 및 개수로 평가
	근로경험	16. 근로경험	최근 1년 내에 근로경험 유무를 평가
	구직동기	17. 의지력	실직이나 미취업상태에 있는 개인이 직업 또는 직장을 찾기 위해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을 다스리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실행하는 능력을 평가
	연령	18. 연령	활동능력평가 조사표상의 연령(만 나이)로 확인하여 평가
	학습능력	19. 학습능력	세 가지 기능(읽기, 쓰기, 사칙연산)가능성 정도로 평가 대상자의 기초학습 활용 능력을 확인하여 평가

3 평가방법

- (1) 평가는 간이평가 → 전체평가 순서로 하되, 평가항목별 기준에 따름
- (2) 면접평가를 원칙으로 평가를 실시하되 관찰평가, 상황평가의 결과를 종합하여 평가 항목별 기준에 따른 점수를 부여

구 분	평 가 방 법
면접평가	평가항목의 구체적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대상자와의 질의응답을 통해 평가
관찰평가	평가장소에서 평가대상자의 행동, 언행, 태도 등의 관찰을 통해 평가
상황평가	초기 상담 과정에서 획득하거나 또는 주변 사람으로부터 얻은 주거 현황, 건강 상태, 가족과의 관계 등 상황정보에 근거하여 평가

(3) 평가척도

- 각 평가항목의 평가기준별로 점수를 부여하고 최종적으로 19개 항목의 점수를 합산하여 평가
- 「4. 평가 항목별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되 개별항목에 대한 세부 평가방법은 공단이 정한다.

4 평가 항목별 평가기준

구분		정의	평가항목		점수구성
신체 능력 (간이 평가 항목)	① 운동기능	일상생활에서 신체적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	1	팔뻗기	1점 ~ 4점
			2	쫓그려 앉기	1점 ~ 4점
			3	평지이동	1점 ~ 4점
			4	층간이동	1점 ~ 4점
			5	물건 들고 옮기기	1점 ~ 4점
	② 만성적 증상	판정 신청한 질환 외 보유 중인 만성질환 여부 및 상태	6	입·통원	1점 ~ 5점
			7	약복용	1점 ~ 5점
인지 능력 (간이 평가 항목)	③ 자립성	건강한 심신의 유지 및 자기관리 할 수 있는 능력	8	건강관리	1점 ~ 5점
			9	자기관리	1점 ~ 5점
	④ 사회성	타인과 어울려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	10	의사소통	1점 ~ 5점
			11	감정조절	1점 ~ 5점
			12	대처능력	1점 ~ 5점
			13	공간지각력	1점 ~ 5점
음주	⑤ 음주문제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사회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상태	14	음주문제	1점 ~ 3점
영향 요인	⑥ 자격증	노동시장 취업을 위한 관련 자격증 보유 여부	15	자격증 보유	1점 ~ 2점
	⑦ 근로경험	취업 이력을 통한 근로활동 가능 여부	16	근로 경험	1점 ~ 2점
	⑧ 구직동기	전반적인 평가과정에서 보이는 성실성 및 책임감 정도	17	의지력	0점 ~ 2점
	⑨ 연령	연령에 따른 취업가능 여부	18	연령	1점 ~ 3점
	⑩ 학습능력	학습능력에 따른 취업가능 여부	19	학습능력	1점 ~ 3점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제 5 장

근로능력평가 지원제도

5-1. 동행서비스

5-2. 평가자료 발급대행 서비스

5-3. 자료보완 비용지원 서비스

5-1 동행서비스

1 동행서비스 내용

(1) 읍·면·동 담당직원이 거동이 불편하거나 정신질환·알코올 문제 등으로 근로능력 평가용 진단서 발급이 어려운 평가대상자와 동행하여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발급을 지원하는 서비스

(2) 공단은 동행서비스가 원활히 제공될 수 있도록 물적·인적 자원 지원

※ 동행서비스 제공 주체는 지자체이며, 공단은 적극적으로 지원업무 수행

2 동행서비스 대상자

- (1) 질병, 부상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사람
- (2) 정신질환, 알코올의존 등으로 진단 및 치료 등이 어려운 사람

3 동행서비스 제공방법

(1) 본인, 친족 및 기타 관계인이 읍·면·동에 동행서비스 신청

- 본인이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본인이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신청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가 신청 대행 가능
- 읍·면·동이 직권으로 동행서비스 제공 가능

※ 동행서비스는 반드시 본인이 동의해야 가능함

(2) 지자체에서는 동행서비스 신청서 접수 후 동행서비스 대상자인지를 확인하고, 동행서비스 대상으로 결정시 행복e음에 등록

- 서비스 대상자, 내용, 시간, 방문 장소 등을 확정
-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 알코올 상담센터 등에 협조 요청하여 원활하게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준비
- 동행서비스 제공에 지원이 필요한 경우 국민연금공단과 사전 지원내용, 장소, 시간 등의 협의 후 지원요청 가능

5-2 평가자료 발급대행 서비스

1 발급대행 서비스 내용

- 자료보완 요청된 평가 자료에 대해 평가대상자의 동의 및 위임에 의해 국민연금공단이 대리인의 위치에서 직접 평가대상자의 진료기록 사본을 확보하는 서비스임

2 평가자료 발급대행 대상자

- 질병, 부상 등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발급이 어려워 동행 서비스를 받은 사람으로서 자료보완 요구된 사람

3 평가자료 발급대행 방법

- (1) 원칙적으로 자료보완은 평가대상자 본인이 자료를 확보하여 제출하며, 예외적으로 동행서비스 실시한 사람 중 자료보완 요구된 사람을 대상으로 평가자료 발급대행 서비스 제공
- (2) 신청인이 거동불편 등으로 보완요구자료 제출이 곤란하여 시·군·구(읍·면·동)나 국민연금공단(지사)에 평가자료 발급대행 서비스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지사업무 여건 등을 감안하여 서비스를 제공
- (3) 평가자료 발급대행 서비스는 국민연금공단이 개별 법령에 의해 실시하는 제도가 아니라 의료법상의 대리인 규정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지자체에서도 대리인의 발급 요건만 구비하면 평가자료 발급대행 가능
 - 다만, 발급비용 발생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고려
 - 평가자료 발급대행 서비스 근거 : 의료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제13조의3(기록 열람 등의 요건) ② 법 제21조제3항제2호에 따라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이나 그 사본의 발급을 요청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기록열람이나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 환자가 자필 서명한 별지 제9호의2서식의 동의서 및 별지 제9호의3서식의 위임장
3. 환자의 신분증 사본 * 동의서(2018.9.27. 개정), 위임장(2017.6.21. 개정)

(4) 평가자료 발급대행 서비스 제공 방법(국민연금공단)

- 의료기관 등에 진료기록 등 요청에 관한 공문 및 서류발송
- 우편/팩스 또는 출장을 통한 발급대행으로 관련 평가자료를 확보하여 국민연금공단 의학적 평가 관할지에 제출

4 평가자료 발급대행 대상 자료

- (1) 병력 및 진료내역 등이 기록되어 있는 진료기록지 등
- (2) 혈액검사 등 각종 검사결과지
- (3) 초음파, CT 등 방사선 사진 등 영상 자료

※ 진단서, 소견서는 본인에게 직접 발급되어야 하므로 제외

5 평가자료 발급대행 신청 및 제공

- 평가자료 발급대행 서비스를 신청하려면 다음 서류를 국민연금공단(지사)에 제출
 - 진료기록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 진료기록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
 - 신분증 사본

5-3 자료보완 비용지원 서비스

1 자료보완 비용지원 서비스 내용

- 국민연금공단에서 자료보완(직접진단 대상자 포함)을 요청하고, 그 자료보완을 위해 추가로 진단비, 검사비 및 발급비용 등이 소요된 경우 국민연금공단에서 해당 비용을 지원하는 서비스

2 자료보완 비용지원 대상자

- 근로능력평가를 신청하여 국민연금공단에서 요청한 자료보완에 대해 발급 비용을 지출한 대상자 중 비용지원을 희망하는 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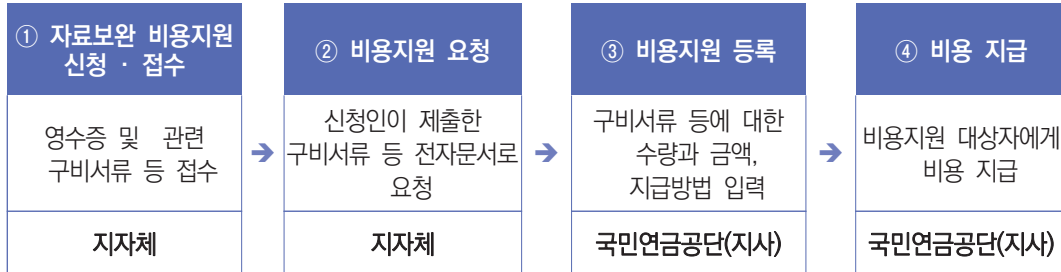
3 자료보완 비용지원 기준

(1) 지원한도

- 1인당 연간 10만원 한도에서 자료보완에 소요된 총비용 지원 가능
 - 국민연금공단의 자료보완비용지원액 상한선은 회계연도 기준(1.1~12.31)으로 적용하고, 초과분은 본인 부담

- (2)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배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며, 배정예산이 소진되는 경우 당해 연도 지원 불가(단, 다음연도 예산 배정시 지원 가능)

4 자료보완 비용지원 절차



5 업무처리 방법

(1) 시·군·구에서는 자료보완 비용지원과 관련된 필수 및 추가 구비서류 등 징구·보관 후 국민연금공단(지사)으로 전자문서 요청

(2) 세부 업무처리 방법

● (신청인 범위) 평가 대상자 본인

※ 전달문서(사자청구)인 경우 본인의사 유선확인 필요. 단, '신용불량 증빙자료'가 없는 신용불량자는 평가대상자 본인이 직접 내방하는 경우만 신청 가능

● (지급가능 계좌 범위) 평가 대상자의 본인명의 계좌

- 단, 평가 대상자 본인이 미성년자 또는 신용불량자로 본인명의 계좌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는 가족 계좌* 및 주민센터 계좌**로 지급가능

* (가족명의 계좌 범위) 평가 대상자의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조부모, 부모, 자녀, 손자녀),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

** 근로능력평가 자료보완 비용지원 서비스 업무지침 개선 안내[자립지원과-3265(2021.7.9.)]

● 필수구비서류

■ (공통) 완납된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원본, 진료비 세부 내역서*, 거래처등록내역서**

* 신청금액이 1만원 이하인 경우 '진료비 세부 내역서' 제출 생략 가능[근로능력평가부-377(2020.9.11.)]

** 주민센터 계좌 신청 시 주민센터 고유번호증 및 통장사본으로 갈음

지자체에 「거래처 등록 내역서」양식 배포함 [자립지원과-3265호(2021. 7. 9.)]

■ 가족 계좌 이용 시 추가 구비서류

- (미성년자) 가족관계증빙서류 등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신용불량자) 가족관계증빙서류 등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신용불량 증빙자료(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지자체 공문서*로 확인)

* 공문서 포함 사항 : 신청인(=평가대상자), 지급계좌번호, 은행명, 예금주명, 예금주 연락처, 평가대상자와 예금주의 관계, 타인명의 계좌 지급 신청사유 등

■ 주민센터 계좌 이용 시 추가 구비서류

- 주민센터 계좌 이용신청서, 가족관계를 확인(가족이 없음)할 수 있는 서류, 주민센터 고유번호증(최초 1회), 주민센터 통장사본(최초 1회), 신용불량 증빙자료(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지자체 공문서로 확인) 및 비용지원 현금수령증

● (서류확인)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 및 영수증 등 확인

- 영수증에는 발급기관, 발급대상자 인적사항, 발급내역(서류명, 수량, 금액 등), 발급일자, 기관 직인 등이 반드시 표출되어야 함

● (발송방법) 자료보완 서류는 기존과 동일하게 행복e음에 스캔하여 등록 후 국민연금 공단에 전송하며,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및 CD자료 등은 등기우편 발송

● (유의사항)

- 비용지원은 연간 1인당 10만원 한도에서 이루어지고, 국민연금공단의 예산이 조기 소진되는 경우 비용지원이 어려움을 보완자료를 제출받은 때 반드시 신청인에게 안내
- 주민센터 계좌 이용시 신청자에게 현금 지급 후 비용지원 현금수령증 보관

제 6 장

서 식

- 6-1. 근로능력평가 신청서
- 6-2. 자료보완 안내문
- 6-3. 동행서비스 신청서
- 6-4. 근로능력판정 결과서
- 6-5. 기타(관련 법령 서식)
 - 6-5-1.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 6-5-2. 근로능력 재판정 신청서
 - 6-5-3.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 6-5-4.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

6-1 근로능력평가 신청서(개정 서식)

■ 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 서식]

근로능력평가 신청서

(앞 쪽)

신청인 (본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대리인	성명	생년월일
	신청인과의 관계 대리신청 사유	연락처 신청인의 동의 확인 여부(담당 공무원이 기재) 동의 [] 미동의 []
의학적 평가 신청 질병명	① ※ 유효한 장애유형 또는 영구고착 질환 (담당 공무원이 기재) []	② ※ 유효한 장애유형 또는 영구고착 질환 (담당 공무원이 기재) []
	※ 유효한 장애유형 또는 영구고착 질환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 ① 유효한 장애유형은 장애인등록 심사자료를 활용한 의학적 평가를 희망하고 동의하는 경우 신청, ② 영구고착 질환은 기존 평가결과 활용을 희망하고 동의하는 경우 신청	
영상자료(CD 또는 X-ray 필름) 첨부 여부		제출 [] 미제출 []

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4조제1·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근로능력평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또는 대리인) (서명 또는 날인)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해당란에 ☒ 체크)

근로능력평가는 국민연금공단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본 동의서는 신청인의 근로능력평가 제출서류를 간소화하기 위함입니다.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1. 개인정보 이용자	국민연금공단
2. 개인정보 이용목적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7조제2항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3조제3항에 따른 근로능력평가
3. 이용되는 개인정보 항목	① 성명, 생년월일 □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 심사 자료 및 결과 ② □ 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제7조) 또는 의료급여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영구고착 질환 평가 자료 및 결과
4.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신규평가, 재평가, 정기평가, 직권평가, 권리구제 완료일까지
5. 수집·이용 동의 여부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위 개인정보 이용 동의는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신청인(본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받은 동의서는 국민연금공단이 받은 것으로 갈음합니다.

☞ 본인은 본 동의서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였으며,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하여 위와 같이 동의합니다.

성명 (서명 또는 인)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근로능력평가 대상 여부 등)

■ 근로능력이 없는 대상자(근로능력평가 비대상)

-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 장애인
- 만 18세 미만, 만 65세 이상
- 20세 미만의 중·고교 재학생
- 노인장기요양 1~5등급 판정자
- 상이등급 1~3급 해당자
- 희귀·중증난치질환 및 중증질환자 중 산정특례 등록자

※ 근로능력평가 대상이 아님에도 평가를 의뢰하는 경우 사유를 기재해 주십시오.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등록된 대상자에 대한 근로능력평가 유예(모든 조건 충족 시 평가유예하고 직전 평가와 동일하게 유효기간 설정)

- ① 직전 근로능력평가에서 장애유형과 상응하는 질환유형으로 평가하여 의학적 평가 결과가 2~4단계이면서 근로능력 없음으로 판정
- ②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해당 등록 장애유형 유지

■ 영구고착 질환의 근로능력평가 유예

직전 의학적 평가 결과가 영구고착 질환만으로 3~4단계인 경우에는 근로능력평가를 유예하고, 직전 평가와 동일하게 유효기간을 설정

■ 국민연금공단의 유효한 장애인등록 심사이력 또는 영구고착 질환 평가 이력이 있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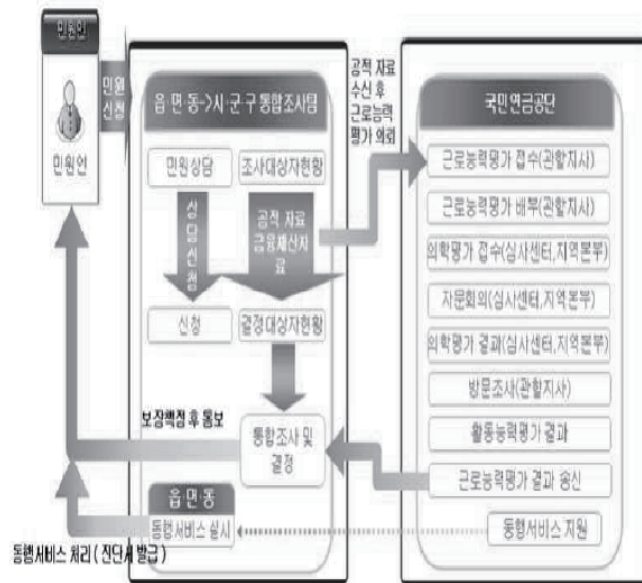
평가 제출서류 간소화를 희망하는 대상은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 <근로능력평가 질환유형과
상응하는 장애인등록 장애유형>**

근로능력평가 질환유형	장애인등록 장애유형
	절단장애 관절장애 기능장애 척추장애 변형장애 뇌혈변장애 뇌전증장애
신경기능계	지체장애 기능장애
정신신경계	언어장애 정신장애 시각장애
감각기능계	청각장애 정형기능장애 평형기능장애
심혈관계	심장장애
호흡기계	호흡기장애
소화기계	간장애 장루·요루장애
비뇨생식계	신장장애 장루·요루장애
내분비계	-
혈액 및 종양질환계	-
피부질환계	안면장애



6-2

자료보완 안내문

자료보완 안내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요청번호			
귀하께서 제출하신 자료로 근로능력평가 중이나 질병상태 확인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자료보완을 요청하오니 년 월 일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보완 요청사항 - 1. 2.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 진료 및 검사예약 지연 등으로 부득이 기한 내에 자료보완 제출이 어려운 때에는 읍·면·동 주민센터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6-3

동행서비스 신청서

(앞 면)

동행서비스 신청서				
동행서비스 대 상 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 화	☐ 자택 : ☐ 휴대전화 :		
동행서비스 신 청 인	☐ 성 명 : ☐ 주 소 : ☐ 전화번호 :			
	※ 대리인 신청인 경우(가구의 가구원, 친척 등) ☐ 대상자와의 관계 :			
동행서비스 사 유	☐ 정신질환 ☐ 알코올중독 의심 ☐ 거동불편 ☐ 기타()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발급이 어려운 상기 대상자에 대하여 동행서비스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_____ (인) _____ 특별자치도·특별자치시·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기타 사항	※ 동행서비스시 진료·진찰 및 진단서 발급에 소요되는 비용은 근로능력평가 대상자 본인이 부담합니다. ※ 대리인이 동행서비스를 신청하는 경우 대상자 본인의 동의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제6장

서
식

6-4 근로능력판정 결과서

■ 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4호 서식]

근로능력판정 결과서

성명		생년월일	
주소			
요청번호			
근로능력판정 내용			
판정 결과	근로능력있음, 자활사업 대상자입니다 근로능력없음, 별도 조건없이 수급자격 유지대상자입니다. 유효기간(,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7조·의료급여법 시행령 제3조 및 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근로능력판정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직인

유의사항

- 귀하는 판정결과에 대하여 근로능력판정 결과서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특별자치도·시·군·구청의 장에게 이의신청(재판정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재판정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근로능력 재판정 신청서
 2. 진료기록부 사본(당초 근로능력평가를 위해 제출했던 진료기록부 사본 외에 주장하는 내용에 대하여 증빙하는 자료 이어야 함)
 3. 기타 주장하는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또한 이와는 별도로 근로능력판정 결과서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6-5 기타(관련 법령 서식)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9. 10. 23.>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앞쪽)

진 단 대상자	성 명 주 소	성 별	생년월일 전화번호
진 단 질환명	평가대상 질환유형 ① 근골격계(상·하지) 한 ② 근골격계(척추) 한 ③ 신경기능계 한 ④ 정신신경계 ⑤ 감각기능계(청각) ⑥ 감각기능계(평형) ⑦ 감각기능계(시각) ⑧ 심혈관계 ⑨ 호흡기계 ⑩ 소화기계(간질환) ⑪ 소화기계(위장질환) ⑫ 비뇨생식계 ⑬ 내분비계 ⑭ 혈액 및 종양질환계 ⑮ 피부질환계(피부질환) ⑯ 피부질환계(외모·결손질환) ※ 근로수행에 영향을 미칠만한 가장 중한 질환유형을 2개까지 기재할 수 있으나 같은 질환유형은 1개만 선택하여 기재하고, 질환유형별로 이에 해당하는 상세 질병명은 1개만 선택하여 기재합니다. ※ 위의 질환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장 근접한 질환유형을 선택하여 기재합니다. ※ 한 표시는 한의사도 진단서 발급이 가능한 질환유형을 의미합니다.		
	구분	질환유형 (1)	질환유형 (2)
	질환유형 (①-⑯ 중 선택)		
	상세 질병명		
	KCD 분류번호		
	발생일 / 진단일 (해당기관의 진료기간)	(. . . . /) (. . . . ~)	(. . . . /) (. . . . ~)
근로능력 평가내용	주요 증상 및 검사소견		
	치료·투약내용 기타 특이사항	(구체적인 치료내용, 약물명, 용량, 복용기간 등을 작성합니다) (구체적인 치료내용, 약물명, 용량, 복용기간 등을 작성합니다)	
	향후 치료계획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① 관찰 필요 [] ② 통원치료나 약물치료 필요 [] ③ 적극적인 입원이나 수술 필요 [] ④ 그 밖의 사항 [내용 기재:]	
		① 관찰 필요 [] ② 통원치료나 약물치료 필요 [] ③ 적극적인 입원이나 수술 필요 [] ④ 그 밖의 사항 [내용 기재:]	
발급기관	의료기관명	전문과목	
	주소	전화번호	
	면허번호 (전문직 자격번호)	성 명	(서명 또는 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의료기관

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

제6장

서
식

(뒤쪽)

유 의 사 항

1. 진단 및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발행 시 진단받는 사람이 본인임을 확인해야 합니다.
2. 진단 대상자란의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3. 진단대상자란 및 근로능력 평가내용란을 투명테이프 처리하여 발급하되, 부득이한 경우 봉투의 봉합부분에 의료기관의 간인을 찍습니다.
4. 근로능력 평가내용란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7조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의학적 평가기준에 따라 기재하고, 진단한 질병과 관련된 주요 증상 및 발현 횟수, 검사명 및 검사조건, 치료 및 투약내용, 그 밖의 특이사항 등을 상세히 기재해야 합니다.
5.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에 기재한 상세 질병명과 주요 증상, 치료 및 투약내용 등은 진료기록지의 내용과 일치해야 합니다.
6. 직인이 없는 병원은 직인란에 의사의 개인 도장을 날인하거나 의사의 서명으로 갈음합니다.
7. 앞쪽에 기재된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와 관련된 사항을 사후에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제출서류

※ 제출구분이"필수"인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구분이"선택"인 경우에는 해당하는 질환유형별로 해당 자료가 있으면 제출합니다.

제출 구분	질환 유형	구 분	해당 자료
필수	공 통	진료 기록지 등	- 최근 2개월 간 진료기록지
선택	공 통	약물 처방지 등	- 최근 2개월 간 투약내역이 있는 경우 약물처방지(약물명, 용량, 투여일수 등) - 평가 부위와 관련된 수술이력 또는 최근 1년 이내 입원치료 이력이 있는 경우 입원·퇴원 요약지
		진료 기록지 등	- 상세 치료기록지(물리치료, 신경치단술 등), 재활평가자료 ※ 절단으로 인해 최근 진료기록이 없는 경우에는 영상자료(X-ray)로 대체 가능합니다.
	근골격계	검사자료	- 해당 부위의 영상자료(CT, X-ray, MRI 등) - 수동관절기능 제한(각도)에 대한 검사 결과 - 신경손상(마비)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검사(도수근력, 근전도 등) 결과
		진료 기록지 등	- 신규: 초진 당시 입원·퇴원 기록지, 가장 최근 시행한 재활평가자료 - 정기평가: 가장 최근 시행한 재활평가자료 - 뇌전증(발작이 없는 경우): 최근 2개월 간 진료기록지 및 약물처방지 - 뇌전증(발작이 있는 경우): 최근 1년 간 진료기록지 및 최근 2개월 간 약물처방지 ※ 소아마비, 뇌성마비로 인해 최근 진료기록이 없는 경우에는 소견서로 대체 가능합니다.
	신경 기능계	검사자료	- 뇌·척수 영상자료(CT 또는 MRI) 또는 판독지 - 신경손상(마비)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검사(도수근력, 근전도 등) 결과
		진료 기록지	- 신규: 초진 당시 진료기록지 ※ 정신신경계 질환은 3개월 이상 충분한 치료에도 증상이 지속되면 진단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 선천성 인지기능 저하로 인해 최근 진료기록이 없는 경우에는 소견서로 대체 가능합니다.
	정신 신경계	검사자료	- 임상심리평가보고서, 가장 최근 시행한 인지기능 검사(MMSE, GDS, CDR 등) 결과
		진료기록 및 검사 자료	- 청각 : 가장 최근 시행한 순음청력검사 및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 결과지 등 - 평형 : 가장 최근 시행한 전정기능검사 결과지 - 시각(질환별 검사자료) · 당뇨망막병증, 황반변성, 망막색소변성, 망막박리, 망막혈관폐쇄 등: 최대교정시력, 가장 최근 시행한 안저사진, M-OCT(황반부안구광학단층촬영), 시야검사결과지(망막색소변성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녹내장: 최대교정시력, 가장 최근 시행한 안저사진, R-OCT(시신경섬유층두께검사), 시야검사결과지 · 각막혼탁: 전안부 천연색 사진
	감각 기능계	검사자료	- 심전도 검사 결과(그래프를 포함합니다) - 각종 검사(관상동맥조영술, 관상동맥 CT, 심장초음파) 판독지 - 관상동맥중재술 시술 또는 수술기록지(신규평가 시 제출했던 결과지는 정기평가 시 생략할 수 있으나, 제출 이후 검사를 추가로 시행한 경우에는 해당 검사자료를 제출합니다)
		심혈관계	- 가장 최근 시행한 폐기능검사 결과지(그래프 포함), 흉부영상자료(X-ray)
	호흡기계	검사자료	- 가장 최근 시행한 혈액검사(간기능검사 등) 결과지, 복부 초음파 및 CT 판독지, 위내시경검사 결과지
		소화기계	- 가장 최근 2회 이상 시행한 혈중 혈청크레아티닌 검사(최근 2개월 이내 시행한 검사를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결과지 - 최근 2개월 이내 시행한 소변검사 결과지
	비뇨생식계	검사자료	- 가장 최근 시행한 혈액검사 결과지
	내분비계	검사자료	- 가장 최근 시행한 혈액검사 결과지
	혈액 및 중앙정환계	검사자료	- 가장 최근 시행한 혈액검사 결과지, 영상자료(CT 또는 MRI) 판독지
	피부질환계	검사자료	- 일반 천연색 사진(해당 부위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으로, 촬영날짜를 기재합니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신설 2012.8.2〉

근로능력 재판정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처분은 받은 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아래 대리인란은 신청인(처분을 받은 자) 외의 자가 신청하는 경우만 작성합니다.			
대리인	성명	신청인과의 관계	
	주소	전화번호	
처분의 요지	(여백 부족 시 별지 사용)		
처분이 있는(도달한) 날	년	월	일
재판정신청의 취지와 이유	(여백 부족 시 별지 사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재판정을 신청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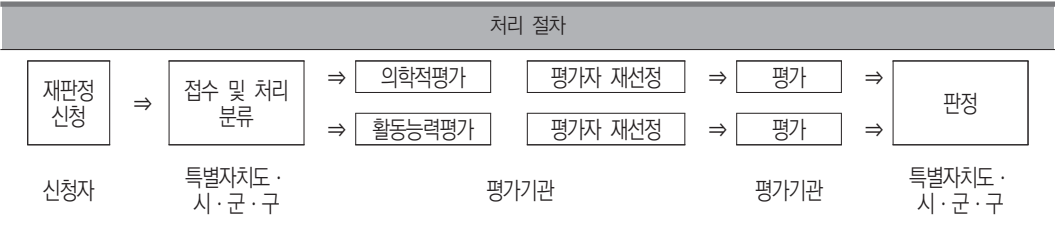
년 월 일

신청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진료기록부 사본 2. 주장하는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 80g/㎡]

■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의2서식] <개정 2018. 9. 27.>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환자 본인	성 명	연락처
	생년월일	
	주 소	
신청인	성 명	환자와의 관계
	생년월일	연락처
	주 소	
열람 및 사본 발급 범위	의료기관 명칭	
	진료기간	
	발급 사유	
	발급 범위 (환자 본인이 직접 작성합니다)	
	예시) 진료기록부 사본, 처방전 사본, 수술기록 사본, 검사내용 및 검사 소견기록의 사본, 방사선 사진 (영상물 포함), 간호기록부 사본, 조산기록부 사본, 진단서 사본,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사본 등	

본인(또는 법정대리인)은 위에 적은 신청인()이 「의료법」 제2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3에 따라 본인의 진료기록 등을 열람하거나 사본을 발급받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본인(또는 법정대리인) (자필서명)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의3서식] (개정 2017. 6. 21.)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

수임인	성 명	전 화 번 호
	생년월일(외국인등록번호)	위임인과의 관계
	주 소	
위임인	성 명	전 화 번 호
	생년월일(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위임인은 「의료법」 제2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3에 따라 「진료기록 등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에 기재된 사항에 대하여 일체 권한을 상기 수임인에게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인

(자필서명)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제 7 장

부 록

- 7-1. 중증질환 및 희귀·중증난치질환 산정특례 대상 목록
- 7-2. 국민연금공단 전국지사 주소록

7-1

중증질환 및 희귀·중증난치질환 산정특례 대상 목록

1. 의료급여 희귀질환자 및 중증난치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1)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별표2]

구 분	대 상
1	만성신부전증의 경우
	가. 혈액투석을 실시하는 사람 (V001)
	나. 복막투석을 실시하는 사람 (V003)
2	혈우병(D68.4) (V009)
3	장기이식의 경우
	가. 간이식을 받은 사람 (V013)
	나. 췌장이식을 받은 사람 (V014)
	다. 심장이식을 받은 사람 (V015)
	라. 신장이식을 받은 사람 (V005)
	마. 폐이식을 받은 사람 (V277)
	바. 소장이식을 받은 사람 (V278)
4	아래 상병의 경우
	건강보험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4] “희귀질환자 산정특례 대상”의 구분1, 구분2 및 [별표4의2] “중증난치질환자 산정특례대상”의 구분5의 상병
5	제17조의2제5항에 따라 등록된 극희귀질환자
6	구분 4에 해당되지 않는 희귀질환으로 제17조의2제5항에 따라 등록된 상세불명희귀질환자
7	제17조의2제5항에 따라 등록된 기타염색체이상질환자

(2)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4] “희귀질환자 산정특례 대상”의 구분 1., 2.

구분	상병명	상병 코드	특정 기호
1	혈우병 환자가 항응고인자·동결침전제 등의 약제 및 기타 혈우병 치료를 받은 당일 외래진료 또는 해당 치료 관련 입원 진료		
	유전성 제8인자결핍	D66	V009
	제8인자결핍(기능적 결핍을 동반)	D66	V009
	혈우병 NOS	D66	V009
	A형혈우병	D66	V009
	고전적 혈우병	D66	V009
	유전성 제9인자결핍	D67	V009
	크리스마스병	D67	V009
	제9인자결핍(기능적 결핍을 동반)	D67	V009
	혈장트롬보플라스틴성분결핍	D67	V009
	B형혈우병	D67	V009
	폰빌레브란트병	D68.0	V009
	혈관혈우병(Angiohaemophilia)	D68.0	V009
	혈관결손이 있는 제8인자결핍	D68.0	V009
	혈관혈우병(Vascular haemophilia)	D68.0	V009
	유전성 제11인자결핍	D68.1	V009
	C형혈우병	D68.1	V009
	혈장트롬보플라스틴전구물질결핍	D68.1	V009
	기타 응고인자의 유전성 결핍	D68.2	V009
	선천성 무피브리노겐혈증	D68.2	V009
	AC글로불린결핍	D68.2	V009
	프로악셀레린결핍	D68.2	V009
	제1인자[피브리노겐]의 결핍	D68.2	V009
	제2인자[프로트롬빈]의 결핍	D68.2	V009
	제5인자[불안정]의 결핍	D68.2	V009
	제7인자[안정]의 결핍	D68.2	V009
	제10인자[스튜어트-프라워]의 결핍	D68.2	V009
	제12인자[하게만]의 결핍	D68.2	V009
	제13인자[피브리노겐]의 결핍	D68.2	V009
	이상피브리노겐혈증(선천성)	D68.2	V009
	저프로컨버틴혈증	D68.2	V009
	오우렌병	D68.2	V009

구분	상병명	상병 코드	특정 기호
2	아래의 상병을 갖고 있는 환자가 해당 상병 관련 진료를 받은 당일 외래진료 또는 입원진료		
	크로이츠펔트-야콥병	A81.0	V102
	아급성 해면모양뇌병증	A81.0	V102
	가족성선종성폴립증	D12.6 (M822 0/0)	V281
	포도당-6-인산탈수소효소결핍에 의한 빈혈	D55.0	V163
	잠두중독	D55.0	V163
	G6PD결핍빈혈	D55.0	V163
	해당효소의 장애에 의한 빈혈	D55.2	V164
	용혈성 비구상적혈구성 (유전성) II형 빈혈	D55.2	V164
	헥소카이네이스결핍빈혈	D55.2	V164
	피루브산염카이네이스결핍빈혈	D55.2	V164
	삼탄당인산염이성화효소결핍빈혈	D55.2	V164
	알파지중해빈혈	D56.0	V232
	베타지중해빈혈	D56.1	V232
	쿠올리빈혈	D56.1	V232
	중증 베타지중해빈혈	D56.1	V232
	중간형 지중해빈혈	D56.1	V232
	중증 지중해빈혈	D56.1	V232
	델타-베타지중해빈혈	D56.2	V232
	지중해빈혈 소질	D56.3	V232
	태아헤모글로빈의 유전적 존속	D56.4	V232
	비정형 용혈-요독증후군	D59.3	V219
	발작성 야간헤모글로빈뇨	D59.5	V187
	만성 후천성 순수적혈구무형성	D60.0	V023
	원발성 무형성(순수)적혈구	D61.0	V023
	가족성 저형성빈혈	D61.0	V023
	판코니빈혈	D61.0	V023
	블랙판-다이아몬드증후군	D61.0	V023
	영아 무형성(순수)적혈구	D61.0	V023

구분	상병명	상병 코드	특정 기호
	기형을 동반한 범혈구감소증	D61.0	V023
	체질성 무형성빈혈	D61.0	V023
	선천성 무형성(순수)적혈구	D61.0	V023
	특발성 무형성빈혈	D61.3	V023
	골수형성저하	D61.9	V023
	범골수황폐	D61.9	V023
	저형성빈혈 NOS	D61.9	V023
	선천성 적혈구조혈이상빈혈	D64.4	V220
	이상조혈성 빈혈(선천성)	D64.4	V220
	항인지질증후군	D68.6	V253
	정상적 혈소판결손	D69.1	V106
	베르나르-술리에[거대혈소판]증후군	D69.1	V106
	글란즈만병	D69.1	V106
	그레이혈소판증후군	D69.1	V106
	혈소판무력증(출혈성)(유전성)	D69.1	V106
	혈소판병증	D69.1	V106
	에반스증후군	D69.3	V188
	선천성 무과립구증	D70	V108
	선천성 호중구감소	D70	V108
	영아 유전성 무과립구증	D70	V108
	무과립구증	D70	V108
	무과립구성 안지나	D70	V108
	호중구감소 NOS	D70	V108
	주기성 호중구감소	D70	V108
	코스트만병	D70	V108
	순환성 호중구감소	D70	V108
	호중구감소성 비장비대	D70	V108
	베르너-술츠병	D70	V108
	선천성 이상식작용증	D71	V109
	만성 (소아기) 육아종성 질환	D71	V109
	다형핵호중구의 기능장애	D71	V109

구분	상병명	상병 코드	특정 기호
	진행성 패혈성 육아종증	D71	V109
	세포막수용체복합체[CR3]결손	D71	V109
	혈구탐식성 림프조직구증	D76.1	V110
	가족성 혈구탐식세망증	D76.1	V110
	단핵탐식세포의 조직구증	D76.1	V110
	세망조직구증(거대세포)	D76.3	V110
	심한 림프선병증을 동반한 동조직구증	D76.3	V110
	X-연관무감마글로불린혈증[브루튼](성장호르몬결핍을 동반)	D80.0	V111
	보통염색체열성 무감마글로불린혈증(스위스형)	D80.0	V111
	유전성 저감마글로불린혈증	D80.0	V111
	원발성 무감마글로불린혈증	D80.0	V111
	공통가변성 무감마글로불린혈증	D80.1	V111
	저감마글로불린혈증 NOS	D80.1	V111
	비가작성 저감마글로불린혈증	D80.1	V111
	면역글로불린을 지닌 B-림프구가 있는 무감마글로불린혈증	D80.1	V111
	면역글로불린A의 선택적 결핍	D80.2	V111
	면역글로불린G 서브클래스의 선택적 결핍	D80.3	V111
	면역글로불린M의 선택적 결핍	D80.4	V111
	면역글로불린M의 증가를 동반한 면역결핍	D80.5	V111
	거의 정상인 면역글로불린 또는 고면역글로불린혈증을 동반한 항체결핍	D80.6	V111
	항체결손이 현저한 기타 면역결핍	D80.8	V111
	카파경쇄결핍	D80.8	V111
	세망세포발생 이상을 동반한 중증복합면역결핍	D81.0	V111
	T- 및 B-세포수가 감소된 중증복합면역결핍	D81.1	V111
	B-세포수가 정상이거나 감소된 중증복합면역결핍	D81.2	V111
	아데노신탈아미노효소결핍	D81.3	V111
	네젤로프증후군	D81.4	V111
	퓨린뉴클레오사이드인산화효소결핍	D81.5	V111
	주조직적합성복합체 I 형결핍	D81.6	V111
	노출림프구증후군	D81.6	V111
	주조직적합성복합체 II 형결핍	D81.7	V111

구분	상병명	상병 코드	특정 기호
	바이오틴-의존카복실레이스결핍	D81.8	V111
	오멘증후군	D81.8	V111
	중증복합면역결핍장애 NOS	D81.9	V111
	혈소판감소 및 습진을 동반한 면역결핍	D82.0	V111
	비스코트-얼드리치증후군	D82.0	V111
	디조지증후군	D82.1	V111
	흉선성 림프조직무형성	D82.1	V111
	면역결핍을 동반한 흉선무형성 또는 형성저하	D82.1	V111
	인두낭증후군	D82.1	V111
	짧은사지체구를 동반한 면역결핍	D82.2	V111
	엡스타인-바르바이러스에 대한 유전성 결손반응에 따른 면역결핍	D82.3	V111
	X-연관 림프증식성 질환	D82.3	V111
	고면역글로불린E증후군	D82.4	V111
	B-세포 수 및 기능의 현저한 이상에 의한 공통 가변성 면역결핍	D83.0	V111
	현저한 면역조절T-세포장애에 의한 공통 가변성 면역결핍	D83.1	V111
	B- 또는 T-세포에 대한 자가항체를 동반한 공통 가변성 면역결핍	D83.2	V111
	림프구기능항원-1결손	D84.0	V111
	C1에스터레이스억제인자결핍	D84.1	V111
	보체계통의 결손	D84.1	V111
	폐의 사르코이드증	D86.0	V111
	림프절의 사르코이드증	D86.1	V111
	림프절의 사르코이드증을 동반한 폐의 사르코이드증	D86.2	V111
	피부의 사르코이드증	D86.3	V111
	사르코이드관절병증(M14.8*)	D86.8	V111
	사르코이드심근염(I41.8*)	D86.8	V111
	사르코이드근염(M63.3*)	D86.8	V111
	포도막귀밑샘염	D86.8	V111
	사르코이드증에서의 홍채섬모체염(H22.1*)	D86.8	V111
	기타 및 복합부위의 사르코이드증	D86.8	V111
	사르코이드증에서의 다발성 뇌신경마비(G53.2*)	D86.8	V111
	한랭글로불린혈증성 혈관염	D89.1	V294

구분	상병명	상병 코드	특정 기호
	말단비대증 및 뇌하수체거인증	E22.0	V112
	말단비대증과 관련된 관절병증 (M14.5*)	E22.0	V112
	성장호르몬의 과잉생산	E22.0	V112
	쉬한증후군	E23.0	V165
	콜만증후군	E23.0	V165
	뇌하수체 부신피질자극호르몬의 과다생산	E24.0	V114
	뇌하수체-의존 쿠싱병	E24.0	V114
	뇌하수체-의존 부신피질기능항진증	E24.0	V114
	넬슨증후군	E24.1	V114
	이소성 부신피질자극호르몬증후군	E24.3	V114
	효소결핍과 관련된 선천성 부신생식기장애	E25.0	V115
	염류소실 선천성 부신증식증	E25.0	V115
	선천성 부신증식증	E25.0	V115
	21-수산화효소결핍	E25.0	V115
	부신생식기증후군 NOS	E25.9	V115
	바터증후군	E26.8	V254
	원발성 부신피질부전	E27.1	V116
	애디슨병	E27.1	V116
	자가면역성 부신염	E27.1	V116
	가족성 부신포티코이드결핍	E27.1	V116
	애디슨발증	E27.2	V116
	부신피질발증	E27.2	V116
	부신발증	E27.2	V116
	부신출혈	E27.4	V116
	부신경색증	E27.4	V116
	저알도스테론증	E27.4	V116
	부신피질부전 NOS	E27.4	V116
	송과선 기능이상	E34.8	V166
	조로증	E34.8	V166
	활동성 구루병	E55.0	V207
	영아골연화증	E55.0	V207

구분	상병명	상병 코드	특정 기호
	연소성 골연화증	E55.0	V207
	고전적 페닐케톤뇨증	E70.0	V117
	기타 고페닐알라닌혈증	E70.1	V117
	타이로신대사장애	E70.2	V117
	타이로신혈증	E70.2	V117
	타이로신증	E70.2	V117
	조직흑갈병	E70.2	V117
	알칼톤뇨증	E70.2	V117
	눈피부백색증	E70.3	V117
	눈백색증	E70.3	V117
	교차증후군	E70.3	V117
	체디아크(-스타인브링크)-히가시증후군	E70.3	V117
	헤르만스키-푸들라크증후군	E70.3	V117
	바르덴브르그 증후군(백색증을동반한)	E70.3	V117
	히스티딘대사장애	E70.8	V117
	트립토판대사장애	E70.8	V117
	단풍시럽뇨병	E71.0	V117
	프로피온산혈증	E71.1	V117
	메틸말론산혈증	E71.1	V117
	아이소발레린산혈증	E71.1	V117
	고발린혈증	E71.1	V117
	고류신-이소류신혈증	E71.1	V117
	지방산대사장애	E71.3	V117
	부신백질디스트로피[애디슨-실더]	E71.3	V117
	근육카르니틴팔미틸트랜스퍼레이스결핍	E71.3	V117
	장쇄수산화아실코에이탈수소효소결핍증(VLCAD)	E71.3	V117
	아미노산운반장애	E72.0	V117
	로베증후군	E72.0	V117
	시스틴증	E72.0	V117
	판코니(-드토니)(-드브레)증후군	E72.0	V117
	시스틴뇨증	E72.0	V117

구분	상병명	상병 코드	특정 기호
	하르트넵병	E72.0	V117
	시스틴축적병(N29.8*)	E72.0	V117
	유황함유아미노산대사장애	E72.1	V117
	호모시스틴뇨	E72.1	V117
	아황산염산화효소결핍	E72.1	V117
	시스타타이오닌뇨증	E72.1	V117
	메타이오닌혈증	E72.1	V117
	고호모시스테인혈증	E72.1	V117
	요소회로대사장애	E72.2	V117
	아르지닌숙신산뇨	E72.2	V117
	시트룰린혈증	E72.2	V117
	아르지닌혈증	E72.2	V117
	고암모니아혈증	E72.2	V117
	라이신 및 하이드록시라이신 대사장애	E72.3	V117
	하이드록시라이신혈증	E72.3	V117
	글루타르산뇨	E72.3	V117
	고라이신혈증	E72.3	V117
	오르니틴대사장애	E72.4	V117
	오르니틴혈증(Ⅰ, Ⅱ형)	E72.4	V117
	오르니틴트랜스카바미라제결핍	E72.4	V117
	글라이신대사장애	E72.5	V117
	사르코신혈증	E72.5	V117
	비케톤고글라이신혈증	E72.5	V117
	고하이드록시프롤린혈증	E72.5	V117
	고프롤린혈증(Ⅰ, Ⅱ형)	E72.5	V117
	감마글루타밀회로의 장애	E72.8	V117
	베타아미노산대사장애	E72.8	V117
	선천성 젖당분해효소결핍	E73.0	V117
	글리코젠축적병 1b형 A	E74.0	V117
	글리코젠합성효소결핍	E74.0	V117
	코리병	E74.0	V117

구분	상병명	상병 코드	특정 기호
	타루이병	E74.0	V117
	폼페병	E74.0	V117
	맥아들병	E74.0	V117
	글리코젠축적병	E74.0	V117
	포르브스병	E74.0	V117
	폰기에르케병	E74.0	V117
	간인산화효소결핍	E74.0	V117
	허스병	E74.0	V117
	심장글리코젠증	E74.0	V117
	안데르센병	E74.0	V117
	갈락토스혈증	E74.2	V117
	갈락토스대사장애	E74.2	V117
	갈락토카이네이스결핍	E74.2	V117
	포스포에놀피루브산염카르복시카이네이스의 결핍	E74.4	V117
	피루브산염대사 및 포도당신합성 장애	E74.4	V117
	탈수소효소피루브산염의 결핍	E74.4	V117
	카복실레이스피루브산염의 결핍	E74.4	V117
	옥살산뇨	E74.8	V117
	샌드호프병	E75.0	V117
	GM ₂ -강글리오시드증	E75.0	V117
	연소형 GM ₂ -강글리오시드증	E75.0	V117
	테아-삭스병	E75.0	V117
	GM ₂ -강글리오시드증 NOS	E75.0	V117
	성인형 GM ₂ -강글리오시드증	E75.0	V117
	강글리오시드증 NOS	E75.1	V117
	류코지질증 IV	E75.1	V117
	GM ₁ -강글리오시드증	E75.1	V117
	GM ₃ -강글리오시드증	E75.1	V117
	파브리(-앤더슨)병	E75.2	V117
	니만-픽병	E75.2	V117
	화버증후군	E75.2	V117

구분	상병명	상병 코드	특정 기호
	크라베병	E75.2	V117
	설파테이스결핍	E75.2	V117
	이염성 백질디스트로피	E75.2	V117
	고쉐병	E75.2	V117
	신경세포세로이드라이포푸스신증	E75.4	V117
	스필마이어-보그트병	E75.4	V117
	쿠프스병	E75.4	V117
	바텐병	E75.4	V117
	얀스키-빌쇼스키병	E75.4	V117
	월만병	E75.5	V117
	대뇌간의 콜레스테롤증[벤보게르트-쉐러-엡스타인]	E75.5	V117
	I 형 점액다당류증	E76.0	V117
	혈러증후군	E76.0	V117
	혈러-샤이에증후군	E76.0	V117
	샤이에증후군	E76.0	V117
	II 형 점액다당류증	E76.1	V117
	헌터증후군	E76.1	V117
	모르키오 (-유사)(고전적) 증후군	E76.2	V117
	마로토-라미 (경도)(중증) 증후군	E76.2	V117
	베타-글루쿠론산분해효소결핍	E76.2	V117
	III, IV, VI, VII 형 점액다당류증	E76.2	V117
	산필립포 (B형)(C형)(D형) 증후군	E76.2	V117
	뮤코지질증 III [거짓혈러다발디스트로피]	E77.0	V117
	뮤코지질증 II [I -세포병]	E77.0	V117
	라이소솜효소의 번역후 수정의 결손	E77.0	V117
	푸고스축적증	E77.1	V117
	시알산증[뮤코지질증 I]	E77.1	V117
	당단백질분해의 결손	E77.1	V117
	아스파르틸글루코사민노	E77.1	V117
	마노스축적증	E77.1	V117
	레쉬-니한증후군	E79.1	V221

구분	상병명	상병 코드	특정 기호
	유전성 코프로포르피린증	E80.2	V118
	포르피린증 NOS	E80.2	V118
	급성 간혈성 (간성) 포르피린증	E80.2	V118
	구리대사장애	E83.0	V119
	멘케스(교인모발)(강모)병	E83.0	V119
	월슨병	E83.0	V119
	혈색소증	E83.1	V255
	산성인산분해효소결핍	E83.3	V189
	가족성 저인산혈증	E83.3	V189
	저인산효소증	E83.3	V189
	비타민D저항골연화증	E83.3	V189
	비타민D저항구루병	E83.3	V189
	인대사 및 인산분해효소 장애	E83.3	V189
	폐증상을 동반한 남성 섬유증	E84.0	V120
	장증상을 동반한 남성 섬유증	E84.1	V120
	남성 섬유증에서의 태변장폐색 (P75*)	E84.1	V120
	원위장폐쇄증후군	E84.1	V120
	유전성 아밀로이드 신장병증	E85.0	V121
	비신경병성 유전가족성 아밀로이드증	E85.0	V121
	가족성 지중해열	E85.0	V121
	아밀로이드다발신경병증(포르투갈)	E85.1	V121
	신경병성 유전가족성 아밀로이드증	E85.1	V121
	상세불명의 유전가족성 아밀로이드증	E85.2	V121
	기관한정아밀로이드증	E85.4	V121
	국소적 아밀로이드증	E85.4	V121
	카다실	F01.1	V122
	레트증후군	F84.2	V122
	뇌전증에 동반된 후천성 실어증(失語症)[란다우-클레프너]	F80.3	V256
	헌팅톤병	G10	V123
	헌팅톤무도병	G10	V123
	선천성 비진행성 운동실조	G11.0	V123

구분	상병명	상병 코드	특정 기호
	조기발병 소뇌성 운동실조(발병은 보통 20세 이전)	G11.1	V123
	X-연관 열성 척수소뇌성 운동실조	G11.1	V123
	보류된 힘줄반사율(률) 동반한 조기발병 소뇌성 운동실조	G11.1	V123
	마이오클로누스[헌트운동실조]율(률) 동반한 조기발병 소뇌성 운동실조	G11.1	V123
	본태성 떨림율(률) 동반한 조기발병 소뇌성 운동실조	G11.1	V123
	프리드라이히운동실조(보통염색체열성)	G11.1	V123
	만기발병 소뇌성 운동실조(발병은 보통 20세 이후)	G11.2	V123
	DNA복구결손을 수반한 소뇌성 운동실조	G11.3	V123
	모세혈관확장성 운동실조[루이-바]	G11.3	V123
	유전성 강직성 허반신마비	G11.4	V123
	기타 유전성 운동실조	G11.8	V123
	상세불명의 유전성 운동실조	G11.9	V123
	유전성 소뇌의 변성	G11.9	V123
	유전성 소뇌의 병	G11.9	V123
	유전성 소뇌의 증후군	G11.9	V123
	유전성 소뇌의 운동실조 NOS	G11.9	V123
	영아척수성 근위축, I형[베르드니하-호프만]	G12.0	V123
	기타 유전성 척수성 근위축	G12.1	V123
	소아기의 진행성 연수마비[파지오-론데]	G12.1	V123
	원위 척수성 근위축	G12.1	V123
	어깨종아리형 척수성 근위축	G12.1	V123
	소아형, II형 척수성 근위축	G12.1	V123
	연소형, III형[쿠겔베르그-벨란데] 척수성 근위축	G12.1	V123
	성인형 척수성 근위축	G12.1	V123
	운동신경세포병 (단, 기타 및 상세불명의 운동신경세포병(G12.28)은 제외)	G12.2	V123
	기타 척수성 근위축 및 관련 증후군	G12.8	V123
	상세불명의 척수성 근위축	G12.9	V123
	할러포르덴-스파츠병	G23.0	V257
	색소성 담창구변성	G23.0	V257
	진행성 핵상안근마비 [스틸-리차드슨-올스제위스키]	G23.1	V190
	아급성 과사성 뇌병증[리이]	G31.81	V208

구분	상병명	상병 코드	특정 기호
	다발경화증	G35	V022
	뇌간(~의) 다발경화증	G35	V022
	척수(~의) 다발경화증	G35	V022
	다발경화증 NOS	G35	V022
	전신성(~의) 다발경화증	G35	V022
	파종성(~의) 다발경화증	G35	V022
	시신경척수염[데빅병]	G36.0	V276
	레녹스-가스토증후군	G40.4	V233
	웨스트증후군	G40.4	V233
	긴장-간대성 뇌전증지속상태	G41.0	V125
	대발작 뇌전증지속상태	G41.0	V125
	소발작뇌전증지속상태	G41.1	V125
	뇌전증 압상스지속상태	G41.1	V125
	복합부분뇌전증지속상태	G41.2	V125
	기타 뇌전증지속상태	G41.8	V125
	상세불명의 뇌전증지속상태	G41.9	V125
	발작수면 및 허탈발작	G47.4	V234
	멜커슨증후군	G51.2	V167
	멜케르손-로젠탈증후군	G51.2	V167
	데제린-소타스병	G60.0	V169
	루시-레비증후군	G60.0	V169
	영아기의 비대성 신경병증	G60.0	V169
	유전성 운동 및 감각 신경병증 I-IV형	G60.0	V169
	유전성 운동 및 감각 신경병증	G60.0	V169
	샤르코-마리-투스질환	G60.0	V169
	비골근위축(축삭형, 비대형)	G60.0	V169
	길랭-바레증후군	G61.0	V126
	밀러휘셔증후군	G61.0	V126
	다초점 운동신경병증	G61.8	V126
	만성 염증성 탈수초성 다발신경병증	G61.8	V126
	중증근무력증	G70.0	V012

구분	상병명	상병 코드	특정 기호
	선천성 및 발달성 근무력증	G70.2	V012
	조기수축을 동반하는 양성 어깨종아리[에머리-드라이프스] 근디스트로피	G71.0	V012
	뒤켄 또는 베커와 유사한 보통염색체열성, 소아형 근디스트로피	G71.0	V012
	눈 근디스트로피	G71.0	V012
	어깨종아리 근디스트로피	G71.0	V012
	근디스트로피	G71.0	V012
	중증[뒤켄] 근디스트로피	G71.0	V012
	양성[베커] 근디스트로피	G71.0	V012
	눈인두성 근디스트로피	G71.0	V012
	지대 근디스트로피	G71.0	V012
	원위성 근디스트로피	G71.0	V012
	얼굴어깨팔 근디스트로피	G71.0	V012
	근긴장장애	G71.1	V012
	거짓근긴장증	G71.1	V012
	신경근육간장[아이작스]	G71.1	V012
	증상성 근긴장증	G71.1	V012
	선천성 근긴장증 NOS	G71.1	V012
	열성[베커] 선천성 근긴장증	G71.1	V012
	우성[통슨] 선천성 근긴장증	G71.1	V012
	연골형성장애성 근긴장증	G71.1	V012
	근긴장디스트로피[스타이너트]	G71.1	V012
	선천성 이상근긴장증	G71.1	V012
	다발심 병	G71.2	V012
	선천성 근병증	G71.2	V012
	근섬유의 특정 형태이상을 동반한 선천성 근디스트로피(G71.2)	G71.2	V012
	미세심 병	G71.2	V012
	네말린근병증	G71.2	V012
	선천성 근디스트로피 NOS	G71.2	V012
	근세관성 (중심핵성) 근병증	G71.2	V012
	중심핵 병	G71.2	V012
	근섬유형 불균형	G71.2	V012

구분	상병명	상병 코드	특정 기호
	달리 분류되지 않은 미토콘드리아근병증	G71.3	V012
	멜라스증후군	G71.3	V012
	유전성 근병증 NOS	G71.9	V012
	주기마비(가족성) 저칼륨혈성	G72.3	V258
	람베르트-이튼증후군(C00-D48+)	G73.1*	V259
	복합부위통증증후군 I형	G90.5	V177
	복합부위통증증후군 II형	G90.6	V168
	척수공동증 및 연수공동증	G95.0	V172
	원추각막	H18.6	V307
	맥락막결손	H31.2	V295
	코초망막병증	H35.0	V260
	색소망막염	H35.51	V209
	스타르가르트병	H35.58	V209
	레베르선천성흑암시	H35.59	V209
	상세불명의 유전성 망막디스트로피	H35.59	V209
	컨스-세이어증후군	H49.8	V261
	원발성 폐동맥고혈압	I27.0	V202
	아이젠멘거복합	I27.8	V226
	아이젠멘거증후군	I27.8	V226
	비가역적 확장성 심근병증	I42.0	V127
	폐색성 비대성 심근병증	I42.1	V127
	비대성 대동맥판하협착	I42.1	V127
	비폐색성 비대성 심근병증	I42.20	V127
	심내막심근(호산구성)병	I42.3	V127
	심내막심근(열대성)섬유증	I42.3	V127
	뢰플러심내막염	I42.3	V127
	심내막탄력섬유증	I42.4	V127
	선천성 심근병증	I42.4	V127
	긴QT증후군	I49.82	V296
	모야모야병	I67.5	V128
	폐색혈전혈관염[버거병]	I73.1	V129

구분	상병명	상병 코드	특정 기호
	유전성 출혈성 모세혈관확장증	I78.0	V297
	랑뒤-오슬러-웨버병	I78.0	V235
	버드-키아리증후군	I82.0	V173
	폐포단백질증	J84.0	V222
	특발성 폐섬유증	J84.1	V236
	불완전상아질형성	K00.51	V310
	소장의 크론병	K50.0	V130
	대장의 크론병	K50.1	V130
	소장 및 대장 모두의 크론병	K50.8	V130
	원발성 담즙성 경변증	K74.3	V174
	자가면역성 간염	K75.4	V175
	원발성 담관염/경화성 담관염(두 상병 진단기준 모두 충족하는 경우)	K83.0	V262
	보통천포창	L10.0	V132
	낙엽천포창	L10.2	V210
	수포성 유사천포창	L12.0	V211
	홍터유사천포창	L12.1	V212
	양성 점막유사천포창	L12.1	V212
	후천성 수포성 표피박리증	L12.3	V176
	중증 화농성 한선염	L73.22	V309
	성인발병 스틸병	M06.1	V298
	류마티스인자가 있거나 없는 연소성 류마티스관절염	M08.0	V133
	연소성 류마티스관절염	M08.0	V133
	연소성 강직척추염	M08.1	V133
	전신적으로 발병된 연소성 관절염	M08.2	V133
	(혈청검사음성인) 연소성 다발관절염	M08.3	V133
	만성 연소성 다발관절염	M08.3	V133
	결절성 다발동맥염	M30.0	V134
	폐침범을 동반한 다발동맥염[처그-스트라우스]	M30.1	V134
	연소성 다발동맥염	M30.2	V134
	굿파스처증후군	M31.0	V135
	혈전성 혈소판감소성 자반	M31.1	V135
	혈전성 미세혈관병증	M31.1	V135

구분	상병명	상병 코드	특정 기호
	베게너육아종증	M31.3	V135
	과사성 호흡기육아종증	M31.3	V135
	대동맥궁증후군[다카야슈]	M31.4	V135
	현미경적 다발동맥염	M31.7	V238
	기관 또는 계통 침범을 동반한 전신홍반루푸스	M32.1	V136
	심내막염 동반 전신홍반루푸스(I39.8*)	M32.1	V136
	리브만-삭스병(I39.0*)	M32.1	V136
	루푸스 심장낭염(I32.8*)	M32.1	V136
	폐침범 동반 전신홍반루푸스(J99.1+)	M32.1	V136
	사구체질환 동반 전신홍반루푸스(N08.5*)	M32.1	V136
	세뇨관-간질신장병증 동반 전신홍반루푸스(N16.4*)	M32.1	V136
	신장침범 동반 전신홍반루푸스(N08.5*, N16.4*)	M32.1	V136
	전신홍반루푸스에서의 뇌염(G05.8*)	M32.1	V136
	전신홍반루푸스에서의 근병증(G73.7*)	M32.1	V136
	전신홍반루푸스에서의 대뇌동맥염(I68.2*)	M32.1	V136
	연소성 피부근염	M33.0	V137
	기타 피부근염	M33.1	V137
	다발근염	M33.2	V137
	진행성 전신경화증	M34.0	V138
	크레스트증후군	M34.1	V138
	석회증, 레이노현상, 식도기능장애, 경지증(硬指症), 모세혈관확장의 조합	M34.1	V138
	폐침범을 동반한 전신경화증(J99.1*)	M34.8	V138
	근병증을 동반한 전신경화증(G73.7*)	M34.8	V138
	근병증을(를) 동반한 췌그렌증후군(G73.7*)	M35.0	V139
	폐침범을(를) 동반한 췌그렌증후군(J99.1*)	M35.0	V139
	건조증후군[췌그렌]	M35.0	V139
	각막결막염을(를) 동반한 췌그렌증후군(H19.3*)	M35.0	V139
	신세뇨관-간질성 장애을(를) 동반한 췌그렌증후군(N16.4*)	M35.0	V139
	혼합결합조직병	M35.1	V139
	베체트병	M35.2	V139
	류마티스성 다발근통	M35.3	V139

구분	상병명	상병 코드	특정 기호
	미만성(호산구성) 근막염	M35.4	V139
	다초점 섬유경화증	M35.5	V139
	재발성 지방층염[웨버-크리스찬]	M35.6	V139
	진행성 골화섬유형성이상	M61.1	V224
	두개골의 파절병	M88.0	V213
	기타 뼈의 파절병	M88.8	V213
	상세불명의 뼈의 파절병	M88.9	V213
	수근반달뼈의 골연골증(연소성)[킨빅]	M92.2	V299
	성인의 킨빅병	M93.1	V299
	재발성 다발연골염	M94.1	V178
	소사구체이상을 동반한 선천성 신증후군	N04.0	V263
	최소변화병변을 동반한 선천성 신증후군	N04.0	V263
	초점성 및 분절성 사구체병변을 동반한 선천성 신증후군	N04.1	V263
	초점성 및 분절성 유리질증을 동반한 선천성 신증후군	N04.1	V263
	초점성 및 분절성 경화증을 동반한 선천성 신증후군	N04.1	V263
	초점성 사구체신염을 동반한 선천성 신증후군	N04.1	V263
	미만성 막성 사구체신염을 동반한 선천성 신증후군	N04.2	V263
	미만성 매산지음 증식성 사구체신염을 동반한 선천성 신증후군	N04.3	V263
	미만성 모세혈관내 증식성 사구체신염을 동반한 선천성 신증후군	N04.4	V263
	미만성 매산지음 모세혈관성 사구체신염을 동반한 선천성 신증후군	N04.5	V263
	막증식성 사구체신염, 1형, 3형 또는 NOS를 동반한 선천성 신증후군	N04.5	V263
	고밀도침착병을 동반한 선천성 신증후군	N04.6	V263
	막증식성 사구체신염, 2형을 동반한 선천성 신증후군	N04.6	V263
	미만성 반월형 사구체신염을 동반한 선천성 신증후군	N04.7	V263
	모세혈관외 사구체신염을 동반한 선천성 신증후군	N04.7	V263
	신장성 요붕증	N25.1	V141
	덴디-워커증후군	Q03.1	V239
	무뇌이랑증	Q04.3	V214
	큰뇌이랑증	Q04.3	V214
	분열뇌증	Q04.6	V240
	수두증을 동반한 이분경추	Q05.0	V179
	수두증을 동반한 이분흉추	Q05.1	V179

구분	상병명	상병 코드	특정 기호
	수두증을 동반한 이분홍요추	Q05.1	V179
	수두증을 동반한 이분척추	Q05.1	V179
	수두증을 동반한 이분요추	Q05.2	V179
	수두증을 동반한 이분요천추	Q05.2	V179
	수두증을 동반한 이분천추	Q05.3	V179
	수두증을 동반한 상세불명의 이분척추	Q05.4	V179
	수두증이 없는 이분경추	Q05.5	V179
	수두증이 없는 이분흉추	Q05.6	V179
	이분홍요추 NOS	Q05.6	V179
	이분척추 NOS	Q05.6	V179
	이분요천추 NOS	Q05.7	V179
	수두증이 없는 이분요추	Q05.7	V179
	수두증이 없는 이분천골	Q05.8	V179
	상세불명의 이분척추	Q05.9	V179
	척수이개증	Q06.2	V180
	아놀드-키아리증후군	Q07.0	V143
	(외)이도의 선천성 결여, 폐쇄, 협착	Q16.1	V291
	소이증(小耳症)	Q17.2	V291
	총동맥간	Q20.0	V144
	동맥간존속	Q20.0	V144
	타우시그-빙증후군	Q20.1	V144
	이중출구우심실	Q20.1	V144
	이중출구좌심실	Q20.2	V144
	대혈관의 (완전)전위	Q20.3	V144
	심실대혈관연결불일치	Q20.3	V144
	대동맥의 우측전위	Q20.3	V144
	단일심실	Q20.4	V225
	수정혈관전위	Q20.5	V144
	방실연결불일치	Q20.5	V144
	좌측전위	Q20.5	V144
	심실내번	Q20.5	V144

구분	상병명	상병 코드	특정 기호
	방실중격결손	Q21.2	V269
	총방실관	Q21.2	V269
	심내막용기결손	Q21.2	V269
	제1공심방중격결손(Ⅰ형)	Q21.2	V269
	팔로네징후	Q21.3	V269
	폐동맥 협착 또는 폐쇄, 대동맥의 우측위치 및 우심실비대를 동반한 심실중격결손	Q21.3	V269
	대동맥폐동맥창	Q21.4	V269
	대동맥폐동맥중격결손	Q21.4	V269
	대동맥중격결손	Q21.4	V269
	아이젠멘거결손	Q21.8	V226
	폐동맥판폐쇄	Q22.0	V145
	삼첨판폐쇄	Q22.4	V146
	에브스타인이상	Q22.5	V146
	형성저하성 우심증후군	Q22.6	V146
	대동맥판의 선천협착	Q23.0	V147
	선천성 대동맥판폐쇄	Q23.0	V147
	선천성 대동맥판협착	Q23.0	V147
	이첨대동맥판막	Q23.1	V147
	선천성 대동맥판기능부전	Q23.1	V147
	대동맥판의 선천성 기능부전	Q23.1	V147
	선천성 대동맥판류역류	Q23.1	V147
	선천성 승모판협착	Q23.2	V147
	선천성 승모판폐쇄	Q23.2	V147
	선천성 승모판기능부전	Q23.3	V147
	(승모판 협착 또는 폐쇄와 함께) 상행대동맥의 형성저하와 좌심실의 결손발육을 동반하는 대동맥구멍 및 판막의 폐쇄 또는 현저한 발육부전	Q23.4	V147
	형성저하성 좌심증후군	Q23.4	V147
	대동맥판 및 승모판의 기타 선천기형	Q23.8	V147
	대동맥판 및 승모판의 상세불명의 선천기형	Q23.9	V147
	선천성 대동맥판협착	Q24.4	V270

구분	상병명	상병 코드	특정 기호
	관상동맥혈관의 기형	Q24.5	V148
	선천성 관상동맥류	Q24.5	V148
	선천성 심장차단	Q24.6	V271
	대동맥의 축착	Q25.1	V272
	대동맥의 축착(관전, 관후)	Q25.1	V272
	대동맥의 폐쇄	Q25.2	V272
	판막상부 대동맥협착	Q25.3	V272
	대동맥의 협착	Q25.3	V272
	폐동맥의 폐쇄	Q25.5	V149
	대정맥의 선천성 협착	Q26.0	V150
	(하)(상)대정맥의 선천성 협착	Q26.0	V150
	좌상대정맥존속	Q26.1	V150
	전폐정맥결합이상	Q26.2	V150
	부분폐정맥결합이상	Q26.3	V150
	상세불명의 폐정맥결합이상	Q26.4	V150
	문맥결합이상	Q26.5	V150
	문맥-간동맥루	Q26.6	V150
	무설증(無舌症)	Q38.3	V241
	담관의 폐쇄	Q44.2	V181
	다낭성 신장, 보통염색체열성	Q61.1	V264
	다낭성 신장, 영아형	Q61.1	V264
	다낭성 신장, 보통염색체우성	Q61.2	V264
	방광외반	Q64.1	V227
	방광이소증	Q64.1	V227
	방광외번	Q64.1	V227
	선천성 다발관절만곡증	Q74.3	V292
	두개골유합	Q75.0	V265
	뿔족머리증(Acrocephaly)	Q75.0	V265
	두개골의 불완전유합	Q75.0	V265
	뿔족머리증(Oxycephaly)	Q75.0	V265
	삼각머리증	Q75.0	V265

구분	상병명	상병 코드	특정 기호
	크루존병	Q75.1	V151
	두개안면골이골증	Q75.1	V151
	하악안면골이골증	Q75.4	V182
	프란체스웨티 증후군	Q75.4	V182
	트레처-콜린스 증후군	Q75.4	V182
	연골무발생증	Q77.0	V228
	연골발생저하증	Q77.0	V228
	치사성 단신	Q77.1	V228
	질식성 흉부형성이상[쥐노]	Q77.2	V228
	짧은늑골증후군	Q77.2	V228
	점상 연골형성이상	Q77.3	V228
	어깨고관절 점상 연골형성이상(1형-3형)	Q77.3	V228
	X-연관 우성 연골형성이상	Q77.3	V228
	연골무형성증	Q77.4	V228
	연골형성저하증	Q77.4	V228
	선천성 골경화증	Q77.4	V228
	디스트로피성 형성이상	Q77.5	V228
	엘리스-반크레벨트증후군	Q77.6	V228
	연골외배엽형성이상	Q77.6	V228
	척추골단형성이상	Q77.7	V228
	만발성 척추골단형성이상	Q77.7	V228
	관상골 및 척추의 성장결손을 동반한 기타 골연골형성이상	Q77.8	V228
	말단왜소 형성이상	Q77.8	V228
	관상골 및 척추의 성장결손을 동반한 상세불명의 골연골형성이상	Q77.9	V228
	불완전골형성	Q78.0	V183
	골취약증(Fragilitas ossium)	Q78.0	V183
	골취약증(Osteopsathyrosis)	Q78.0	V183
	다골성 섬유성 형성이상	Q78.1	V154
	얼브라이트(-맥군)(-스턴버그)증후군	Q78.1	V154
	골화석증	Q78.2	V229
	알베르스-쇤베르그증후군	Q78.2	V229
	카무라티-앵겔만증후군	Q78.3	V266

구분	상병명	상병 코드	특정 기호
	내연골종증	Q78.4	V230
	마푸치증후군	Q78.4	V230
	올리에르병	Q78.4	V230
	필레증후군	Q78.5	V215
	다발선천외골증	Q78.6	V242
	골간병적조직연결	Q78.6	V242
	유전성 다발외골증	Q78.6	V242
	선천성 황격막탈장	Q79.0	V155
	황격막결여	Q79.1	V155
	황격막 탈출	Q79.1	V155
	황격막의 기타 선천기형	Q79.1	V155
	황격막의 선천기형 NOS	Q79.1	V155
	배꼽내장탈장	Q79.2	V155
	선천복벽탈장	Q79.2	V155
	복벽파열증	Q79.3	V155
	말린자두배증후군	Q79.4	V155
	복벽의 기타 선천기형	Q79.5	V155
	엘러스-단로스증후군	Q79.6	V155
	근골격계통의 기타 선천기형	Q79.8	V155
	부근	Q79.8	V155
	선천성 짧은힘줄	Q79.8	V155
	근육의 결여	Q79.8	V155
	폴란드증후군	Q79.8	V155
	힘줄의 결여	Q79.8	V155
	선천성 근위축	Q79.8	V155
	선천성 협착띠	Q79.8	V155
	근골격계통의 상세불명의 선천기형	Q79.9	V155
	근골격계통의 선천이상 NOS	Q79.9	V155
	근골격계통의 선천변형 NOS	Q79.9	V155
	X-연관비늘증	Q80.1	V300
	X-연관비늘증; 스테로이드설파타제결핍	Q80.1	V300

구분	상병명	상병 코드	특정 기호
	할리퀀테아	Q80.4	V300
	치사성 수포성 표피박리증	Q81.1	V184
	헤를리츠증후군	Q81.1	V184
	디스트로피성 수포성 표피박리증	Q81.2	V184
	신경섬유종증(비악성)	Q85.0	V156
	폰렉클링하우젠병	Q85.0	V156
	신경섬유종증(비악성) 1형, 2형	Q85.0	V156
	결절성 경화증	Q85.1	V204
	에필로이아	Q85.1	V204
	부르느뷰병	Q85.1	V204
	폰 히펠-린다우 증후군	Q85.8	V216
	포이츠-제거스 증후군	Q85.8	V216
	스터지-베버(-디미트리) 증후군	Q85.8	V216
	(이상형태성) 태아알코올증후군	Q86.0	V157
	고린-샤우드리-모스 증후군	Q87.0	V185
	주로 얼굴형태에 영향을 주는 선천기형증후군	Q87.0	V185
	잠복안구증후군	Q87.0	V185
	폴덴하 증후군	Q87.0	V185
	로빈 증후군	Q87.0	V185
	첨두다자유합증	Q87.0	V185
	첨두유합지증	Q87.0	V185
	단안증	Q87.0	V185
	뫼비우스 증후군	Q87.0	V185
	입-얼굴-손발 증후군	Q87.0	V185
	휘파람부는 얼굴	Q87.0	V185
	카펜터 증후군	Q87.0	V185
	드 랑즈 증후군	Q87.1	V158
	두보위츠 증후군	Q87.1	V158
	프라더-윌리 증후군	Q87.1	V158
	로비노-실버만-스미스 증후군	Q87.1	V158
	시클 증후군	Q87.1	V158

구분	상병명	상병 코드	특정 기호
	주로 단신과 관련된 선천기형증후군	Q87.1	V158
	아르스코그 증후군	Q87.1	V158
	코케인 증후군	Q87.1	V158
	누난 증후군	Q87.1	V158
	러셀-실버 증후군	Q87.1	V158
	스미스-렘리-오피츠 증후군	Q87.1	V158
	쉐그렌-라손 증후군	Q87.1	V158
	루빈스타인-테이비 증후군	Q87.2	V243
	바테르 증후군	Q87.2	V243
	클리펠-트레노우네이-베버 증후군	Q87.2	V243
	홀트-오람 증후군	Q87.2	V243
	손발톱무릎뼈 증후군	Q87.2	V243
	소토스 증후군	Q87.3	V244
	위버 증후군	Q87.3	V244
	마르팡증후군	Q87.4	V186
	알포트 증후군	Q87.8	V267
	로렌스-문(-바르데)-비들 증후군	Q87.8	V267
	젤웨거 증후군	Q87.8	V267
	착지 증후군	Q87.8	V267
	21삼염색체증, 감수분열비분리	Q90.0	V159
	21삼염색체증, 섞임증형(유사분열비분리)	Q90.1	V159
	21삼염색체증, 전위	Q90.2	V159
	21삼염색체증 NOS	Q90.9	V159
	18삼염색체증, 감수분열비분리	Q91.0	V160
	18삼염색체증, 섞임증형(유사분열비분리)	Q91.1	V160
	18삼염색체증, 전위	Q91.2	V160
	13삼염색체증, 감수분열비분리	Q91.4	V160
	13삼염색체증, 섞임증형(유사분열비분리)	Q91.5	V160
	13삼염색체증, 전위	Q91.6	V160
	13삼염색체증증후군	Q91.7	V160
	5번 염색체 단완의 결손	Q93.4	V205

구분	상병명	상병 코드	특정 기호
	고양이울음증후군	Q93.4	V205
	캐취22증후군	Q93.5	V217
	엔젤만증후군	Q93.5	V217
	스미스-마제니스 증후군	Q93.5	V217
	월리엄스 증후군	Q93.5	V217
	핵형45, X	Q96.0	V021
	핵형46, X동인자(Xq)	Q96.1	V021
	동인자(Xq)를 제외한 이상 성염색체를 가진 핵형46, X	Q96.2	V021
	섞임증, 45, X/46, XX 또는 XY	Q96.3	V021
	섞임증, 이상성염색체를 가진 45, X/기타 세포열	Q96.4	V021
	클라인펠터증후군, 핵형 47, XXY	Q98.0	V218
	클라인펠터증후군, 두 개 이상의 X염색체를 가진 남성	Q98.1	V218
	클라인펠터증후군, 두 개 이상의 X염색체를 가진 남성	Q98.1	V218
	클라인펠터증후군, 핵형 46, XX를 가진 남성	Q98.2	V218
	취약X증후군	Q99.2	V245

(3)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4의2] “중증난치질환자 산정특례 대상”의 구분5.

구분	상병명	상병 코드	특정 기호
5	아래의 상병을 갖고 있는 환자가 해당 상병 관련 진료를 받은 당일 외래진료 또는 입원진료		
	도슨 봉입체뇌염	A81.1	V282
	아급성 경화성 범뇌염	A81.1	V282
	벤보게르트 경화성 백질뇌병증	A81.1	V282
	진행성 다초점백질뇌병증	A81.2	V282
	다초점백질뇌병증 NOS	A81.2	V282
	중추신경계통의 기타 비정형바이러스감염	A81.8	V282
	쿠루	A81.8	V282
	중추신경계통의 상세불명의 비정형바이러스감염	A81.9	V282
	중추신경계통의 프리온질환 NOS	A81.9	V282
	마이코박테리아감염을 유발한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병	B20.0	V103
	결핵을 유발한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병	B20.0	V103
	기타 세균감염을 유발한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병	B20.1	V103
	거대세포바이러스병을 유발한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병	B20.2	V103
	기타 바이러스감염을 유발한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병	B20.3	V103
	칸디다증을 유발한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병	B20.4	V103
	기타 진균증을 유발한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병	B20.5	V103
	폐포자충폐렴을 유발한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병 (HIV disease resulting in Pneumocystis jirovecii pneumonia)	B20.6	V103
	폐포자충폐렴을 유발한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병 (HIV disease resulting in Pneumocystis carinii pneumonia)	B20.6	V103
	다발감염을 유발한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병	B20.7	V103
	기타 감염성 및 기생충성 질환을 유발한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병	B20.8	V103
	상세불명의 감염성 또는 기생충성 질환을 유발한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병	B20.9	V103
	감염을 유발한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병 NOS	B20.9	V103

구분	상병명	상병 코드	특정 기호
	카포시육종을 유발한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병	B21.0	V103
	버킷림프종을 유발한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병	B21.1	V103
	기타 유형의 비호지킨림프종을 유발한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병	B21.2	V103
	림프성, 조혈성 및 관련 조직의 기타 악성 신생물을 유발한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병	B21.3	V103
	다발성 악성 신생물을 유발한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병	B21.7	V103
	기타 악성 신생물을 유발한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병	B21.8	V103
	상세불명의 악성 신생물을 유발한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병	B21.9	V103
	뇌병증을 유발한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병	B22.0	V103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치매	B22.0	V103
	림프성 간질폐렴을 유발한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병	B22.1	V103
	소모증후군을 유발한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병	B22.2	V103
	슬림병	B22.2	V103
	성장장애를 유발한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병	B22.2	V103
	달리 분류된 다발성 질환을 유발한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병	B22.7	V103
	급성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감염증후군	B23.0	V103
	(지속성) 전신림프선병증을 유발한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병	B23.1	V103
	달리 분류되지 않은 혈액학적 및 면역학적 이상을 유발한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병	B23.2	V103
	기타 명시된 병태를 유발한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병	B23.8	V103
	상세불명의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병	B24	V103
	후천면역결핍증후군 NOS	B24	V103
	에이즈-관련복합 NOS	B24	V103
	뇌하수체의 양성 신생물	D35.2	V162
	악물유발 무형성빈혈	D61.1	V283
	악물유발 호중구감소	D70	V285

구분	상병명	상병코드	특정기호
	과당대사장애	E74.1	V286
	유전성 과당불내성	E74.1	V286
	과당-1, 6-이인산분해효소결핍	E74.1	V286
	수크레이스결핍	E74.3	V286
	장성 탄수화물흡수의 기타 장애	E74.3	V286
	포도당-갈락토스흡수장애	E74.3	V286
	신생물말림 신경근육병증 및 신경병증	G13.0	V287
	신생물말림 변연부뇌병증(C00-D48+)	G13.1	V287
	달리 분류된 기타 질환에서 일차적으로 중추신경계통을 침범하는 계통적 위축	G13.8	V287
	파킨슨병	G20	V124
	특발성 파킨슨증 또는 파킨슨병	G20	V124
	원발성 파킨슨증 또는 파킨슨병	G20	V124
	편측파킨슨증	G20	V124
	떨림마비	G20	V124
	파킨슨증 또는 파킨슨병 NOS	G20	V124
	난치성 뇌전증을 동반한 국소발병의 발작을 동반한 국소화-관련 (초점성)(부분적) 특발성 뇌전증 및 뇌전증증후군	G40.01	V279
	난치성 뇌전증을 동반한 복합부분발작을 동반한 국소화-관련 (초점성)(부분적) 증상성 뇌전증 및 뇌전증증후군	G40.21	V279
	난치성 뇌전증을 동반한 전신성 특발성 뇌전증 및 뇌전증증후군	G40.31	V279
	결핵(~에서의) 다발신경병증(A17.82+)	G63.0	V170
	디프테리아(~에서의) 다발신경병증(A36.8+)	G63.0	V170
	감염성 단핵구증(~에서의) 다발신경병증(B27.-+)	G63.0	V170
	나병(~에서의) 다발신경병증(A30.-+)	G63.0	V170
	라임병(~에서의) 다발신경병증(A69.2+)	G63.0	V170
	볼거리(~에서의) 다발신경병증(B26.8+)	G63.0	V170

구분	상병명	상병 코드	특정 기호
	포진후(~에서의) 다발신경병증(B02.2†)	G63.0	V170
	만기매독(~에서의) 다발신경병증(A52.1†)	G63.0	V170
	만기선천매독(~에서의) 다발신경병증(A50.4†)	G63.0	V170
	달리 분류된 감염성 및 기생충성 질환에서의 다발신경병증	G63.0	V170
	독성근신경장애	G70.1	V288
	노년성 황반변성(삼출성)	H35.31	V201
	울혈성 심근병증	I42.0	V289
	기타 비대성 심근병증	I42.28	V289
	기타 제한성 심근병증	I42.5	V289
	궤양성 (만성) 범결장염	K51.0	V131
	궤양성 (만성) 직장염	K51.2	V131
	좌측 결장염	K51.5	V131
	기타 궤양성 대장염	K51.8	V131
	상세불명의 궤양성 대장염	K51.9	V131
	중증 아토피성 피부염	L20.85	V308
	중증 보통건선	L40.00	V280
	비장림프절비대 및 백혈구감소가 동반된 류마티스관절염	M05.0	V223
	펠티증후군	M05.0	V223
	류마티스폐질환(J99.0*)	M05.1	V223
	류마티스혈관염	M05.2	V223
	기타 기관 및 계통의 침범을 동반한 류마티스관절염	M05.3	V223
	기타 기관 및 계통의 침범을 동반한 류마티스 심장막염(I32.8*)	M05.3	V223
	기타 기관 및 계통의 침범을 동반한 류마티스 다발신경병증(G63.6*)	M05.3	V223
	기타 기관 및 계통의 침범을 동반한 류마티스 심근염(I41.8*)	M05.3	V223
	기타 기관 및 계통의 침범을 동반한 류마티스 근병증(G73.7*)	M05.3	V223
	기타 기관 및 계통의 침범을 동반한 류마티스 심내막염(I39.-*)	M05.3	V223

구분	상병명	상병코드	특정기호
	기타 기관 및 계통의 침범을 동반한 류마티스 심장염(I52.8*)	M05.3	V223
	기타 혈청검사양성 류마티스관절염	M05.8	V223
	상세불명의 혈청검사양성 류마티스관절염	M05.9	V223
	절단성 관절염(L40.5†)	M07.1	V237
	건선척추염(L40.5†)	M07.2	V237
	기타 건선관절병증(L40.5†)	M07.3	V237
	과민성 혈관염	M31.0	V290
	강직척추염, 척추의 여러 부위	M45.0	V140
	강직척추염, 후두환축부	M45.1	V140
	강직척추염, 경부	M45.2	V140
	강직척추염, 경흉추부	M45.3	V140
	강직척추염, 흉추부	M45.4	V140
	강직척추염, 흉요추부	M45.5	V140
	강직척추염, 요추부	M45.6	V140
	강직척추염, 요천부	M45.7	V140
	강직척추염, 천추 및 천미추부	M45.8	V140
	신생아의 호흡곤란증후군	P22.0	V142
	유리질막병	P22.0	V142
	신생아의 기타 호흡곤란	P22.8	V142
	신생아의 상세불명의 호흡곤란	P22.9	V142

(4) 기타 염색체 상세불명 희귀질환 산정특례 선정목록

순번	질환명(국문)	질환명(영문)
1	1q21.1미세결실증후군	1q21.1 microdeletion syndrome
2	2q24미세결실증후군	2q24 microdeletion syndrome
3	2q32q33미세결실증후군	2q32q33 microdeletion syndrome
4	2q33.1미세결실증후군	2q33.1microdeletionsyndrome
5	3번염색체단완결손	3p deletion
6	3번염색체장완결손	3q deletion
7	3q29미세결실증후군	3q29 microdeletion syndrome
8	4번 염색체 단완 부분 결손	Partial deletion of the short arm of chromosome 4
9	4q21미세결실	4q21 microdeletion
10	4q34 미세결실	4q34 microdeletion
11	재조합 8번 염색체 증후군	Recombinant 8 syndrome
12	8번 염색체 단완 단일염색체증	Monosomy 8p
13	8p11.2 미세결실 증후군	8p11.2deletionsyndrome
14	9번 염색체 단완 결손	9pdeletion
15	9번 염색체 단완 중복 (사염색체)	Tetrasomy 9p
16	10번 염색체 장완 말단부 결실	Distal monosomy 10q
17	11번 염색체 장완 부분 중복	Distal trisomy 11q
18	14번 염색체 장완 부분 결실	Distal monosomy 14q
19	15번 염색체 장완 사염색체성	15q tetrasomy (isodicentric 15 chromosome syndrome)
20	16번 염색체 단완 결손 (ATR-16 증후군)	16p deletion (ATR-16 syndrome)
21	18번환염색체	Ring chromosome 18
22	18번염색체단완결손	18p deletion
23	20번염색체장완말단부중복	20q duplication
24	20번염색체단완중복	Trisomy 20p; 20p duplication
25	7q11.23미세중복증후군	7q11.23 microduplication syndrome
26	8q21.11미세결실증후군	8q21.11 microdeletion syndrome
27	8q22.1미세결실증후군	8q22.1 microdeletion syndrome
28	10q22.3q23미세결실증후군	10q22.3q23 microdeletion syndrome
29	16p11.2p12.2미세결실증후군	16p11.2p12.2 microdeletion syndrome
30	Xq28중복증후군	Chromosome Xq28 duplication syndrome

(5) 성인발병 스틸병 등 9개 희귀질환 산정특례 선정목록('20.1.1. 시행)

연번	질환명	질환명(영문)(상병코드)
1	한랭글로불린혈증성혈관염	Cryoglobulinaemic vasculitis(D89.1)
2	맥락막결손	Choroideremia(H31.2)
3	긴QT증후군	Long QT syndrotkme(I49.8)
4	유전성 출혈성 모세혈관 확장증	Hereditary haemorrhagic telangiectasia(I78.0)
5	성인발병스틸병	Adult-onset Still's disease(M06.1)
6	수근반달뼈의 골연골증 (연소성), 킨백	Osteochondrosis (juvenile) of carpal lunate, Kienbock(M92.2)
7	성인의킨백병	Kienbock's disease of adults(M93.1)
8	X-연관 비늘증; 스테로이드 설파타제 결핍	X-linked ichthyosis; steroid sulfatase deficiency(Q80.1)
9	할리퀸비늘증	Harlequin ichthyosis(Q80.4)

(6) 2번 염색체 단완 결손 등 23개 기타염색체 이상질환 산정특례 선정목록('20.1.1. 시행)

연번	질환명(국문)	질환명(영문)
1	5장완31미세결실로 인한 가족성내반족	Familial clubfoot due to 5q31 microdeletion
2	1장완44미세결실증후군	1q44 microdeletion syndrome
3	2번염색체단완결손	2p deletion
4	3장완13.31미세결실증후군	3q13.31 microdeletion syndrome
5	5장완14.3미세결실증후군	5q14.3 microdeletion syndrome
6	5장완35결실증후군	5q35 deletion
7	6단완22미세결실증후군	6p22 microdeletion
8	6장완26미세결실증후군	6q26 microdeletion syndrome
9	7장완36미세결실증후군	7q36 microdeletion syndrome
10	13장완12.3미세결실증후군	13q12.3 microdeletion syndrome
11	13장완말단부결손	Distal monosomy 13q
12	13장완부분결손	Partial deletion of the long arm of chromosome13
13	14장완24.2-31.1미세결실	14q24.2q31.1 microdeletion
14	15장완11-13미세중복증후군	15q11q13 duplication syndrome

연번	질환명(국문)	질환명(영문)
15	15장완13.3미세결실	15q13.3 microdeletion
16	17단완13.1미세결실증후군	Distal 17p13.1 microdeletion syndrome
17	17단완13.3미세결실증후군	Distal 17p.13.3 microdeletion syndrome
18	17장완21.31미세중복증후군	17q21.31 microduplication syndrome
19	18장완말단부결손증후군	Distal 18q deletion syndrome
20	2번염색체장완의37부분의미세결손증후군	2q37 microdeletion syndrome
21	3번 염색체 장완의 13.31 부분의 미세 결손 증후군	3q13.31 microdeletion syndrome
22	9번염색체단완의중복	Duplication of 9p
23	15번고리모양염색체	Ring chromosome 15

(7) 다소뇌회증 등 59개 극 희귀질환 산정특례 선정목록('20.1.1. 시행)

연번	질환명	질환명(영문)
1	다소뇌회증	Polymicrogyria
2	통앞뇌증	Holoprosencephaly
3	바라이서-윈터증후군	Baraitser-Winter syndrome
4	클리펠-파일증후군	Klippel-Feil syndrome
5	PCDH 19 돌연변이 연관성 뇌전증	PCDH 19-related epilepsy syndromes
6	아가미-귀-콩팥 스펙트럼 이상	Branchiootorenal(BoR) spectrum disorders (Branchiootorenal(BoR) syndrome & Branchiootic(Bo) syndrome)
7	비데만-스타이너증후군	Wiedemann-Steiner syndrome
8	지아-깁스증후군	Xia-Gibbs syndrome
9	FLNA연관뇌실주위결절성이소증	FLNA-related periventricular nodular heterotopia
10	무발한증과동반된선천성통증무감각증	Congenital insensitivity to pain with anhidrosis (CIPA)
11	정신지체-저긴장성 얼굴 증후군	X-linked mental retardation-hypotonic facies syndrome
12	시니어-로켄증후군	Senior-Loken syndrome
13	성장 발달지연, 지적장애, 저긴장성근육, 간 병증	Growth retardations, impaired intellectual development, hypotonia, and hepatopathy (GRIDHH)

연번	질환명	질환명(영문)
14	코스텔로증후군	Costello syndrome
15	결핍증	Acid-Lavilesubunit(ALS) Acid-Labilesubunitdeficiency(ALSD)
16	튜불린병증	Tubulinopathies
17	로트문드툼슨증후군	Rothmund Thomson syndrome
18	레지우스증후군	Legius syndrome
19	3M증후군	3M syndrome
20	5장완23미세결실증후군	Contractures-developmental delay-Pierre Robin syndrome(5q23 microdeletion syndrome)
21	PURA연관신경발달질환	PURA-related neurodevelopmental disorders due to 5q31.3 microdeletion
22	레리-웨일증후군	Leri-Weill dyschondrosteosis(LWD)
23	활성화된PI3Kdelta증후군	Activated PI3K Delta Syndrome
24	노리에병	Norrie's disease
25	거대뇌증-모세혈관기형-다소뇌회증 증후군	Megalencephaly-capillary malformation-polymicrogyria syndrome
26	백내장, 성장호르몬 결핍, 감각신경병증, 감각신경성난청, 골격 이형성증	Cataracts, growth hormone deficiency, sensory neuropathy, sensorineural hearing loss, and skeletal dysplasia(CAGSSS)
27	베인브릿지-로퍼스증후군	Bainbridge-Ropers syndrome
28	아텔로스테오제네시스	Atelosteogenesis
29	생식기슬개골증후군	Genitopatellar Syndrome
30	색소성건피증그룹A	Xeroderma pigmentosum group A(XPA)
31	PTEN과오종증후군	PTEN Hamartoma Tumor Syndrome (PHTS)
32	선천성 심장기형, 얼굴 이형성증, 그리고 발 달지연 증후군	Congenital heart defects, dysmorphic facial features, and intellectual developmental disorder (CHDFIDD)
33	선천성경상운동증후군	Congenital mirror movement (CMM) disorder
34	파르병	Fahr's Disease
35	유전성림프부종	Hereditary lymphedema
36	ADNP 증후군, 헬스무르텔-반데르아 증후군	ADNP syndrome, Helsmoortel-VanDerAa syndrome

연번	질환명	질환명(영문)
37	KIFIA유전자돌연변이에의한신경병증	Neuropathy due to KIF1A gene mutation
38	GNAO1 뇌병증	GNAO1 encephalopathy
39	X-연관세포사멸사억제인자결핍	X-linked inhibitor of apoptosis deficiency
40	가족성칸디다증유형7	Familial candidiasis type 7
41	라르센증후군	Larsen's syndrome
42	면역글로불린G4관련질환	Immunoglobulin G4-related disease
43	모낭성비늘증-탈모증-눈부심 증후군	Ichthyosis follicularis-alopecia -photophobia syndrome
44	나팔꽃증후군	Morning glory syndrome
45	윤활막염-여드름-농포증-골염 증후군	Synovitis-acne-pustulosis-hyperostosis-osteitis syndrome(SAPHO syndrome)
46	말단이골증	Acrodysostosis
47	선천성당화장애	Congenital disorder of glycosylation
48	소두증골형성이상원시성난쟁이증유형2	Microcephalic osteodysplastic primordial dwarfism type 2
49	스티클러증후군	Stickler syndrome
50	아벨리노각막디스트로피, 동형접합	Avellino corneal dystrophy, homozygous
51	원발성섬모체이상운동증	Primary ciliary dyskinesia
52	자가면역성뇌염	Autoimmune encephalitis
53	카사바프-메리트증후군	Kassabach-meritt syndrome
54	코오간증후군	Cogan's syndrome
55	전신성모세혈관누출증후군	Systemic capillary leak syndrome
56	특발성흉막실질탄력섬유증	Idiopathic pleuroparenchymal fibroelastosis
57	폐의모세관성혈관종증	pulmonary capillary hemangiomatosis
58	펠란-맥더미드 증후군, 22번 염색체 장완의 13.3 부분의 결손 증후군	Phelan-McDermid syndrome, 22q13.3 deletion syndrome
59	화이트-서튼증후군	White-Sutton syndrome

(8) 산정특례 제외 질환(2019.1.1.시행)

순번	특정 기호	상병 코드	일련 번호	상병명
1	V120	E848	02	복합증세를 동반한 남성섬유증
2	V123	G121	08	척추성근위축
3	V133	M0830	01	만성연소성다발성관절염, 다발부분
4	V133	M0830	02	(혈청검사음성인)연소성다발관절염, 다발부분
5	V133	M0831	01	만성연소성다발성관절염, 어깨부분
6	V133	M0831	02	(혈청검사음성인)연소성다발관절염, 어깨부분
7	V133	M0832	01	만성연소성다발성관절염, 위팔
8	V133	M0832	02	(혈청검사음성인)연소성다발관절염, 위팔
9	V133	M0833	01	만성연소성다발성관절염, 아래팔
10	V133	M0833	02	(혈청검사음성인)연소성다발관절염, 아래팔
11	V133	M0834	01	(혈청검사음성인)연소성다발관절염, 손
12	V133	M0834	02	만성연소성다발성관절염, 손
13	V133	M0835	01	만성연소성다발성관절염, 골반부위 및 넓적다리
14	V133	M0835	02	(혈청검사음성인)연소성다발관절염, 골반부분 및 넓적다리
15	V133	M0836	01	만성연소성다발성관절염,아래다리
16	V133	M0836	02	(혈청검사음성인)연소성다발관절염, 아래 다리
17	V133	M0837	01	(혈청검사음성인)연소성다발관절염, 발목 및 발
18	V133	M0837	02	만성연소성다발성관절염, 발목 및 발
19	V133	M0838	01	만성연소성다발성관절염,기타부위
20	V133	M0838	02	(혈청검사음성인)연소성다발관절염, 기타 부분
21	V133	M0839	01	만성연소성다발성관절염, 상세불명 부위
22	V133	M0839	02	(혈청검사음성인)연소성다발관절염, 상세불명 부분
23	V140	M450	01	척추의류마티스관절염, 척추다발부위
24	V140	M451	01	척추의류마티스관절염, 뒤통수-중쇠-고리부위
25	V140	M452	02	척추의류마티스관절염, 목부위
26	V140	M453	01	척추의류마티스관절염, 목가슴부위
27	V140	M454	02	척추의류마티스관절염, 가슴부위
28	V140	M455	02	척추의류마티스관절염, 등허리부위
29	V140	M456	01	척추의류마티스관절염, 허리부위
30	V140	M457	01	척추의류마티스관절염, 허리엉치부위
31	V140	M458	01	척추의류마티스관절염, 엉치 및 엉치꼬리부위
32	V140	M459	01	척추의류마티스관절염, 상세불명의 부위
33	V140	M459	02	강직척추염, 상세불명의 부위

□ 산정특례 선정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상병

순번	특정기호	상병코드	일련번호	상병명	제외사유
1	V104	B25	01	거대세포바이러스병	선정기준 미충족
2	V104	B250	01	거대세포바이러스페렴 (J17.1*)	선정기준 미충족
3	V104	B251	01	거대세포바이러스간염 (K77.0*)	선정기준 미충족
4	V104	B252	01	거대세포바이러스뇌장염(K87.1*)	선정기준 미충족
5	V104	B258	01	기타거대세포바이러스병	선정기준 미충족
6	V104	B259	01	상세불명의 거대세포바이러스병	선정기준 미충족
7	V105	B45	01	크립토코쿠스증	선정기준 미충족
8	V105	B450	01	폐크립토코쿠스증	선정기준 미충족
9	V105	B451	01	대뇌크립토코쿠스증	선정기준 미충족
10	V105	B451	02	크립토코쿠스수막염 (G02.1*)	선정기준 미충족
11	V105	B451	03	크립토코쿠스수막대뇌염	선정기준 미충족
12	V105	B452	01	피부크립토코쿠스증	선정기준 미충족
13	V105	B453	01	골크립토코쿠스증	선정기준 미충족
14	V105	B457	01	파종성크립토코쿠스증	선정기준 미충족
15	V105	B457	02	전신크립토코쿠스증	선정기준 미충족
16	V105	B458	01	기타형태의 크립토코쿠스증	선정기준 미충족
17	V105	B459	01	상세불명의 크립토코쿠스증	선정기준 미충족
18	V023	D601	01	일과성후천성 순수적혈구무형성	선정기준 미충족
19	V009	D684		비타민 K결핍에 의한 응고인자결핍	선정기준 미충족
20		D70	04	후천성무과립구증	선정기준 미충족
21	V108	D70	12	비장성(원발성) 호중구감소	선정기준 미충족
22	V111	D807	01	영아기의 일과성 저감마글로불린혈증	선정기준 미충족
23	V114	E242	01	약물유발쿠싱증후군	선정기준 미충족
24	V114	E244	01	알콜유발거짓쿠싱증후군	선정기준 미충족
25	V117	E731	01	이차성젖당분해효소결핍	선정기준 미충족
26	V117	E741	02	본태성과당뇨	선정기준 미충족
27	V117	E748	02	본태성펜토스뇨	선정기준 미충족
28	V117	E748	05	신장성당뇨	선정기준 미충족
29	V121	E853	01	이차성전신아밀로이드증	선정기준 미충족
30	V012	G711	04	약물유발근긴장증	선정기준 미충족
31	V127	I425	02	협착성심근병증NOS	선정기준 미충족
32	V131	K510	02	역류회장염	사용빈도 낮음
33	V131	K514	01	염증성폴립	사용빈도 낮음
34	V131	K515	02	좌측반결장염	사용빈도 낮음
35	V136	M320	01	약물유발전신홍반루푸스	선정기준 미충족
36	V138	M342	01	약물 및 화학물질로 유발된 전신경화증	선정기준 미충족
37	V139	M357	01	과가동성증후군	선정기준 미충족
38	V139	M357	02	가족성인대이완	선정기준 미충족
39	V142	P221	01	신생아의 일과성 빠른 호흡	선정기준 미충족

② 타 산정특례 질환으로 수렴 가능한 상병

순번	특정 기호	상병 코드	일련 번호	상병명	수렴가능상병
1		D700	01	호중구감소성발열	암(V193)
2	V110	D762	01	감염과관련된혈구탐식증후군	D76.1
3	V110	D763	04	황색육아종	Q85.0 신경섬유종증
4	V113	E221	01	고프로락틴혈증	D35.2 뇌하수체양성신생물
5	V115	E258	02	특발성 부신생식기장애	타 희귀질환으로 수렴 (광범위한 진단명)
6	V121	E853	02	혈액투석-연관아밀로이드증	혈액투석(V001)
7	V123	G130	02	암종성 신경근육병증	암(V193)
8	V123	G130	03	감각성 신생물 딸림신경병증[데니브라운] (C000D48+)	암(V193)
9	V123	G131	01	신생물질환에서 일차적으로 중추신경계통을 침범 하는 기타 계통성위축	암(V193)
10	V123	G132	01	점액부종에서 일차적으로 중추신경계통을 침범하는 계통성위축(E00.1+,E03.0+)	암(V193)
11	V126	G611	01	혈청신경병증	G61.0(01) 길랭-바레증후군
12	V131	K513	01	궤양성(만성) 직장구불결장염	K512(01) 궤양성(만성) 직장염
13	V140	M459	01	강직척추염,상세불명의부위	강직척추염(M45.0) 및 상세부위별 수렴

2. 중증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 암환자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중증환자

* 「의료급여수급자의 기준 및 일반기준」 제17조의2제1항

● ‘근로능력 없는 수급자’는 암환자, 중증화상환자만 해당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 3] “중증질환자 산정특례대상”

구분	대 상		특정 기호
1	제7조에 따라 산정특례 대상으로 등록된 암환자가 등록일로부터 5년간 해당 상병(C00~C97, D00~D09, D32~D33, D37~D48)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		V193
2	[별첨 1]에 해당하는 상병의 뇌혈관질환자가 해당 상병의 치료를 위하여 [별첨 1]에 해당하는 수술을 받은 경우 최대 30일		V191
	[별첨 1]에서 160~162에 해당하는 상병의 중증 뇌출혈환자가 급성기에 입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최대 30일 * [별첨1]에 해당하는 수술을 받지 않은 경우		V268
	[별첨 1]에서 163에 해당하는 상병의 뇌경색증 환자가 증상 발생 24시간 이내에 병원에 도착하여 입원 진료 중 NIHSS가 5점 이상인 경우 최대 30일 * [별첨1]에 해당하는 수술을 받지 않은 경우		V275
3	[별첨 2]에 해당하는 상병의 심장질환자가 해당 상병의 치료를 위하여 [별첨 2]에 해당하는 수술 또는 약제투여를 받은 경우 최대 30일 * 단, [별첨 2]에 해당하는 상병 중 복잡 선천성 심기형질환자 또는 [별첨 2]에 해당하는 수술 중 심장이식술을 받은 경우 최대 60일		V192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산정특례 대상으로 등록된 중증화상환자가 적용일부터 1년간 해당 상병으로 진료를 받는 경우 *단, 등록기간 종료 후 2년 이내에 별첨 3의 수술을 받는 경우 1년간 재등록할 수 있음(V306은 제외)	가. 별첨 3에서 중증도 기준의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상병에 해당하면서 체표면적 기준의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병으로 진료를 받는 경우	V247
		나. 별첨 3에서 중증도 기준의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상병에 해당하면서 체표면적 기준의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병으로 진료를 받는 경우	V248
		다. 별첨 3의 상병 중 제3호에 해당하는 상병(기능 및 일상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경우에 한함)으로 입원진료를 받는 경우	V305
		라. 별첨 3의 상병 중 제3호에 해당하는 상병(기능 및 일상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경우에 한함)에 대해 외래진료를 받은 환자가 수상(受傷)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입원하여 별첨 3의 수술을 받는 경우	V306
5	손상중증도점수(ISS) 15점 이상에 해당하는 중증외상환자가「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30조의2에 따른 권역외상센터에 입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최대 30일		V273

[별첨 3] 중증화상 본인부담금 산정특례 상병코드 및 상병명

상병명(상병코드)		
구분	중증도 기준	체표면적 기준
1	가. 머리 및 목의 2도 화상(T20.2) 나. 몸통의 2도 화상(T21.2) 다. 손목 및 손을 제외한 어깨와 팔의 2도 화상(T22.2) 라. 손목 및 손의 2도 화상(T23.2) 마. 발목 및 발을 제외한 엉덩이 및 다리의 2도 화상(T24.2) 바. 발목 및 발의 2도 화상(T25.2) 사. 상세불명 신체부위의 2도 화상(T30.2)	가. 신체표면의 20~29%를 침범한 화상(T31.2) 나. 신체표면의 30~39%를 침범한 화상(T31.3) 다. 신체표면의 40~49%를 침범한 화상(T31.4) 라. 신체표면의 50~59%를 침범한 화상(T31.5) 마. 신체표면의 60~69%를 침범한 화상(T31.6) 바. 신체표면의 70~79%를 침범한 화상(T31.7) 사. 신체표면의 80~89%를 침범한 화상(T31.8) 아. 신체표면의 90%이상을 침범한 화상(T31.9)
2	가. 머리 및 목의 3도 화상(T20.3) 나. 몸통의 3도 화상(T21.3) 다. 손목 및 손을 제외한 어깨와 팔의 3도 화상(T22.3) 라. 손목 및 손의 3도 화상(T23.3) 마. 발목 및 발을 제외한 엉덩이 및 다리의 3도 화상(T24.3) 바. 발목 및 발의 3도 화상(T25.3) 사. 상세불명 신체부위의 3도 화상(T30.3)	T31.11 신체표면의 10~19%를 침범한 화상 중 3도 화상이 신체표면의 10~19%인 경우 T31.21~2 신체표면의 20~29%를 침범한 화상 중 3도 화상이 신체표면의 10% 이상인 경우 T31.31~3 신체표면의 30~39%를 침범한 화상 중 3도 화상이 신체표면의 10% 이상인 경우 T31.41~4 신체표면의 40~49%를 침범한 화상 중 3도 화상이 신체표면의 10% 이상인 경우 T31.51~5 신체표면의 50~59%를 침범한 화상 중 3도 화상이 신체표면의 10% 이상인 경우 T31.61~6 신체표면의 60~69%를 침범한 화상 중 3도 화상이 신체표면의 10% 이상인 경우 T31.71~7 신체표면의 70~79%를 침범한 화상 중 3도 화상이 신체표면의 10% 이상인 경우 T31.81~8 신체표면의 80~89%를 침범한 화상 중 3도 화상이 신체표면의 10% 이상인 경우 T31.91~9 신체표면의 90% 이상을 침범한 화상 중 3도 화상이 신체표면의 10% 이상인 경우
3	가. 머리 및 목의 3도 화상(T20.3) 중안면부에 수상한 경우 나. 몸통의 3도 화상(T21.3) 중 성기 또는 회음부에 수상한 경우 다. 손목 및 손의 3도 화상(T23.3) 라. 발목 및 발의 3도 화상(T25.3) 마. 눈 및 부속기의 화상(T26.0~T26.4)	
4	가. 호흡기도의 화상(T27.0~T27.3) 나. 기타 내부기관의 화상(T28.0~T28.3)	

7-2

국민연금공단 전국지사 주소록

구 분	국민연금공단 관할지사	우편 번호	주 소	전화번호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중구지사	04554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 남산스퀘어 15층(충무로3가)	02-397-9692
중구	종로중구지사	04554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 남산스퀘어 15층(충무로3가)	02-397-9692
용산구	용산지사	04386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92, LS용산타워 4층(한강로2가 191)	02-6220-2230
성동구	성동광진지사	04983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 563, 대한제지사옥 3층(광장동)	02-3408-6690
광진구	성동광진지사	04983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 563, 대한제지사옥 3층(광장동)	02-3408-6690
동대문구	동대문중랑지사	0258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왕산로 6, 경복빌딩 6층(신설동)	02-920-0571
중랑구	동대문중랑지사	0258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왕산로 6, 경복빌딩 6층(신설동)	02-920-0571
성북구	성북강북지사	01062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 314, 삼성화재빌딩 6층,7층(번동)	02-901-2851
강북구	성북강북지사	01062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 314, 삼성화재빌딩 6층,7층(번동)	02-901-2851
도봉구	도봉노원지사	01752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해로 502, 8층 KT노원지사빌딩(상계동)	02-2211-2860
노원구	도봉노원지사	01752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해로 502, 8층 KT노원지사빌딩(상계동)	02-2211-2860
은평구	은평지사	03358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742, 3층(불광동)	02-350-5549
서대문구	서울북부 지역본부	0374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36, 충정로사옥 9층,13층(충정로3가)	02-2176-9836
마포구	서울북부 지역본부	0374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36, 충정로사옥 9층,13층(충정로3가)	02-2176-9836
양천구	양천지사	08094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81, 9층(신정동, 해누리타운)	02-6345-9043

구 분	국민연금공단 관할지사	우편 번호	주 소	전화번호
강서구	강서지사	07791	강서구강서로463(마곡동), 새싹타워 3층	02-2086-7181
구로구	구로금천지사	08511	서울특별시 금천구 벚꽃로 286, 2층(가산동)	02-2085-1450
금천구	구로금천지사	08511	서울특별시 금천구 벚꽃로 286, 2층(가산동)	02-2085-1450
영등포구	영등포지사	0732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14 KT 여의도 타워 17층	02-2629-2388
동작구	동작지사	06928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로 100(노량진동), CTS 기독교 TV 멀티미디어 센터 8층	02-6935-8440
관악구	관악지사	08793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926(인현동)	02-6934-2040
서초구	서초지사	06749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213, 3층(양재동)	02-3415-0903
강남구 (역삼동,포이동, 개포동,대치동, 세곡동,자곡동, 울현동,일원동, 수서동,도곡동)	강남역삼지사	06210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6, 8층(역삼동, 카이트타워)	02-2186-4070
강남구 (논현동,삼성동, 신사동,청담동, 압구정동)	서울남부지역본부	06039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128, 1층, 2층(논현동)	02-3416-6199
송파구	송파지사	05510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35다길 13, 6층	02-3433-5830
강동구	강동하남지사	05381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대로 1102, 8층(성내동)	02-480-8820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산지역본부	47606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0, 4층(연산동)	051-797-7041
연제구	부산지역본부	47606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0, 4층(연산동)	051-797-7041
중구	중부산지사	48939	부산광역시 중구 충장대로 7, 3층(중앙동4가,교보생명빌딩)	051-660-3213
동구	중부산지사	48939	부산광역시 중구 충장대로 7, 3층(중앙동4가,교보생명빌딩)	051-660-3213
영도구	중부산지사	48939	부산광역시 중구 충장대로 7, 3층(중앙동4가,교보생명빌딩)	051-660-3213
서구	서부산지사	49310	부산광역시 사하구 낙동남로 1427, 10층(하단동)	051-290-3571

구 분	국민연금공단 관할지사	우편 번호	주 소	전화번호
사하구	서부산지사	49310	부산광역시 사하구 낙동남로 1427, 10층(하단동)	051-290-3571
해운대구	동부산지사	48060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남대로 50, 7층(우동)	051-610-6360
기장군	동부산지사	48060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남대로 50, 7층(우동)	051-610-6360
남구	남부산지사	48266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로 688, 국민연금공단 수영사옥 1,2층	051-793-1081
수영구	남부산지사	48266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로 688, 국민연금공단 수영사옥 1,2층	051-793-1081
북구	북부산지사	46548	부산광역시 북구 기창로 12, 4층(덕천동)	051-603-1260
강서구	북부산지사	46548	부산광역시 북구 기창로 12, 4층(덕천동)	051-603-1260
사상구	부산사상지사	46973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상로 181번길 10(괘법동), 하이애어코리아 부산사무소 2층	051-792-5360
동래구	동래금정지사	47877	부산광역시 동래구 명륜로 82(수안동 192-3)	051-550-7530
금정구	동래금정지사	47877	부산광역시 동래구 명륜로 82(수안동 192-3)	051-550-7530
대구광역시				
서구	서대구지사	41593	대구 북구 옥산로 111 6층 (칠성동 2가, 대구은행제 2본점)	053-380-3090
북구	서대구지사	41593	대구 북구 옥산로 111 6층 (칠성동 2가, 대구은행제 2본점)	053-380-3090
동구	동대구지사	41142	대구광역시 동구 동촌로 1, 5층(입석동, 동대구우체국)	053-430-7860
중구	대구수성지사	42019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2397, 11층(범어동, KB손해보험 대구빌딩)	053-750-9110
남구	대구수성지사	42019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2397, 11층(범어동, KB손해보험 대구빌딩)	053-750-9110
수성구	대구수성지사	42019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2397, 11층(범어동, KB손해보험 대구빌딩)	053-750-9110
달서구	대구지역본부	42612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로 419(이곡동) 2층	053-589-4580
달성군	대구달성고령지사	42955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읍 비슬로 2593, 5~6층	053-470-1571

구 분	국민연금공단 관할지사	우편 번호	주 소	전화번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남동연수지사	21574	인천광역시 남동구 성말로20,3층(구월동)	032-451-0931
남동구	남동연수지사	21574	인천광역시 남동구 성말로20,3층(구월동)	032-451-0931
서구	서인천지사	22711	인천광역시 서구서곶로 284, 3층(심곡동)	032-560-0551
강화군	김포강화지사	10080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 1로 81(장기동), 2층, 3층	031-8048-1370
중구	남인천지사	2214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미추홀대로 694 교보생명 3, 4층	032-770-3511
동구	남인천지사	2214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미추홀대로 694 교보생명 3, 4층	032-770-3511
미추홀구	남인천지사	2214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미추홀대로 694 교보생명 3, 4층	032-770-3511
옹진군	남인천지사	2214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미추홀대로 694 교보생명 3, 4층	032-770-3511
부평구	부평계양지사	21388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대로 75, 15층(부평동)	032-500-8181
계양구	부평계양지사	21388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대로 75, 15층(부평동)	032-500-8181
광주광역시				
북구	북광주지사	61228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239 한국시멘트빌딩 10층	062-520-8170
남구	동광주지사	61476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154-1, 8층(금남로 5가)	062-230-0750
동구	동광주지사	61476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154-1, 8층(금남로 5가)	062-230-0750
서구	광주지역본부	62359	광주광역시 광산구 무진대로 251(우산동)	062-958-2180
광산구	광주지역본부	62359	광주광역시 광산구 무진대로 251(우산동)	062-958-2180
대전광역시				
동구	동대전지사	34839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19, 14층(선화동)	042-720-4040
중구	동대전지사	34839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19, 14층(선화동)	042-720-4040
서구	서대전지사	35261	대전광역시 서구 문정로 6, 4층(탄방동)	042-480-4860
유성구	북대전지사	34379	대전광역시 대덕구 한밭대로 1027(오정동)	042-670-1030
대덕구	북대전지사	34379	대전광역시 대덕구 한밭대로 1027(오정동)	042-670-1030

구 분	국민연금공단 관할지사	우편 번호	주 소	전화번호
울산광역시				
남구	남울산지사	44676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179, 4층(신정동)	052-226-2171
울주군	남울산지사	44676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179, 4층(신정동)	052-226-2171
중구	동울산지사	44510	울산광역시 중구 변영로 470 중울산 새마을금고빌딩 5층(반구동)	052-290-6180
동구	동울산지사	44510	울산광역시 중구 변영로 470 중울산 새마을금고빌딩 5층(반구동)	052-290-6180
북구	동울산지사	44510	울산광역시 중구 변영로 470 중울산 새마을금고빌딩 5층(반구동)	052-290-6180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	대전세종 지역본부	30100	세종특별자치시 세종로 1250, 1층, 4~5층	044-715-1641
경 기 도				
수원시	경인지역본부	16488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307번길 19, 3층, 4층, 9층(인계동)	031-229-4059
권선구	경인지역본부	16488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307번길 19, 3층, 4층, 9층(인계동)	031-229-4059
영통구	경인지역본부	16488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307번길 19, 3층, 4층, 9층(인계동)	031-229-4059
장안구	북수원지사	16271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수성로 350번길 30, KT수원빌딩 별관 2층(영화동)	031-8007-2250
팔달구	북수원지사	16271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수성로 350번길 30, KT수원빌딩 별관 2층(영화동)	031-8007-2250
성남시	수정중원지사	13353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267 3층(신흥동)	031-5178-2101
수정구	수정중원지사	13353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267 3층(신흥동)	031-5178-2101
중원구	수정중원지사	13353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267 3층(신흥동)	031-5178-2101
분당구	분당지사	13496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양현로 322, 4층(아탑동)	031-778-0311
고양시	고양덕양지사	10564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흥4로 7, 5층(원흥동, 고양동부새마을금고)	031-927-3266
덕양구	고양덕양지사	10564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흥4로 7, 5층(원흥동, 고양동부새마을금고)	031-927-3266

구 분	국민연금공단 관할지사	우편 번호	주 소	전화번호
일산동구	고양일산지사	10410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228, 3층 (마두동)	031-920-5471
일산서구	고양일산지사	10410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228, 3층 (마두동)	031-920-5471
용인시	처인기흥지사	17055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명지로 16번길 9-21 (역북동 748)	031-288-1380
처인구	처인기흥지사	17055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명지로 16번길 9-21 (역북동 748)	031-288-1380
기흥구	처인기흥지사	17055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명지로 16번길 9-21 (역북동 748)	031-288-1380
수지구	수지지사	16849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성북2로 51, 데이파크 A동 3층	031-8019-9040
부천시	부천지사	14580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신흥로 179, 12층 (중1동, 한화생명빌딩)	032-610-2380
안산시	안산지사	15353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대로 259(고잔동), 2층	031-481-7760
상록구	안산지사	15353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대로 259(고잔동), 2층	031-481-7760
단원구	안산지사	15353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대로 259(고잔동), 2층	031-481-7760
안양시	안양과천지사	14073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180, G.Square 20층(호계동)	031-420-2040
만안구	안양과천지사	14073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180, G.Square 20층(호계동)	031-420-2040
동안구	안양과천지사	14073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180, G.Square 20층(호계동)	031-420-2040
남양주시	남양주지사	12284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자금로 36번길 21-6 트윈타워A동 3층, 4층(다산동)	031-523-6380
화성시	화성오산지사	18413	경기도 화성시 병점2로 6, 금강빌딩 5층 (병점동)	031-229-6080
오산시	화성오산지사	18413	경기도 화성시 병점2로 6, 금강빌딩 5층 (병점동)	031-229-6080
평택시	평택안성지사	17909	경기도 평택시 평택 2로 34, 2층, 5층(평택동)	031-659-0889
안성시	평택안성지사	17909	경기도 평택시 평택 2로 34, 2층, 5층(평택동)	031-659-0889
의정부시	의정부지사	11650	경기도 의정부시 시민로 62, 2층(의정부동)	031-828-3620

구 분	국민연금공단 관할지사	우편 번호	주 소	전화번호
양주시	의정부지사	11650	경기도 의정부시 시민로 62, 2층(의정부동)	031-828-3620
연천군	의정부지사	11650	경기도 의정부시 시민로 62, 2층(의정부동)	031-828-3620
동두천시	의정부지사	11650	경기도 의정부시 시민로 62, 2층(의정부동)	031-828-3620
시흥시	시흥지사	15036	경기도 시흥시 정왕대로 188, 5층(정왕동, 한국산업은행)	031-488-2755
파주시	파주지사	10915	경기도 파주시 새꽃로 1(금촌동), 3층	031-956-3631
광명시	광명지사	14235	경기도 광명시 철산로 5, 3층(철산동)	02-2610-2810
김포시	김포강화지사	10080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1로 81(장기동) 2층, 3층	031-8048-1370
군포시	군포의왕지사	15818	경기도 군포시 산본로 404, 3층 (산본동, 대주빌딩)	031-390-8050
의왕시	군포의왕지사	15818	경기도 군포시 산본로 404, 3층 (산본동, 대주빌딩)	031-390-8050
광주시	경기광주지사	12739	경기도 광주시 광주대로 214-1 2층(송정동)	031-8026-3058
이천시	이천여주지사	17374	경기도 이천시 이섭대천로 1203, 5층(하나빌딩)	031-630-7973
여주시	이천여주지사	17374	경기도 이천시 이섭대천로 1203, 5층(하나빌딩)	031-630-7973
구리시	구리양평지사	11924	경기도 구리시 경춘로 158, 14층(교문동)	031-550-5861
포천시	포천철원지사	11175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송우로 62, 송우웰빙타운 5층	031-540-8021
하남시	강동하남지사	05381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대로 1102, 8층(성내동)	02-480-8820
양평군	구리양평지사	11924	경기도 구리시 경춘로 158, 14층(교문동)	031-550-5861
과천시	안양과천지사	14073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180, G.Square 20층(호계동)	031-420-2040
가평군	춘천지사	24376	강원도 춘천시 남춘로 20, 5층, 6층 (퇴계동)	033-259-7720
강 원 도				
춘천시	춘천지사	24376	강원도 춘천시 남춘로 20, 5층, 6층 (퇴계동)	033-259-7720
화천군	춘천지사	24376	강원도 춘천시 남춘로 20, 5층, 6층 (퇴계동)	033-259-7720
양구군	춘천지사	24376	강원도 춘천시 남춘로 20, 5층, 6층 (퇴계동)	033-259-7720

구 분	국민연금공단 관할지사	우편 번호	주 소	전화번호
원주시	원주시사	26387	강원도 원주시 시청로 32(무실동)	033-749-8420
영월군	원주시사	26387	강원도 원주시 시청로 32(무실동)	033-749-8420
강릉시	강릉지사	25548	강원도 강릉시 경강로 2224번길 12(포남동)	033-640-9380
속초시	강릉지사	25548	강원도 강릉시 경강로 2224번길 12(포남동)	033-640-9380
고성군	강릉지사	25548	강원도 강릉시 경강로 2224번길 12(포남동)	033-640-9380
양양군	강릉지사	25548	강원도 강릉시 경강로 2224번길 12(포남동)	033-640-9380
(환동해출장소)	강릉지사	25548	강원도 강릉시 경강로 2224번길 12(포남동)	033-640-9380
삼척시	삼척지사	25911	강원도 삼척시 하실길 58(교동)	033-571-2140
동해시	삼척지사	25911	강원도 삼척시 하실길 58(교동)	033-571-2140
태백시	삼척지사	25911	강원도 삼척시 하실길 58(교동)	033-571-2140
정선군	삼척지사	25911	강원도 삼척시 하실길 58(교동)	033-571-2140
홍천군	홍천지사	25139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홍천로 364, 3층(신장대리)	033-439-5431
횡성군	홍천지사	25139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홍천로 364, 3층(신장대리)	033-439-5431
인제군	홍천지사	25139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홍천로 364, 3층(신장대리)	033-439-5431
평창군	원주시사	26387	강원도 원주시 시청로 32(무실동)	033-749-8420
철원군	포천철원지사	11175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송우로 62, 송우웰빙타운 5층	031-540-8021
충청북도				
청주시	동청주지사	28525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사직대로 362번길 20, 4층(서문동)	043-251-5064
상당구	동청주지사	28525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사직대로 362번길 20, 4층(서문동)	043-251-5064
서원구	서청주지사	28366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비하로 27 덕원회관 2층(비하동)	043-710-8571
흥덕구	서청주지사	28366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비하로 27 덕원회관 2층(비하동)	043-710-8571
청원구	동청주지사	28525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사직대로 362번길 20, 4층(서문동)	043-251-5064

구 분	국민연금공단 관할지사	우편 번호	주 소	전화번호
충주시	충주지사	27341	충청북도 충주시 국원대로 242(금릉동)	043-840-0791
제천시	충주지사	27341	충청북도 충주시 국원대로 242(금릉동)	043-840-0791
단양군	충주지사	27341	충청북도 충주시 국원대로 242(금릉동)	043-840-0791
보은군	옥천지사	29049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 문장로 96, 4층	043-730-2750
옥천군	옥천지사	29049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 문장로 96, 4층	043-730-2750
영동군	옥천지사	29049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 문장로 96, 4층	043-730-2750
증평군	동청주지사	28525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사직대로 362번길 20, 4층(서문동)	043-251-5064
진천군	동청주지사	28525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사직대로 362번길 20, 4층(서문동)	043-251-5064
괴산군	동청주지사	28525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사직대로 362번길 20, 4층(서문동)	043-251-5064
음성군	충주지사	27341	충청북도 충주시 국원대로 242(금릉동)	043-840-0791
충청남도				
천안시	천안지사	31197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6로 60 (청당동)	041-550-8801
동남구	천안지사	31197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6로 60 (청당동)	041-550-8801
서북구	천안지사	31197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6로 60 (청당동)	041-550-8801
공주시	공주부여지사	32576	충청남도 공주시 한적2길 27-5(신관동)	041-850-3870
부여군	공주부여지사	32576	충청남도 공주시 한적2길 27-5(신관동)	041-850-3870
아산시	아산지사	31514	충청남도 아산시 충무로 22, 2층, 3층(온천동, 유엘시티)	041-420-2360
서산시	서산태안지사	31989	충청남도 서산시 호수공원3로 60(예천동 1256-3), 동일타워 5층	041-419-3051
태안군	서산태안지사	31989	충청남도 서산시 호수공원3로 60(예천동 1256-3), 동일타워 5층	041-419-3051
논산시	서대전지사	35261	대전광역시 서구 문정로 6, 4층(탄방동)	042-480-4860
계룡시	서대전지사	35261	대전광역시 서구 문정로 6, 4층(탄방동)	042-480-4860
금산군	동대전지사	34839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19, 14층(선화동)	042-720-4040

구 분	국민연금공단 관할지사	우편 번호	주 소	전화번호
보령시	보령지사	33430	충청남도 보령시 동현로 27	041-930-6650
서천군	보령지사	33430	충청남도 보령시 동현로 27	041-930-6650
청양군	보령지사	33430	충청남도 보령시 동현로 27	041-930-6650
당진시	홍성지사	32249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충서로 1347, 3층 (옥암리, 대왕빌딩)	041-630-8170
홍성군	홍성지사	32249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충서로 1347, 3층 (옥암리, 대왕빌딩)	041-630-8170
예산군	홍성지사	32249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충서로 1347, 3층 (옥암리, 대왕빌딩)	041-630-8170
전라북도				
전주시	전주완주지사	54949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온고을로 13, 3층 (서신동)	063-270-5302
완산구	전주완주지사	54949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온고을로 13, 3층 (서신동)	063-270-5302
덕진구	전주완주지사	54949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온고을로 13, 3층 (서신동)	063-270-5302
완주군	전주완주지사	54949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온고을로 13, 3층 (서신동)	063-270-5302
익산시	익산군산지사	54604	전라북도 익산시 인북로 12길 42(주현동)	063-850-0380
군산시	익산군산지사	54604	전라북도 익산시 인북로 12길 42(주현동)	063-850-0380
정읍시	정읍지사	56188	전라북도 정읍시 충정로 97(상동)	063-530-5804
김제시	정읍지사	56188	전라북도 정읍시 충정로 97(상동)	063-530-5804
고창군	정읍지사	56188	전라북도 정읍시 충정로 97(상동)	063-530-5804
부안군	정읍지사	56188	전라북도 정읍시 충정로 97(상동)	063-530-5804
남원시	남원순창지사	55748	전라북도 남원시 의총로 116(동충동)	063-620-3440
순창군	남원순창지사	55748	전라북도 남원시 의총로 116(동충동)	063-620-3440
진안군	진안지사	55422	전라북도 진안군 진안읍 학천변길 25 진안사옥	063-430-3521
무주군	진안지사	55422	전라북도 진안군 진안읍 학천변길 25 진안사옥	063-430-3521
장수군	진안지사	55422	전라북도 진안군 진안읍 학천변길 25 진안사옥	063-430-3521
임실군	진안지사	55422	전라북도 진안군 진안읍 학천변길 25 진안사옥	063-430-3521

구 분	국민연금공단 관할지사	우편 번호	주 소	전화번호
전라남도				
목포시	목포지사	58730	전라남도 목포시 영산로 118, 6층(호남동)	061-240-3306
신안군	목포지사	58730	전라남도 목포시 영산로 118, 6층(호남동)	061-240-3306
영암군	목포지사	58730	전라남도 목포시 영산로 118, 6층(호남동)	061-240-3306
무안군	목포지사	58730	전라남도 목포시 영산로 118, 6층(호남동)	061-240-3306
여수시	여수지사	59726	전라남도 여수시 공화북 2길 24(공화동)	061-660-5550
순천시	순천지사	58002	전라남도 순천시 팔마로 334(연향동)	061-729-3070
광양시	순천지사	58002	전라남도 순천시 팔마로 334(연향동)	061-729-3070
구례군	순천지사	58002	전라남도 순천시 팔마로 334(연향동)	061-729-3070
고흥군	순천지사	58002	전라남도 순천시 팔마로 334(연향동)	061-729-3070
보성군	순천지사	58002	전라남도 순천시 팔마로 334(연향동)	061-729-3070
나주시	나주지사	58262	전라남도 나주시 나주로 21, KT나주빌딩 별관 (송월동)	061-820-0021
함평군	나주지사	58262	전라남도 나주시 나주로 21, KT나주빌딩 별관 (송월동)	061-820-0021
영광군	나주지사	58262	전라남도 나주시 나주로 21, KT나주빌딩 별관 (송월동)	061-820-0021
장성군	북광주지사	61228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239 한국시멘트빌딩 10층	062-520-8170
담양군	북광주지사	61228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239 한국시멘트빌딩 10층	062-520-8170
곡성군	동광주지사	61476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154-1, 8층(금남로 5가)	062-230-0750
화순군	동광주지사	61476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154-1, 8층(금남로 5가)	062-230-0750
장흥군	해남지사	59038	전라남도 해남군 해남읍 교육청길 16-16(해리)	061-530-2340
강진군	해남지사	59038	전라남도 해남군 해남읍 교육청길 16-16(해리)	061-530-2340
해남군	해남지사	59038	전라남도 해남군 해남읍 교육청길 16-16(해리)	061-530-2340
완도군	해남지사	59038	전라남도 해남군 해남읍 교육청길 16-16(해리)	061-530-2340
진도군	해남지사	59038	전라남도 해남군 해남읍 교육청길 16-16(해리)	061-530-2340

구 분	국민연금공단 관할지사	우편 번호	주 소	전화번호
경상북도				
포항시	포항지사	37821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포스코대로 346, 8층 (대도동)	054-280-0890
남구	포항지사	37821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포스코대로 346, 8층 (대도동)	054-280-0890
북구	포항지사	37821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포스코대로 346, 8층 (대도동)	054-280-0890
경산시	경산청도지사	38677	경상북도 경산시 경산로 154, 6층(사정동)	053-722-5050
청도군	경산청도지사	38677	경상북도 경산시 경산로 154, 6층(사정동)	053-722-5050
경주시	경주영천지사	38146	경상북도 경주시 화랑로 125, 4층(성동동)	054-770-3931
영천시	경주영천지사	38146	경상북도 경주시 화랑로 125, 4층(성동동)	054-770-3931
김천시	김천성주지사	39545	경상북도 김천시 시청로 137, 김천상공회의소 3층(신음동)	054-420-1641
성주군	김천성주지사	39545	경상북도 김천시 시청로 137, 김천상공회의소 3층(신음동)	054-420-1641
안동시	안동지사	36657	경상북도 안동시 광명로 211(옥동)	054-850-9050
의성군	안동지사	36657	경상북도 안동시 광명로 211(옥동)	054-850-9050
청송군	안동지사	36657	경상북도 안동시 광명로 211(옥동)	054-850-9050
영양군	안동지사	36657	경상북도 안동시 광명로 211(옥동)	054-850-9050
구미시	구미지사	39281	경북 구미시 송원동로 5, 2층(송정동)	054-450-8590
군위군	구미지사	39281	경북 구미시 송원동로 5, 2층(송정동)	054-450-8590
칠곡군	구미지사	39281	경북 구미시 송원동로 5, 2층(송정동)	054-450-8590
영주시	영주봉화지사	36099	경상북도 영주시 선비로 182, 2~4층(영주동)	054-639-8005
봉화군	영주봉화지사	36099	경상북도 영주시 선비로 182, 2~4층(영주동)	054-639-8005
문경시	문경지사	36978	경상북도 문경시 매봉로 45(모전동)	054-550-3340

구 분	국민연금공단 관할지사	우편 번호	주 소	전화번호
상주시	문경지사	36978	경상북도 문경시 매봉로 45(모전동)	054-550-3340
예천군	문경지사	36978	경상북도 문경시 매봉로 45(모전동)	054-550-3340
영덕군	포항지사	37821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포스코대로 346, 8층 (대도동)	054-280-0890
고령군	대구달성 고령지사	43005	대구광역시 달성군 현풍면 현풍동로 13, KT 달성빌딩 1층,2층	053-470-1571
울진군	포항지사	37821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포스코대로 346, 8층 (대도동)	054-280-0890
울릉군	포항지사	37821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포스코대로 346, 8층 (대도동)	054-280-0890
경상남도				
창원시	창원지사	51439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250번길 4, 1층, 4층(신월동)	055-278-9051
의창구	창원지사	51439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250번길 4, 1층, 4층(신월동)	055-278-9051
성산구	창원지사	51439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250번길 4, 1층, 4층(신월동)	055-278-9051
진해구	창원지사	51439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250번길 4, 1층, 4층(신월동)	055-278-9051
마산합포구	마산지사	51315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3.15대로 700, (석전동, 한화생명 11층)	055-290-4551
마산회원구	마산지사	51315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3.15대로 700, (석전동, 한화생명 11층)	055-290-4551
의령군	마산지사	51315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3.15대로 700, (석전동, 한화생명 11층)	055-290-4551
함안군	마산지사	51315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3.15대로 700, (석전동, 한화생명 11층)	055-290-4551
창녕군	창원지사	51439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250번길 4, 1층, 4층(신월동)	055-278-9051

구 분	국민연금공단 관할지사	우편 번호	주 소	전화번호
진주시	진주시사	52695	경상남도 진주시 진양호로 356 (신안동 439-5)	055-760-0670
하동군	진주시사	52695	경상남도 진주시 진양호로 356 (신안동 439-5)	055-760-0670
산청군	진주시사	52695	경상남도 진주시 진양호로 356 (신안동 439-5)	055-760-0670
통영시	통영지사	53017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신죽3길16	055-650-8555
거제시	통영지사	53017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신죽3길 16	055-650-8555
고성군	통영지사	53017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신죽3길 16	055-650-8555
사천시	사천남해지사	52539	경상남도 사천시 용현면 대밭담로 13 (송지리 1265)	055-830-0841
남해군	사천남해지사	52539	경상남도 사천시 용현면 대밭담로 13 (송지리 1265)	055-830-0841
김해시	김해밀양지사	50921	경상남도 김해시 가락로 58, 4층(부원동)	055-320-8352
밀양시	김해밀양지사	50921	경상남도 김해시 가락로 58, 4층(부원동)	055-320-8352
양산시	양산지사	50611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청운로 358 국민연금양산사옥 1층, 3층	055-371-1520
함양군	거창지사	50135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소만3길 56	055-940-4530
거창군	거창지사	50135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소만3길 56	055-940-4530
합천군	거창지사	50135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소만3길 56	055-940-4530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시사	63219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청사로 3길 11-1(도남동)	064-720-4120
서귀포시	서귀포지사	63587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일주동로 8532 (동홍동), 축산농협 5층	064-800-4551

2023년 근로능력판정사업 안내

발행일 2023년 2월

발행처 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

〈비매품〉

이 지침은 보건복지부 업무용 지침이므로, 무단전재, 무단인용을 금합니다.

파일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훈령 / 예규 / 고시 / 지침 메뉴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